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김은희 Kim, Eunheeo
유제연 Ryu, Jeyeon

(auri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지은이 김은희, 유제연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02.18.)
인쇄 2019년 12월 29일, 발행: 2019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0,000원, ISBN: 979-11-5659-248-8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김은희 연구위원

| 연구진

유제연 연구원

| 외부연구진

송준환 일본야마구치대학 조교수

설준호 마크로밀엠브레인 부장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위원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 연구 자문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윤계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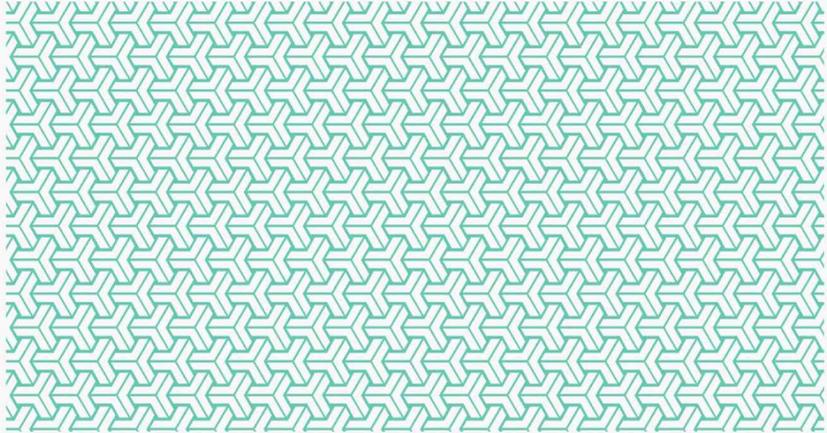
이동희 경기대학교 교수

장병열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Summary



1. 서론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파악과 미래 발전 방향 전망, 대응 전략수립에 있어서 기초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러나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한 산업 통계의 양적·질적 부족이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건축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타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내·외부 통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현황과 문제점 분석, 타 산업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도출,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전략과 향후 과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2017년에 이어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한계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의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 과정' 즉, 건축기획, 설계, 시공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지식활동산업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건축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는 단순히 조성과정에 관계되는 산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부동산, 관광, 등 조성 이후 사용과정에서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결국 건축물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까지 포괄하기에 현행 법제도의 산업정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생산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건축 산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국토교통부)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각 부처별 소관 법률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부분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통계청의 국가통계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못하므로 산업정보의 종합적 분석이 쉽지 않다. 다행히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건축 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과제가 설정되었고,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 개편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국가승인 통계화의 추진은 중장기 통계구축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건축서비스산업통계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의해 구축된다. 이들 기관은 이용자(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업체, 건축사, 대한건설협회: 시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산업

에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주요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중 건축 산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정보를 관리하는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수주 및 매출 현황과 기업정보, 기타 시장 동향을 통계화 하여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나, 반면 건축서비스산업과 밀접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경력관리제도를 활용한 방대한DB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산업 간 정보 경쟁력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산업의 최종 결과물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다. 따라서 건축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과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시장의 실질적인 관리 대상인 건축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건축동향(인허가 및 착공)은 어떠한지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세움터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다. 세움터에는 건축물에 관한 많은 기초 정보들이 DB화 되어 있어, 목적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허가착공 통계 등 단편적인 행정정보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움터 DB 뿐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건축서비스 유관 산업 통계사례와 시사점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한 분야로 엔지니어링, 건설, 디자인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의 주요 통계는 각각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 의해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통계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받았다. 각 기관의 DB 및 통계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경우 민원서비스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사업내역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모집단 분석과 각종 통계를 생산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디자인DB 운영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과 사업체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보호(디자인 공시증명,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종합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업체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적산기준처럼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협회가 시행하는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정보(사업체 정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가 접속해 직접 조사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어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제도와 연동된 DB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여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용되는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등이 반영된다. 여기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승인통계인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통계결과가 시장의 노임단가와 대가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유관 산업과 더불어 국외 사례로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 및 통계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산업분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건축서비스와 유사한 ‘건설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아직까지 제도화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명확한 분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건설과 연동되어 산업법주는 국내의 현행 범주보다 확대될 수 있다.

통계작성에 있어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계결과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다. DB와 통계 구축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관련 연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개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국내 통계도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만한 DB와 통계 생산 및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통계작성 체계와 관련하여, 일본은 건축 및 건설 관련 통계가 국토교통성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법이나 평가제도 등을 통해 신고의 의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 이외에도 소관부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응답률뿐 아니라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국

토교통성이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산 계획의 수립 및 집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국토교통성 통계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면서 관련 통계 및 정책정보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는 점도 시사점이 있다.

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방안

건축서비스산업 범위설정, 통계현황 및 국내외 유사 사례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네 가지의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에 필요한 통계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한 정보 구축 항목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연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필요한 통계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현재 정부의 행정통계와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은 통계를 구분한 후 최종 항목을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현황과 업체 현황, 매출현황 정보, 분야별 종사자들의 취업 및 근속 현황, 연구개발 관련 대가기준 및 표준화, 인력양성 및 교육 관련 퇴직 후 진로, 졸업생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매개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는 기존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건축환경과 공간수요 변화 양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 변화 전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건축환경의 변화 특징으로는 IT기술의 도입,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 공간기반의 콘텐츠, 표준화 및 경제적인 모델상품 개발, 건설 솔루션 제공, 부동산, 도시관리로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물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의 일부 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국가 행정통계 및 DB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직접적인 국가승인 통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에는 산업전반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이들 통계 중 건축서비스산업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면 신뢰도 높은 산업 정보 분석과 가공이 가능하고 더불어 실태조사 등 다양한 현상조사가 함께 실시된다면 건축서비스산업 내·외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산업기반으로서 통계는 누구나 안심하고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생산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에 요구되는 방법·내용의 수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공신력 있는 실행방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우선 국가통계로 지정받고 중장기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첫 번째 시도로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분야 및 수주·생산성, 해외사업,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교육 및 홍보, 종사자현황, 사업체일반현황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M72111)’를 규모나 지역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설정하였는데 총 565개소 업체가 참여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업체들이 활동하는 사업 분야의 경우 건축계획 및 설계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감리도 6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건축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고 반대로 규모가 커질수록 감리나 도시계획 및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업체일수록 업역 확대 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은 업체 당 1억~5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별로는 민간수주와 공공수주의 차이가 크지 않고(약4%), 발주방식의 경우 공공은 설계공모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은 턴키와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진출은 일부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로 발주정보 수집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3D기반의 건축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는 12.2%로, 이 중 BIM이 9.5%, GIS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종사자는 각각 평균 3.9명, 2.5명으로 비중이 낮다. 건축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2.8배 가량 많고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직원의 근속 연수 조사에서는 남자가 5~10년이고, 여자는 1년~3년 미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가 길다.

본 조사 과정과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 통계화 추진과정에서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항목별로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따져 특정 항목은 제외하거나 조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 제한적으로 설정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M72111)' 이외 부문에 대한 조사 항목 설계에 참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앞서 언급한 정부의 각종 행정자료가 보완되면 산업의 내외적 규모와 상태를 이해하고 동향을 분석함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5.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으로서 통계구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국내외 DB와 통계 사례, 환경변화 양상과 국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견지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2014년과 2017년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주제로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선제적 역할과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17년 실태조사 이후 정권 교체 등 각종 사회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 조사가 시행되어 건축시장 정책수립 및 연구추진, 투자 결정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 연관 산업 범주를 재설정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성이 큰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부동산의 형태와 거래 방법 등 구체적인 산업적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DB와 통계를 찾아 분석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주체를 설정해야 한다. 엔지니어링협회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상위 정부기관의 협력, 일본 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성의 역할처럼 통계 작성 역할자의 책임이 분명할 때 보다 유용한 통계가 효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체계의 작동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정책차원의 종합적인 통계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의 정비이다. 법제도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여건과 실태조사의 어려움을 재고할 때 통계작성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필두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국가

승인 절차가 이행된다면 그 위상을 법제도로 명확히 언급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주제어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산업, DB, 통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용어 정의	7
4. 선행연구 현황	9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범위	12
1)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12
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17
3) 새로운 건축서비스산업 수요와 종류	20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DB 및 통계구축 체계	23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와 통계	23
3) 건축서비스산업 유관 통계 구축 현황	55
3. 소결: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한계	63
1) 제한적인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63
2) 국가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로드맵 부재	63
3) DB 활용 및 전략적 통계구축 미흡	64

제3장 국내외 건축서비스 유관 산업 통계사례와 시사점

1. 엔지니어링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66
--------------------------------------	----

1) 엔지니어링산업 DB의 종류	67
2)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통계별 주요내용 및 결과활용	71
2. 산업디자인 DB 및 통계 구축 현황 : 한국디자인진흥원	77
1) 산업디자인 DB의 종류	79
2) 산업디자인 주요 통계 및 활용 현황	81
3. 건설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대한건설협회	84
1) 건설산업 DB의 종류	86
2) 건설산업 주요 통계 및 활용 현황	87
4. 일본의 건설서비스산업 범위와 통계구축 체계 및 시사점	94
1) 일본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	94
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구축 체계 및 통계	100
5. 소결: 국내외 유관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109
1) 국내 유관 산업 사례 시사점	109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110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방안

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방향 및 전략	114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 종류 결정	114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건축서비스 산업범위 및 통계 종류 확대	120
3) 건축 산업 구조를 고려한 연관 DB 활용	124
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국가승인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지속성 담보	126
2.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추진	128
1) 조사개요	128
2) 모집단 분석	133
3)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137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156
2. 향후 과제	162

참고문헌	163
------	-----

Summary	167
---------	-----

부록	171
----	-----

1. 2019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172
------------------------	-----

1) 조사지	172
--------	-----

2) 조사결과표	181
----------	-----

[표 2-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	18
[표 2-2] 건축서비스산업과 수요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산업	19
[표 2-3] 건축서비스산업과 공급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산업	20
[표 2-4] 정부의 건축서비스산업관련 DB 및 통계	25
[표 2-5] 국토교통 통계누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분야 자료(Data) 현황	30
[표 2-6] 세움터 건축정보	32
[표 2-7] 인허가 및 착공, 건축물 통계 항목(동수 및 연면적)	33
[표 2-8] 지역별 건축물 조성현황(동수)	35
[표 2-9] 국가통계포털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분야 통계 현황	38
[표 2-10] 행정안전부의 통계 현황	41
[표 2-11] 문화센터 주제별 통계	44
[표 2-12] 보건복지부의 각 분야별 통계조사 현황	45
[표 2-13] 여성가족부 각 분야별 통계조사 현황	46
[표 2-1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내 통계자료목록	48
[표 2-15] 고용노동부 내 통계자료목록	50
[표 2-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종합정보센터 DB	51
[표 2-17]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제공·관리 데이터	53
[표 2-18]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	54
[표 2-19]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종류	55
[표 2-20]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내용	56
[표 2-21] 건설업 관련 통계 현황(정부부처, 기관)	58
[표 2-22] 건설업 관련 통계 현황(협회)	59
[표 2-23] 기타분야(주택, 토지) 통계 현황	60
[표 2-24] 작성기관별 통계사업 현황	61
[표 3-1]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Data 현황	67
[표 3-2]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 부문 Data 현황	68
[표 3-3]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해외' 부문 Data 현황	69
[표 3-4]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민원' 부문 운영 및 Data 현황	71
[표 3-5]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통계개요	73
[표 3-6]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통계개요	74
[표 3-7]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통계개요	76
[표 3-8]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대분류, 중분류 기준)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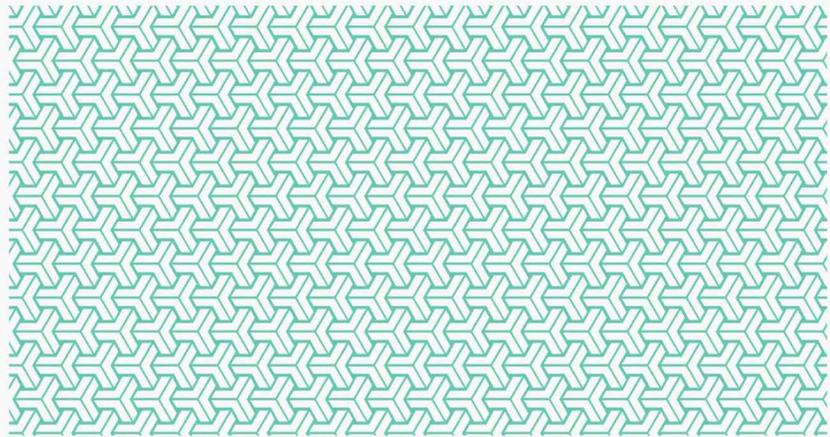
[표 3-9]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요업무와 산업디자인 관련 데이터(홈페이지 기준)	80
[표 3-10]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개요	81
[표 3-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대상	82
[표 3-12]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내용	83
[표 3-13] 건설업 관련 통계 (토목 및 일부 연관성이 낮은 통계 제외)	85
[표 3-14] 대한건설협회의 업무와 건설산업 관련 데이터(홈페이지 기준)	87
[표 3-15] 건설업조사 개요	89
[표 3-16]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개요	91
[표 3-17] 건설업경영분석 개요	93
[표 3-18] 일본표준산업분류(1949년10월 설정)의 개정경위	94
[표 3-19]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중분류 및 항목명	95
[표 3-20] 일본표준산업분류의 항목 수	96
[표 3-21] 일본표준산업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그 내용	98
[표 3-22] 통계구축 체계의 유형	100
[표 3-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주택 관련 통계 목록	102
[표 3-2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 공사 관련 통계 목록	103
[표 3-25]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 관련 통계 목록	103
[표 3-26]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107
[표 3-27]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108
[표 4-1]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16
[표 4-2]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에 요구되는 정보	117
[표 4-3] 건축서비스산업 요구통계 및 기존 통계 현황	118
[표 4-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내용	123
[표 4-5]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활용목적	129
[표 4-6] 조사개요	131
[표 4-7]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표본설계	131
[표 4-8] 종사자 규모별 가중치	131
[표 4-9] 응답 사업체 특성	132
[표 4-10]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사업체 수	133
[표 4-1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134
[표 4-12]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34
[표 4-13] 사업체 운영 기간	135
[표 4-14] 매출액 현황	136
[표 4-15] 조직형태	137
[표 4-16] 2018년 매출액	140
[표 4-17]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143
[표 4-18]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1)	145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건축단계별 건축서비스 업무	16
[그림 2-2] 산업연관표 상품 및 산업부문 분류	19
[그림 2-3] 1980년 이후 1인 가구 수(좌), 65세 1인가구수(우)	21
[그림 2-4] 공유공간 플랫폼	21
[그림 2-5] 공유주택 사례_커먼타운	21
[그림 2-6] 각종 신규 생활서비스 업종	22
[그림 2-7] 정부조직도	24
[그림 2-8] 조달청 통계정보	40
[그림 2-9] 경찰청 주요통계정보	42
[그림 2-10] 소방청 주요통계정보	43
[그림 2-11] 문화센터 통계정보	44
[그림 2-12]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정보	45
[그림 2-13] 여성가족부 통계정보	46
[그림 2-14] 건축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개념도	52
[그림 2-15]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제공 자재정보	52
[그림 2-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연혁	57
[그림 3-1] 건축서비스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엔지니어링산업의 관계	66
[그림 3-2] 건축서비스산업과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의 관계	77
[그림 3-3] 2017년 디자인 경제적 가치	83
[그림 3-4]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업(토목 제외)과의 관계	84
[그림 3-5]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시행 과정	90
[그림 3-6] 건설업경영분석 조사체계	92
[그림 3-7] 일본의 통계 행정 체계	101
[그림 3-8] 전공 건축사 제도에 따른 8개의 전공영역	106
[그림 3-9] 전공 건축사 검색 서비스	107
[그림 4-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항목 도출 방법	115
[그림 4-2]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재편 방향	120
[그림 4-3]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재편 방향	122
[그림 4-4] 세움터 정보의 활용 방향	125
[그림 4-5]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한계	126
[그림 4-6] 건축서비스산업 국가승인 통계 신청 절차	127

[그림 4-7] 사무실 점유형태 및 면적	137
[그림 4-8] 종사자 구성1	138
[그림 4-9] 종사자 구성2	138
[그림 4-10] 직원 채용 시 어려운 점	139
[그림 4-11] 2018년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	139
[그림 4-12] 2018년 매출액	140
[그림 4-13] 2018년 지출액	141
[그림 4-14] 사업 분야	142
[그림 4-15] 2018년 연간 수주액	142
[그림 4-16]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143
[그림 4-17] 2018년 제안(입찰) 및 수주(낙찰) 건수	144
[그림 4-18]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발주처	144
[그림 4-19]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	145
[그림 4-20] 2018년 공공 프로젝트 합산 수주액 상위 계약 성격	146
[그림 4-21] 2018년 민간 프로젝트 합산 수주액 상위 계약 성격	146
[그림 4-22] 공공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	147
[그림 4-23] 민간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	147
[그림 4-24] 2018년 수행 민간 프로젝트 업무 대가 방식	147
[그림 4-25] 민간 프로젝트 완료 후 수금까지 걸린 기간	148
[그림 4-26] 계약 미성사로 지급받지 못한 업무대가(비용)	148
[그림 4-27]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업무 분야(타 분야)	149
[그림 4-28] 국내 프로젝트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	149
[그림 4-29] 2018년 해외사업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	150
[그림 4-30] 2018년 해외사업 주요 발주 방식	150
[그림 4-31] 향후 해외사업 참여 의향	151
[그림 4-32] 해외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151
[그림 4-33]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 인원	152
[그림 4-34] BIM, GIS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152
[그림 4-35]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보유 여부 및 보유 대수	152
[그림 4-36] 2018년 진행한 직원교육	153
[그림 4-37]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15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용어 정의
4. 선행연구 현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사회적으로 저출산과 노인인구, 1·2인 가구수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날이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IT의 속도와 그에 맞추어 등장한 새로운 기술산업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외부환경도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경제가 구조화되었고 이 시기 이후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산업에도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 건축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패턴이 변하였고 건축 활동의 결과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모습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 속에 내재한 문제를 이해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처한 현실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래 건축 산업을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이다. 이는 단순히 현행 법제도에서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범위에 국한된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건축서비스가 연결되는 모든 분야와의 상관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개인과 공공의 공간환경을 기획·설계·관리하는 건축서비스 활동은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의 공급이 중요하다. 즉,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의 특수성과 더불어 유관 산업의 상호작용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에 대한 기대치는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변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 제정되고 2014년부터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제7조 규정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2017년 2회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 관련 DB의 입수 및 가공의 어려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국가승인 통계의 부재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작성한 통계가 학술적·정책적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공식통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실효성 문제도 거론되었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에 있어 통계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예측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공공과 민간의 입장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기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갈 선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기반의 일환으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필요한 통계의 종류와 통계구축 방법을 제시하며, 실행 전략의 하나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연구 대상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제 2조1항 정의에 따라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은 이러한 법적 정의에 다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이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 산업의 범주에서 건설산업¹⁾, 엔지니어링산업²⁾ 등과 상관성이 크므로 유관산업의 DB 및 통계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통계의 내용적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7조 '실태조사',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 근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시장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연구 및 개발 현황, 인력양성 및 교육현황, 입찰정보,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설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8조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2.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7조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현황 및 한계 파악, 유관 사례의 시사점 도출, 통계 구축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국내의 건축서비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DB와 통계를 살펴보고 국가승인 통계화 과정 및 방법 등을 고찰한다. 또한 법에서 명시한 실태조사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전략과 통계 값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건축 산업 전반의 산업 연관성을 토대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말하며 건축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산업통계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및 통계 구축대상 설정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범위와 대상, 필요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과 범위, DB구축 대상에 관한 선행연구가 추진된 바가 있고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법령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 국내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산업 DB 및 통계구축 사례조사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조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DB구축 현황과 국가승인 통계작성 기관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추진하였다.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DB 및 통계 구축 방법 조사는 일본의 통계작성 책임기관의 역할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및 민간의 통계구축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습득하여 분석하였다.

□ 간담회 및 의견수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통계수요 파악, 통계 대상설정을 위해 업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간담회 이외에도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제도화를 위한 기관 면담, 통계청 등 정부 기관 면담도 실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를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분야 및 수주 생산성 등 총 6개 분야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 대상자 표본은 통계청의 「2017년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생성된 사업체 명부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였고, 실행은 조사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다.

3. 용어 정의

□ 용어 정의 방향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관련 법률 및 국립어학원, 기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해설을 활용하되, 법률상의 용어정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계법」에서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 용어 정의

-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³⁾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⁴⁾
-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⁵⁾
- “산업”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⁶⁾
-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 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⁷⁾
-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⁸⁾
- “DB”란 DataBase의 영문약자로 체계화된 데이터의 작성 목록으로써 여러 응용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⁹⁾

3) 「건축기본법」 제3조 7호

4) 「건축기본법」 제3조 1호

5) 「건축기본법」 제3조 2호

6) 국립국어원<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1항1호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1항2호

9)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A%B3%84%ED%95%99>

-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성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¹⁰⁾
- "지정통계"란 제17조¹¹⁾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¹²⁾
-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¹³⁾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¹⁴⁾
-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¹⁵⁾

10) 「통계법」 제3조 1호

11)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12) 「통계법」 제3조 2호

13)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통계법」 제3조 3호

15) 「통계법」 제3조 4호

4. 선행연구 현황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구축 및 통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 2014년 국토교통부, 2017년, 2018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세 건을 들 수 있다.

□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발주로 추진한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을 규정하고, 둘째, 해외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타 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운영 사례를 검토한 후 넷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 실태조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 범위를 설정하고 실태조사 기초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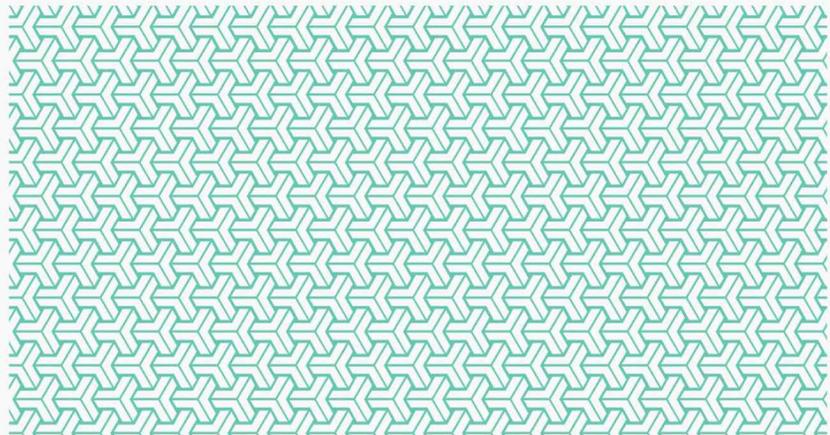
□ 서수정 외(2017),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본 연구는 201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을 도출하고 둘째,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건축서비스산업과 비교를 통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뿐 아니라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유관 통계를 가공하여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2014년 연구보다 일부 진전된 면이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일부 항목에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여경 외(2018),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2017년에 이어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세부 과제로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건축서비스산업 인식평가를 통한 사회적 수용범위를 진단하고 둘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가치 및 타산업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 산업과 상관성 검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범주의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인식조사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보제공의 방향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범위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현황
3. 소결;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범위

1)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산업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산업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 건축서비스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조경진흥법」의 산업 범위를 살펴보고, 건축서비스를 직접 수요 하는 건설공사 관련법의 산업범위도 함께 검토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1항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 과정에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조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만 직접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산업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별도의 법률로써 ‘건축서비스’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한 행위,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용역업',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의와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규정한다.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의미하고,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에 대한 정의와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 유사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에 해당한다. 건설기술은 건설용역의 방식으로 시행되며 이를 건설기술용역이라 규정한다. 더불어 별도의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의 업무도 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과정에서 관계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유사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활동’, 「조경진흥법」의 ‘조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과 엔지니어링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은 이러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과정에서 이러한 엔지니어링활동은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업무이므로 관련 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경진흥법」 제2조는 ‘조경’의 개념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설물을 포함하는 공간환경¹⁶⁾조성과정의 조경 또한 건축서비스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시공을 제외한 관련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간주 할 수 있다.

16) 건축기본법 제3조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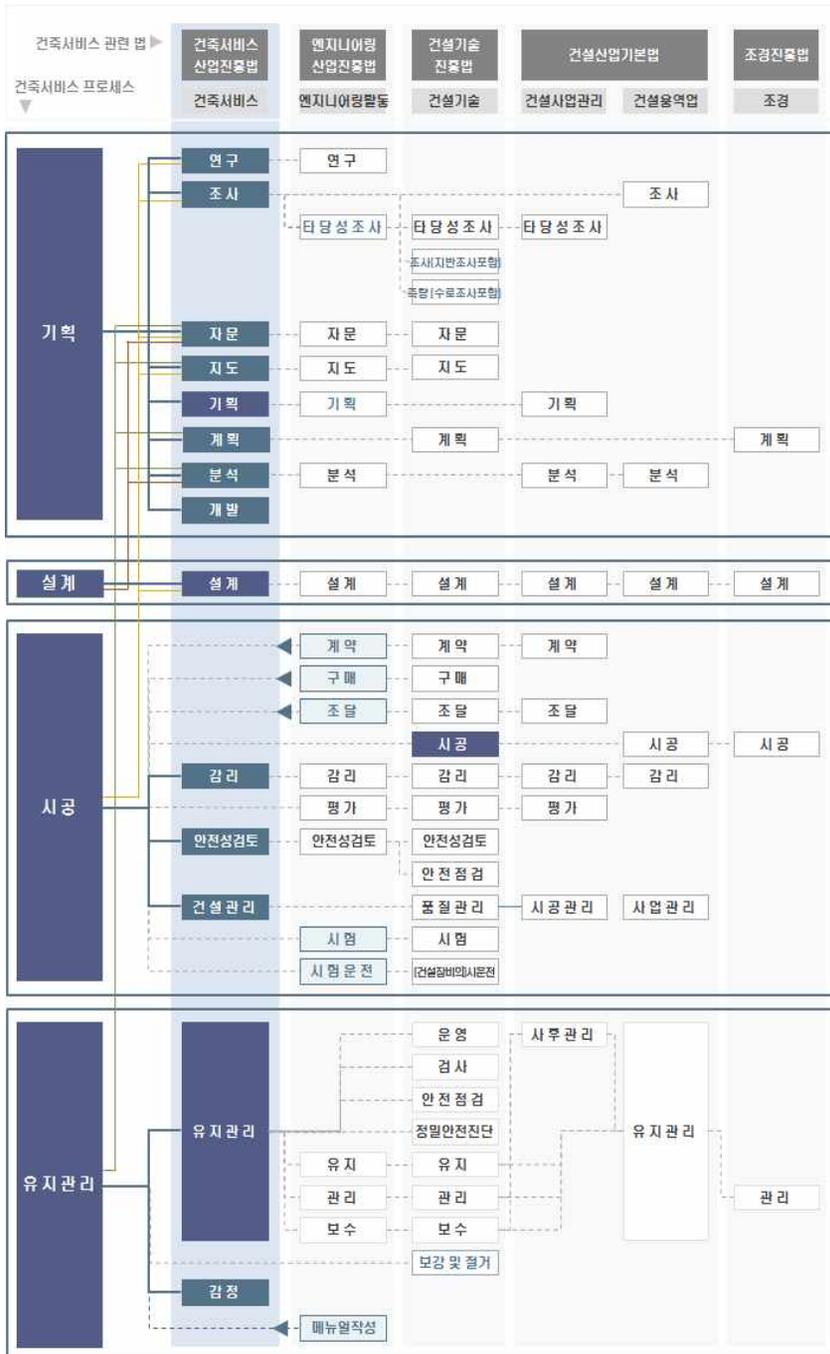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법률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설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조경진흥법」에 따른 활동 정의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는 건축서비스,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조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결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서비스의 정의 즉, '건축물과 공간 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으로 수렴된다.



[그림 2-1] 건축단계별 건축서비스 업무

출처 : 김은희 외(2017), 건축서비스산업 현주소와 발전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39

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통계청은 우리나라 산업현황과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운영한다. 국내 산업현황 및 통계는 대부분 이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하여 통계 구축 방향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인구·사회·경제·기술 등 건축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서비스산업범위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활용의 가치가 높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0차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9차 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대응하고 있다.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과 국내 산업 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의 신설 및 통합, 분류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건축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상 대분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해당한다. 중분류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과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이라 할 수 있다. 소분류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과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 전문디자인업(M732)이다.

세분류는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M7211), 엔지니어링서비스업(M7212), 전문디자인업(M7320)이며 세세분류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M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에 해당한다.

즉, 건축서비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은 세세분류에 포함되는 ①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②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2), ③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④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 그리고 ⑤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 분류	주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M72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 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건축물 의 기획 및 설계 수행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 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 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 업활동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1)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 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 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 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	전문 디자인업 (M732)	전문 디자인업 (M7320)

출처: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p.28.

□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과 융합도가 높은 산업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법」 제 86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로, 일정기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에 대해 경제구조 분석, 산업연관효과 측정, 정부 경제정책 수립 등을 위해 활용¹⁷⁾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재 기준 년(2010년)에 준하여 작성 운영되고 있다.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는 상품분류로는 서비스에, 산업분류로는 서비스업에 포함한다.

17) 한국은행(2017), 산업연관표_통계정보보고서, p.7

	기본부문	통합소분류	통합중분류	통합대분류
상품분류	384 (403)	161 (168)	82 (78)	30 (28)
농림수산물	25 (29)	8 (11)	5 (5)	1 (1)
광산물	9 (15)	4 (7)	2 (3)	1 (1)
공산물	239 (253)	88 (100)	38 (44)	13 (14)
전기, 가스 및 건설	22 (22)	10 (9)	4 (4)	2 (2)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6 (3)	4 (2)	3 (1)	1 (0)
서비스	83 (78)	47 (36)	30 (20)	12 (9)
기타	0 (3)	0 (3)	0 (1)	0 (1)
산업분류	328	161	82	30
농림어업	16	8	5	1
광업	6	4	2	1
제조업	211	88	38	13
전기, 가스 및 건설업	18	10	4	2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4	4	3	1
서비스업	73	47	30	12

[그림 2-2] 산업연관표 상품 및 산업부문 분류

출처: 한국은행(2017), 산업연관표_통계정보보고서, p.59

한편, 선행연구¹⁸⁾에서 수요측과 공급측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산업융합도가 높은 산업을 도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은 수요측에서는 콘크리트제품산업,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산업, 목제품산업, 도자기 및 요업제품산업 즉, 건설자재산업과 산업융합도가 높고 공급측은 기타과학기술서비스가 산업융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 건축서비스산업과 수요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산업

순위	소분류	산업분야	산업융합도값
1	148	콘크리트제품	0.9235
2	124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0.8013
3	15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7940
4	150	목제품	0.7795
5	159	도자기 및 요업제품	0.7790
6	155	산업용 운반기계	0.5176
7	144	도료 및 잉크	0.4820
8	153	기타 전기장치	0.4258
9	115	열간압연강재	0.3455
10	136	목재	0.3077

출처: 이여경 외(2018),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4

18) 이여경 외(2018),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표 2-3] 건축서비스산업과 공급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산업

순위	소분류	산업분야	산업융합도값
1	14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	0.8039
2	124	기타 운송관련서비스	0.6396
3	151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0.6189
4	150	인력공급 및 알선	0.6101
5	159	사회단체	0.5953
6	155	사회보험서비스	0.555
7	144	연구개발	0.5366
8	153	교육서비스	0.5016
9	115	도소매서비스	0.5015
10	136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0.4498

출처: 이여경 외(2018),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6

3) 새로운 건축서비스산업 수요와 종류

□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규모는 감소하고,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70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근접하였으며 2060년에는 약 40%(17,622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축공간 수요자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¹⁹⁾

1980년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약 38만호였으나 2017년 562만호로 147% 증가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3.2%였으나, 2045년에는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⁰⁾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급증, 가구 유형의 다양화로 사회구조 다변화가 예상되며,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가구유형 다양화도 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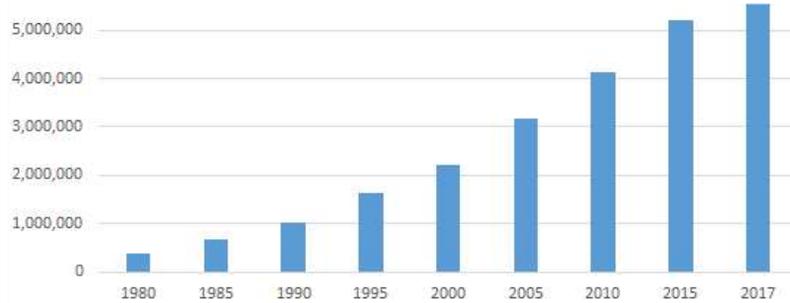
한편, 2016년 기준으로 유배우자 가구는 1,188만 4천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33만 1천 가구로 전체의 44.9%를 차지²¹⁾하고, 다문화가족은 2012년 기준 70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19) 통계청보도자료(2011.12.7),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p. 01 참조

20) 통계청(2017), "2016 고령자 통계", 9월 26일자 보도자료

21) 통계청(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6월 20일자 보도자료

예상하고 있다.²²⁾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로 조사되었다.²³⁾



[그림 2-3] 1980년 이후 1인 가구 수(좌), 65세 1인가구수(우)

출처: 통계청(2017), "2016 고령자 통계", 9월 26일자 보도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축유형과 산업의 등장

인구 및 사회구조(가구구조)의 변화는 저성장 경제 현상과 공유경제, IT 등의 기술과 맞물리며 건축시장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새로운 건축물 유형을 등장시켰다. 다양한 주체들이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없던 공간 활용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확산과 연동되어 공유주택, 공동 작업 공간, 협업이 가능한 개방적 인큐베이터 공간, 팝업스토어 등이 신산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 2-4] 공유공간 플랫폼

출처

<https://blog.naver.com/miya87a/221555311878>(검색일자: 2019.02.01.)



[그림 2-5] 공유주택 사례_커먼타운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3880/>, (검색일자: 2019.02.01.)

22)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2~2017)", pp.15~16

23) 이진홍외(2019),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44호, p.238

한편, 1인가구의 증가로 전통적 형태의 가족활동은 축소되고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하는 생활패턴이 확장되고 있다. 만화카페나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건축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여가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국내만화시장의 경우 2017년도 매출이 1조원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특정 업체의 만화카페는 프랜차이즈가 190여 개로 증가하였다.²⁴⁾ 이들 시설은 대부분 상업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에 위치하며 기존 건축물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대중의 취향과 기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6] 각종 신규 생활서비스 업종

출처: <http://google.co.kr/>, (검색일자 : 2019.02.01.)

24) 김종일,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 시사저널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 DB 및 통계구축 체계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과 토지 등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과 구조물을 기획, 조사, 분석, 계획, 설계하고 개선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²⁵⁾이다. 과거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건축의 기본 프로세스 상에서 시공 및 관리 업무를 제외한 기획업무, 계획 및 중간·실시 설계, 사후설계관리업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²⁶⁾.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은 앞서 정의하였듯이 지식재산서비스를 바탕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간재적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건축서비스 자체 DB만으로는 산업의 현황과 변화예측을 위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 관련 정책 수립의 활용자료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파악하여야 하는 전체 구조를 건축산업으로 정의하고, 연계되는 DB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분야 산업 지원 협회 등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의 형태로 구축되고 있으며 특정 주제 또는 항목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고 대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와 통계

① 국가차원의 DB와 통계

□ 정부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 및 통계구축 현황

2019년 기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는 8개의 처와 18개 부, 17개 청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행정각부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 소속으로 설치된 청²⁷⁾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구축되는 DB 및 건축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25)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p.30.

26)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p.30.

27) 인재채용국(2018.06), 201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위한 정부부처 소개

허가·착공통계, 도시계획, 개발사업, 주거실태 및 시장현황, 건설공사통계 등 각종 주요 DB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 신도시내 일반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외 정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건축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데, 각 부처 산하 별도 기관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정보공개 기준을 토대로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정부의 건축서비스산업관련 DB 및 통계

부	청	통계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	-
	국세청	-	-
	관세청	-	-
	조달청	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사업실적 · 최근 5년간 시설사업실적 추이 · 계약금액 기준별 시설사업실적 · 계약방법별 시설사업실적 · 낙찰방법별 시설사업실적 · 수요기관별 시설사업실적 · 업체소재지별 시설공사 수주현황 · 공종별 실적(신규+차수+변경금액) · 맞춤형서비스(공사감리 수주) 현황
통계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공사계약통계 · 건설업조사 · 건축물통계 · 건축허가및착공통계 ·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 도시계획현황 · 도시정비사업현황 · 설비건설업통계조사 · 수자원현황 ·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 시설물정보현황 · 완성공사원가통계 · 전기공사업통계조사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종합건설업조사 · 한국수문조사 · 해외건설주주통계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 임대주택통계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거실태조사 · 주택건설실적통계 · 주택도시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 주택보급률 · 주택보증통계 · 주택소유통계 ·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 주택총조사
교육부	-	-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	-	
외교부	-	-	
통일부	-	-	
법무부	2019 교정통계연보		· 제4장 교정시설(시설별 현황, 기능별 현황)
	2018 교정통계연보		· 제4장 교정시설(시설별 현황, 기능별 현황)
검찰청	-	-	
국방부	-	-	
병무청	-	-	
방위사업청			
행정안전 부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 생활안전(지역경찰 관서 현황, 전국 해바라기센터 현황)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 시도 소방관서 현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 공공도서관 현황 ·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체육		·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재청	-	-	
농림축산 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상업통상 자원부	-	-	-
	특허청	-	-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 통계	· 복지시설(시설구분별 시설수, 시설유형별 시설수)
환경부		-	-
	기상청	-	-
고용 노동부		-	-
여성 가족부		청소년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가족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 모자보호 시설수 및 생활 현황
국토 교통부		국토/도시	[승인통계] · 건축물통계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국토지리정보현황 · 도시계획현황 · 측량업체입금실테조사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개발행위허가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 국토현황(행적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 도시 일반현황 · 도시계획사업 현황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 수도권과 지방현황 ·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
			[행정자료] · 개발제한구역현황 · 건축사현황 · 국토계획 · 도시개발사업현황 · 사업단지 현황 · 수도권계획 · 지역균형발전계획('15년 이후 추가 지정 없음)
			[승인통계] · 공간정보산업조사 · 공동주택매매 실거래가격지수 · 도시정비사업현황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 부동산거래현황(2014~)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 임대주택통계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거실태조사 ·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향 ·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 주택도시기금 및 분양보증현황 · 주택보급률 · 주택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
	<p>[e-나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재고주택현황 · 인구 천명당 주택수 · 임대주택 건설실적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 임대주택 재고 · 자가점유비율 · 재건축 추진현황 · 주택 미분양 현황 · 주택건설인허가실적 · 주택도시기금조성및운용실적 · 주택매매가격동향 · 주택멸실현황 · 주택보급률 · 주택전세가격동향 · 택지공급/지정 실적
	<p>[행정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현황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 입주자저축가입자현황 · 주택사업자현황
건설	<p>[승인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건설공사계약통계</u>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임금실태조사 · 건설업경영분석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u>설비건설업통계조사</u> · <u>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계약실적)</u> · <u>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기성실적)</u> · <u>시설물정보현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공사원가통계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종합건설업조사 · 해외건설수주 현황
		<p>[e-나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수주 동향 · 건설투자 동향 · 골재허가실적 및 채취실적 · 하천정비(제방)현황 · 해외건설수주
		<p>[행정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감리현황(2013년 이후 통계생산 중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황 · 건설기계 현황 통계 ·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체 현황 · 건설신기술지정현황(연도별) · 건설업체수 및 부도업체수 · 건설자재현황_연도별골재채취현황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자료	· 행복도시 신도시내 일반건축물 허가현황 (2014년 9월 ~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	-
중소벤처기업부	-	-

출처 :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검색일자 : 2019.06.12.)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건축서비스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계작성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운영하여 국토·도시, 주택, 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분야의 통계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승인통계, e-나라지표, 행정자료 등을 공개²⁸⁾함으로써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분야별 통

28)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토교통통계 소개, <http://stat.molit.go.kr/portal/info/intro.do> (검색일: 2019.6.20.)

계 제공뿐만 아니라 부서별 통계, 명칭별 통계, 지역별 통계로 구분하여 목적별로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타기관의 통계와 국제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분류한 분야 중 중 국토·도시, 주택, 토지, 건설 분야의 데이터들이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들로,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와 같은 건축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택분야에서는 부동산·공동주택 등의 거래동향조사, 주거환경현황, 주택보급률 등의 공동주거 건축물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토지의 경우 지가 및 지적, 토지의 소유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건설의 경우 건설공사계약통계, 건설업조사, 국내의 건설수주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업체 수에 관한 데이터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종합건설업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도시정비사업현황, 주택사업자현황, 건설업체수 및 부도업체 수 등이 있고,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건설공사계약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시설물 유지관리업조사(계약실적·기성실적), 해외건설수주 현황 등이 있다.

[표 2-5] 국토교통 통계누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분야 자료(Data) 현황

분야	유형	자료명	
국토·도시	승인통계	· 건축물통계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도시계획현황
		· 국토지리정보현황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도시 일반현황
		· 개발행위허가 현황	· 도시계획사업 현황
		· 건축물현황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 도시공원·녹지·유원지
	행정자료	·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계	· 수도권과 지방현황
		· 개발제한구역현황	· 용도지역·용도지구현황
		· 건축사현황	· 도시개발사업현황
		· 국토계획	· 산업단지 현황
주택	승인통계	· 공간정보산업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공동주택매매 실거래가격지수	· 주거실태조사
		· 도시정비사업현황	·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준공·착공)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 주택보급률
		· 부동산거래현황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 임대주택통계	·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e-나라지표	· 유형별재고 주택현황 · 인구 천명당 주택수 · 임대주택 건설실적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 임대주택 재고 · 자가점유비율 · 재건축 추진현황 · 주택미분양 현황	· 주택건설인허가실적 ·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 주택매매가격 동향 · 주택밀실현황 · 주택보급률 · 주택전세가격 동향 · 택지공급·지정실적
	행정자료	·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현황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 입주자저축가입자현황 · 주택사업자현황
토지	승인통계	· 외국인토지현황 ·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지적통계	· 택지예정지주지정 및 공급 현황 · 토지소유현황
	e-나라지표	· 지가동향	· 토지거래동향
	행정자료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개업공인증가사 현황(분기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현황	· 부동산 개발업등록현황(총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처리 현황
	승인통계	· 건설공사계약통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 건설업경영분석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설비건설업통계조사	· 시설물 유지관리업조사(계약실적·기성실적) · 시설물정보현황 · 완성공사원가통계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종합건설업조사 · 해외건설수주 현황
건설·수자원	e-나라지표	· 건설수주 동향 · 건설투자 동향 · 골재허가실적 및 채취실적	· 하천정비(제방)현황 · 해외건설수주
	행정자료	· 건설공사감리현황(-201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황 · 건설기계 현황 통계 ·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체현황 · 건설신기술지정현황	· 건설업체수 및 부도업체수 · 건설자재현황·연도별 골재채취현황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외부통계·기타	승인통계	· 고용현황 · 인구 및 가구현황 · 주요경제지표	· 기상현황 · 재해현황 · 운수업조사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선택', <http://stat.molit.go.kr/portal/cate/partStts.do?stts=01>
20000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검색일자 : 2019.06.20.)

종사자와 관련한 데이터로는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황, 건설기술인 및 용역 업체현황 등이 있으며, 시설(장비)나 기술·자격증·교육 관련 데이터는 건축사현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현황, 건설기계 현황 통계, 건설신기술지정현황 등이 있다.

- 세움터

세움터는 건축 관련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이다. 이는 1996년 국토해양부의 건축 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 민원의 접수·처리, 건축물대장관리, 단체관리, 통계처리 업무 전산화를 위해 개발된 건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을 고도화한 것으로²⁹⁾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가 모두 포함된 방대한 정보구축 플랫폼이다. 세움터의 DB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세움터 DB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건축 통계는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통계다.

세움터 인허가 통계는 인허가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석 항목을 기반으로 집계한 월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대한 통계 자료이며 2013년 1월부터는 분기별·반기별·연도별로 해당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움터의 인허가 통계 세부내용은 시도별·용도별·건축방식별·구조별·사업주체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현황을 보여준다. 또한 특수 주제로 한옥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인허가 내용과 더불어 2008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 통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³⁰⁾ 건축물통계는 인허가 및 착공통계에 더하여 층수별 건축 현황과 건축물 노후도, 멸실건축물, 1인당 건축물, 국토면적대비 건축물 용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6] 세움터 건축정보

항목	내용
대지	대지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건축물 명, 건축물 수, 부속건축물, 용도, 연면적, 구조형태, 지붕, 높이, 층수
주택	가구수, 세대수, 호수, 전유 및 공용면적

29)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B%80%ED%84%B0> (검색일자 : 2019.10.02.)

30)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검색일자 : 2019.10.04.)

설비	승강기수,
성능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점수 및 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점수 및 등급,
기타	허가 및 착공일자, 에너지사용정보

출처 :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 2019.06.20.),

[표 2-7] 인허가 및 착공, 건축물 통계 항목(동수 및 연면적)

구분	항목		
시도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용도별, 용도별 명칭	주거용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업용	공공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생활편익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업용	공장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교사회용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숙박시설	야영장시설
기타	공공	공장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묘지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공공	노유자시설	장례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기타	
건축 구분별	신축	이전	
	증축	대수선	
	개축	용도변경	
구조별	콘크리트	철골철근	
	철골	목조	
	조적	기타	
사업 주체별	개인	지방공사	
	일반법인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지방자치단체	
	주택업체	국가기관	
	LH	기타	
규모별	1백㎡ 미만	5백㎡ ~ 1천㎡ 미만	
	1백㎡ ~ 2백㎡ 미만	1천㎡ ~ 3천㎡ 미만	
	2백㎡ ~ 3백㎡ 미만	3천㎡ ~ 1만㎡ 미만	
	3백㎡ ~ 5백㎡ 미만	1만㎡ 이상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³¹⁾		
	대형 건축물 ³²⁾		
	주상복합 건축물 ³³⁾		
주제별	한옥건축물		
	오피스텔 건축물		
층수별	· 1층	· 11층 ~ 20층	· * 아래-건축물 통계 만해당
	· 2층 ~ 4층	· 21층 ~ 30층	
	· 5층	· 31층 이상	
	· 6층 ~ 10층	· 기타	
소유구분별	· 국공유	· 법인	
	· 개인	· 기타	
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³⁴⁾		
	· 건설중인 고층건축물		
	· 지역별 최고층 건축물		
	· 50층이상 고층 건축 물		
노후화 ³⁵⁾ 건축물	· 10년 미만	· 25 ~ 30년 미만	
	· 10 ~ 15년 미만	· 30 ~ 35년 미만	
	· 15 ~ 20년 미만	· 35년 이상	
	· 20 ~ 25년 미만	· 기타	
멸실 ³⁶⁾ 건축물	· 10년 미만	· 25 ~ 30년 미만	
	· 10 ~ 15년 미만	· 30 ~ 35년 미만	

	· 15 ~ 20년 미만	· 35년 이상
	· 20 ~ 25년 미만	· 기타
1인당 건축물	· 시도별 인구수	
	· 시군구 인구수	
국토면적 대비 건축물	· 지적공부면적지	
건축물용도변화	· 총 용도변화	· 시도별 용도변화 · 많이 바뀐 용도변화

출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 2019.10.04.)

[표 2-8] 지역별 건축물 조성현황(동수)

(동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 체 (7206058)	8.4	5.1	3.5	3.1	2.0	1.9	1.9	0.5	16.3	5.7	5.4	7.4	6.3	8.9	11.3	9.9	2.4	100.0
단독주택 (4199029)	7.7	5.3	3.7	2.6	2.1	2.0	1.7	0.4	12.5	6.3	5.7	7.6	6.4	10.2	12.2	11.2	2.4	100.0
공동주택 (452247)	27.4	7.1	3.5	8.1	1.7	2.2	1.7	0.4	27.6	1.9	2.0	2.9	2.0	1.7	3.7	4.0	1.9	100.0
근린생활시설 (1149493)	10.5	5.5	4.2	3.3	2.5	2.1	2.2	0.5	20.1	5.3	4.7	6.4	5.9	7.2	9.1	8.4	2.0	100.0
문화 및 집회시설 (15026)	7.5	3.9	2.8	1.9	1.6	1.8	1.1	0.6	19.4	7.2	4.1	7.5	6.9	7.9	11.3	10.4	4.2	100.0
종교시설 (34987)	8.0	5.3	2.9	2.9	1.4	1.9	1.9	0.4	18.5	6.3	4.6	6.8	7.1	10.4	10.1	10.0	1.5	100.0
판매시설 (7010)	15.8	10.7	5.2	5.3	3.3	2.6	2.3	0.3	17.3	3.3	3.8	4.6	3.8	5.3	7.4	8.1	1.1	100.0
운수시설 (3416)	7.6	9.5	4.7	13.6	2.1	1.9	2.2	0.4	14.4	5.4	2.6	3.8	4.6	10.1	8.5	6.8	1.9	100.0
의료시설 (6378)	11.9	9.2	5.2	3.5	4.9	2.4	2.4	0.3	14.5	3.6	4.0	6.5	6.9	8.4	7.8	7.8	0.9	100.0
교육연구시설 (73987)	9.9	5.4	3.6	3.7	2.2	3.5	2.2	0.5	17.4	7.8	5.0	7.5	6.8	6.9	8.9	6.8	2.0	100.0
노유자시설 (43522)	7.9	3.9	3.0	3.7	2.3	2.1	1.9	0.5	16.2	5.4	6.8	6.1	9.3	8.7	12.2	8.5	1.5	100.0
수련시설 (3651)	1.8	2.1	1.2	3.2	0.7	0.7	1.5	0.2	16.1	16.6	4.3	10.7	5.4	9.6	13.9	8.7	3.5	100.0
운동시설 (8236)	3.8	2.8	2.3	2.5	1.5	1.6	2.1	0.6	26.2	9.3	5.4	5.6	6.6	7.8	9.1	9.5	3.4	100.0
업무시설 (35267)	25.8	8.7	2.9	5.4	1.8	1.9	1.9	0.5	16.3	4.3	3.7	5.3	4.1	5.6	4.8	5.0	2.1	100.0
숙박시설 (41237)	5.4	5.5	2.5	4.0	2.3	2.2	2.0	0.2	14.3	11.8	4.4	8.5	4.9	7.8	8.0	8.3	7.9	100.0

- 31) 30층 이상
- 32) 1만㎡ 이상
- 33) 지상 2~4층 용도, 주거용 제외, 지상 5층 이상 용도,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 34) 50층 이상
- 35) 10년미만(2010년-2018년), 10년이상-15년미만(2005년-2009년), 15년이상-20년미만(2000년-2004년), 20년이상-25년미만(1995년-1999년), 25년이상-30년미만(1990년-1994년), 30년이상-35년미만(1985년-1989년), 35년이상(~1984년)
- 36) 10년미만(2010년-2018년), 10년이상-15년미만(2005년-2009년), 15년이상-20년미만(2000년-2004년), 20년이상-25년미만(1995년-1999년), 25년이상-30년미만(1990년-1994년), 30년이상-35년미만(1985년-1989년), 35년이상(~1984년)

위락시설	(5572)	3.4	5.3	3.8	2.7	1.9	1.2	4.6	0.1	11.1	8.7	3.9	5.1	6.8	11.1	13.0	14.4	2.8	100.0
공장	(320315)	0.8	4.8	4.1	4.4	1.2	0.9	4.5	0.6	32.7	2.2	6.0	7.6	4.1	5.9	10.5	9.3	0.3	100.0
창고시설	(328306)	0.5	2.2	1.5	1.4	0.7	0.7	1.3	0.7	15.2	6.1	7.1	8.8	8.3	10.7	16.3	10.8	7.5	100.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2013)	2.2	4.1	2.7	3.8	1.6	1.8	4.2	0.7	21.1	5.8	5.7	9.1	6.8	7.6	11.9	9.1	1.8	100.0
자동차 관련 시설	(29827)	5.5	5.3	4.0	4.2	2.9	2.5	3.3	0.5	24.1	5.8	5.1	7.0	6.1	5.9	8.8	7.5	1.6	100.0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40201)	0.0	0.9	0.7	1.0	0.2	0.2	1.3	0.8	18.6	6.1	6.6	12.5	10.7	12.3	16.0	9.8	2.3	100.0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329)	0.9	2.9	1.6	4.1	0.9	0.8	2.6	0.8	28.1	5.2	5.8	8.0	8.2	6.8	12.3	9.5	1.4	100.0
교정 및 군사시설	(28896)	2.6	2.0	2.2	3.4	1.7	3.3	0.2	1.7	32.0	11.0	8.1	9.3	2.9	5.7	7.0	6.0	1.0	100.0
방송통신시설	(3004)	3.4	2.3	2.1	1.9	1.5	1.3	1.6	0.2	15.6	9.6	6.6	4.9	5.4	19.5	14.8	6.4	2.9	100.0
발전시설	(6700)	0.6	1.7	0.8	8.2	0.3	0.2	2.2	0.3	9.5	4.7	1.9	16.8	14.1	18.9	11.5	6.7	1.7	100.0
묘지 관련 시설	(1360)	2.5	1.6	0.7	1.9	2.8	4.6	1.5	0.9	27.5	8.3	5.2	7.5	6.4	8.0	8.8	7.9	3.8	100.0
관광휴게 시설	(6423)	2.4	1.8	2.3	2.7	0.4	1.1	1.2	0.2	22.8	9.7	9.1	7.2	6.3	7.9	13.2	8.8	2.9	100.0
장례시설	(348)	1.7	2.0	0.9	3.4	4.6	1.1	0.3	0.9	12.6	5.2	6.9	11.8	10.6	18.4	10.9	6.9	1.7	100.0
야영장 시설	(1085)	0.2	0.0	0.0	3.5	0.0	0.2	0.4	1.6	31.0	14.0	6.9	9.1	4.5	2.8	13.8	11.2	0.8	100.0
기타	(1794)	3.7	22.1	2.3	2.5	1.8	0.1	0.5	0.1	16.4	16.9	0.8	7.9	3.3	3.9	3.4	12.3	2.1	100.0
확인불가	(8399)	0.3	1.2	0.5	1.2	0.5	0.3	0.2	0.1	19.3	18.4	1.2	4.8	9.7	1.7	23.5	8.8	8.5	100.0
85㎡ 미만	(2534269)	4.1	5.5	2.4	2.2	1.5	1.3	1.4	0.5	9.1	7.4	5.7	8.5	7.4	12.9	15.0	12.2	3.0	100.0
85~100㎡ 미만	(637752)	2.1	2.6	1.7	1.8	1.5	1.3	1.4	0.6	11.8	7.0	7.2	10.5	9.6	12.5	14.7	10.7	3.1	100.0
100~200㎡ 미만	(1629508)	8.2	5.9	4.5	2.7	2.7	2.1	2.0	0.5	19.0	5.4	5.7	7.1	5.8	7.6	9.8	8.8	2.3	100.0
200~300㎡ 미만	(549856)	18.0	4.2	4.3	3.8	1.7	1.9	2.1	0.4	21.6	4.5	4.6	5.4	4.6	5.2	7.8	8.1	1.9	100.0
300~500㎡ 미만	(777934)	12.9	4.4	5.0	4.5	2.3	2.9	2.6	0.4	24.1	4.2	4.6	5.4	4.6	4.8	7.9	7.7	1.7	100.0
500~1,000㎡ 미만	(541555)	16.4	5.0	4.0	5.2	1.9	2.5	2.2	0.4	24.9	3.2	3.9	5.8	4.4	4.1	8.0	6.3	1.9	100.0
1,000~2,000㎡ 미만	(202663)	12.6	5.6	3.9	4.5	2.2	2.1	2.3	0.4	21.0	3.9	4.6	6.6	5.7	6.2	8.7	8.0	1.8	100.0
2,000~3,000㎡ 미만	(70359)	13.0	6.1	4.1	5.0	2.4	2.4	2.5	0.5	20.8	3.9	4.4	6.0	5.3	5.5	7.6	8.4	2.2	100.0
3,000~10,000㎡ 미만	(157607)	13.3	5.8	4.2	5.5	3.1	2.9	2.5	1.0	27.1	3.4	3.9	5.1	3.8	3.7	5.6	7.9	1.3	100.0
10,000㎡ 이상	(57759)	17.2	7.7	5.2	6.2	3.5	3.5	3.0	0.9	26.0	2.3	2.9	4.1	3.2	2.7	4.8	6.3	0.5	100.0
확인불가	(46796)	0.6	0.5	7.8	0.3	0.4	0.3	10.5	0.8	12.7	0.7	7.9	13.0	0.6	1.4	1.4	38.5	2.5	100.0
철근콘크리트조	(1783269)	15.6	5.7	4.5	4.9	2.2	2.9	2.6	0.4	21.1	4.4	4.0	5.2	4.1	4.6	7.2	7.9	2.7	100.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21037)	1.3	3.6	2.8	3.1	2.0	1.1	2.1	0.6	34.6	4.6	5.2	7.8	5.4	6.9	9.2	8.7	0.9	100.0

철골조	(5710)	2.3	2.0	4.9	2.0	0.3	0.3	1.0	0.1	63.2	0.7	2.7	3.6	0.8	0.4	12.1	3.2	0.3	100.0
목조/일반목조	(1344320)	3.9	3.9	2.1	2.0	1.5	0.7	0.9	0.4	8.7	7.9	4.0	9.3	7.8	15.8	13.8	15.4	2.0	100.0
벽돌/조적/세멘벽 돌/시멘트블럭/시 멘트	(2595045)	10.1	6.9	4.5	2.9	2.4	2.3	1.8	0.4	12.7	4.8	6.2	6.9	6.4	8.6	11.3	9.1	2.9	100.0
벽돌조/석조/연와 조/조적조																			
경량철골조	(841009)	0.4	1.0	1.1	1.5	0.9	1.0	2.3	0.8	15.9	8.3	8.5	10.7	8.7	9.9	17.3	9.2	2.3	100.0
기타	(8571)	1.7	1.1	1.4	1.3	1.2	0.5	0.7	0.4	27.1	11.8	2.7	5.9	7.6	9.7	14.2	8.7	4.0	100.0
확인불가	(7097)	0.9	1.4	0.7	1.1	0.3	0.3	0.9	0.2	26.6	11.5	2.3	7.4	10.2	3.7	20.9	6.4	5.0	100.0
6층 미만	(6978035)	7.9	5.0	3.5	3.0	1.9	1.8	1.9	0.5	16.1	5.8	5.5	7.5	6.4	9.1	11.6	10.1	2.5	100.0
6층~11층 미만	(91521)	36.0	10.1	2.9	5.4	1.9	2.5	2.4	0.4	17.9	2.0	1.9	2.4	1.9	2.1	3.0	5.1	2.1	100.0
11층~16층 미만	(57446)	19.0	5.7	3.8	5.0	3.6	3.3	2.3	0.7	24.2	4.1	3.9	4.8	4.0	3.8	4.1	7.0	0.8	100.0
16층~21층 미만	(32964)	14.7	5.5	6.0	5.4	4.5	2.8	2.1	1.1	35.4	2.0	2.0	3.3	3.0	2.4	3.8	5.8	0.1	100.0
21층~31층 미만	(22501)	15.4	11.1	4.6	6.6	2.2	3.3	2.7	2.4	32.3	0.9	1.9	3.4	1.4	1.3	3.5	7.1	0.0	100.0
31층 이상	(2425)	15.3	15.4	5.6	15.0	1.9	2.4	4.7	0.0	23.9	0.5	2.2	3.3	0.9	0.2	3.6	5.0	0.0	100.0
확인불가	(21166)	3.7	3.7	3.2	1.9	1.9	1.4	1.4	0.6	21.3	5.1	2.6	16.2	7.9	8.0	6.9	11.2	2.9	100.0
10년 이하	(1281019)	4.7	2.8	2.4	2.8	1.6	1.5	2.2	0.7	23.0	6.0	6.0	8.2	6.4	7.8	11.2	9.3	3.4	100.0
11년~15년 이하	(572817)	4.7	2.4	2.3	3.1	1.7	1.5	2.3	0.5	24.0	6.3	6.1	8.2	6.8	7.7	11.4	9.3	1.7	100.0
16년~20년 이하	(648310)	8.7	3.7	3.5	3.6	1.8	2.1	2.2	0.5	24.2	5.7	4.4	7.1	5.6	6.3	9.5	8.7	2.3	100.0
21년~30년 이하	(1511716)	11.8	4.1	4.2	3.4	1.8	1.9	2.3	0.4	17.6	5.1	4.8	7.0	6.1	7.5	10.0	9.4	2.5	100.0
31년~40년 이하	(903868)	12.5	9.1	6.3	4.2	3.2	3.2	2.3	0.3	13.7	5.1	4.4	5.2	5.2	7.3	7.9	7.5	2.6	100.0
41년~50년 이하	(670395)	11.0	10.6	5.5	3.3	2.7	3.2	1.5	0.3	6.9	3.6	5.1	5.7	6.9	10.8	11.3	8.8	2.8	100.0
50년~100년 이하	(1003597)	5.9	4.0	2.3	1.1	0.5	1.2	0.7	0.5	5.3	2.9	6.1	9.2	8.8	16.0	18.4	15.6	1.5	100.0
100년 이상	(76495)	0.4	0.4	1.5	0.6	0.4	1.0	1.1	0.8	5.3	1.1	11.9	12.2	10.5	10.0	26.5	15.8	0.5	100.0
확인불가	(537841)	6.4	6.7	0.8	3.9	3.8	0.5	1.4	0.2	17.6	15.7	6.0	8.0	2.4	7.3	7.8	9.2	2.4	100.0
민간	(6100530)	7.2	5.0	3.6	2.6	2.0	1.9	2.0	0.4	15.3	5.9	5.7	7.6	6.4	9.2	12.1	10.5	2.5	100.0
공공	(192157)	6.2	4.2	2.3	3.4	1.4	1.9	1.8	0.7	14.8	10.4	6.3	7.8	6.5	11.5	9.7	9.1	2.1	100.0
기타	(158618)	4.9	3.0	1.8	1.9	1.8	1.4	1.3	0.6	13.8	5.3	8.0	8.8	9.5	12.2	11.5	12.2	2.1	100.0
확인불가	(754753)	19.2	6.0	3.5	6.9	1.7	1.8	1.5	0.5	25.5	3.2	2.2	5.3	4.6	5.2	5.7	.3	2.0	100.0

출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데이터 분석하여 연구진이 작성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의 조정·생산·서비스 주체인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들이 생산하는 통계와 그 외 데이터, 국제 데이터를 모아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국내통계, e-지방지표, 국제통계, 북한통계, 쉽게보는 통계(통계 중 흥미로운 자료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도움), 시각화콘텐츠, 공유서비스 등³⁷⁾이다.

주제별로는 인구·가구, 물가·가계, 농림어업,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고용·임금, 교육·문화, 도소매·서비스, 보건·복지, 사회, 과학·환경,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국제수지의 16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건축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는 건설·주택·토지, 고용·임금,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등이다. 통계청 통계는 각 부처의 주요 통계를 국가통계의 기준에서 검토하여 제공하므로 산업전반의 현황을 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표 2-9] 국가통계포털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분야 통계 현황

분야	주제	통계명			
건설	건설	· 건설경기동향조사	· 수자원현황		
		· 건설업조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 건설공사계약통계	· 시설물정보현황		
		· 건축물통계	· 완성공사원가통계		
		· 건축허가및착공통계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 종합건설업조사		
		· 도시계획현황	· 한국수문조사		
		· 도시정비사업현황	· 해외건설수주통계		
		· 설비건설업통계조사	· 전기공사업통계조사		
		주택 토지	주택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 주거실태조사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주택건설실적통계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 주택도시시기금및주택분양보증 현황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주택보급률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 주택소유통계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 주택총조사				
· 임대주택통계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토지	토지			· 국토지리정보현황	· 지적통계
				· 부동산거래현황	· 택지에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 외국인토지현황	· 토지소유현황		

37)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소개, <http://kosis.kr/serviceInfo/kosisIntroduce.do> (검색일자 : 2019.06.20.)

고용 임금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허가제고용동향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노동생산성지수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일자리행정통계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외 조사
	임금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임금실 태조사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외
도소매 서비스 과학·환경	도소매· 서비스	· 서비스업조사 · 산업디자인통계	· 서비스업동향조사 ·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외
	과학·환 경	· 환경산업통계조사 외	
경기·기업 경영 무역·국제 수지	경기·기 업경영	· 건설업경영분석 · 경제총조사 · 기업경영분석 · 기업활동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 석 외
	무역·국 제수지	· 기술무역통계 외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od=MT_ZTITLE&parmTabId=M_01_01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06.20.)

□ 조달청의 사업정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공급하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건설서비스 제공과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재정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부보유 물자관리 및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보유 부동산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통합공고하며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³⁸⁾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공공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정보를 통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의 건축 관련 주요통계로는 시설사업실적, 최근 5년간 시설사업실적 추이, 계약금액 기준별·계약방법별·낙찰방법별·수요기관별·업체소재지별·공종별 시설사업실적과, 맞춤형서비스 현황이 있다. 이러한 통계는 공공기관의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발주처, 사업물량, 발주방식과 사업비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시 참고 뿐 아니라 민간의 입찰 참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8) 인제채용국(2018.06),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후보자를 위한 정부부처 소개, p. 138

조달청뉴스
조달청 소개

☞ **관련사이트**

- 종합소팅몰
- 벤처나라
- 공사비 정보광장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장터 (ITC Procurement Map)
- 비록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전자식별(EFID) 물품관리
- 조달정보개발포털
- 기술평가위원신청시스템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계		300억 이상		100억원 ~ 300억		100억원 ~ 50억원		50억원 ~ 10억원		10억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2,797	91,126	43	29,838	179	27,815	212	15,976	533	12,111	1,770	5,391
2017년	2,870	123,060	63	58,838	187	30,992	208	16,189	525	11,812	1,886	5,619

• 신규공사, 송부기 계약금액 기준(기술동역 제외)

04 계약방법별 시설사업실적

05 낙찰방법별 시설사업실적

06 수요기관별 시설사업실적

07 업체소재지별 시설공사 수주현황

08 공종별 실적(신규+차수+변경금액)

09 맞춤형서비스(공사감리 수주) 현황

[그림 2-8] 조달청 통계정보

출처: 통계청, <http://www.pps.go.kr/kor/jsp/offerData/statistics/statistics03.pps#>
(검색일자 : 2019.06.20.)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상훈을 관장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 정부혁신 및 행정능률과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과 선거 시 국민투표에 대한 사무적 업무 등을 수행한다.³⁹⁾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정부조직, 주민등록인구, 자원봉사, 지방재정, 지방세 기록물, 감정통계가 있고 당 해의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⁴⁰⁾에 등록된 행정안전부 국가승인통계와 연동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건축 관련 주요 통계로는 한국도시통계가 있으며 경찰청의 경찰통계자료와 소방청의 2019 소방청통계연보, 2018 소방청통계연보, 2017 소방청통계연보 등에서 해당 시설에 관한 서비스 통계가 제공된다.⁴¹⁾

39)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7/ministryInfo/screen.do> (검색일자 : 2019.06.20.)

40)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 2019.06.20.)

41) 경찰청, <https://www.mois.go.kr/frt/sub/a07/ministryInfo/screen.do> (검색일자 : 2019.06.20.), 소방청, <http://www.nfa.go.kr/nfa/releaseinformation/statisticalinformation/main/;jsessionid=oxauoeY32d47AByzcSpGTNJ.nfa21> (검색일자 : 2019.06.20.)

[표 2-10] 행정안전부의 통계 현황

분야	통 계 명	
사고발생현황	· 사고발생현황	
자연재해현황	· 시도별 피해현황 · 시도별 피해복구액	· 시설별 피해
자전거이용현황	· 자전거도로 현황 · 자전거 주차장 설치현황 ·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현황 · 자전거 수리센터 현황 ·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 현황 · 자전거 관련 영조물책임보험 현황	·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 방치자전거 수거 현황 ·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현황 ·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현황 ·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 현황 · 자전거 교통사고 월별 발생현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사업체,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매출액 및 영업이익 · 수출현황	· 현구개발현황 · 지적재산권현황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전자정부서비스이 용실태조사	· 행정서비스 · 전자정부서비스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 성별 인구수	· 5세·1세별 인구수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 지역개발기금사업 · 경영개발사업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 시개발공사 · 지방공단 · 도시철도공사 · 기타공사
지방세의 수입징수 실적	· 지방세의 징수실적(2005~1981)	
지방세통계	· 지방세 총괄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 지방세 관련 통계 · 과거년도의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	· 총괄 · 일반직 공무원 정·현원 · 기능직공무원 정·현원 · 별정직 공무원 정·현원 · 특정직 공무원 정·현원 · 계약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 · 여성공무원 · 연령, 학력 · 공무원 총 근무년수	· 현직급 근무연수 · 현직위 근무연수 · 평균승진소요년수 · 대우공무원 · 필수실무요원 · 임용, 징계, 포상, 퇴직 · 소청심사 ·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2015년 이후(11월1일 기준)	· 2006~2015년(1월1일 기준)

한국도시통계	· 한국도시통계(2009~) · 한국도시통계(2001~2008) · 한국도시연감(~2000)	· 한국도시연감(~1978) · 한국도시연감(~1973) · 한국도시연감(~1967)
전자정부수출 실적조사	· 분야별 수출실적년 2016~2017 · 자금유형별 수출실적년 2016~2017	· 사업성격별 수출실적년 2016~2017 · 수출실적 총괄년 2016~2017 · 국가별 수출실적년 2016~2017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 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06.20.)

생활안전

▣ 지역경찰 관서 현황

· 지역경찰 관서 현황(2016.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구대	518	88	49	30	37	19	18	10	67	19	30	27	32	22	15	22	27	6
파출소	1,486	152	44	32	38	21	10	20	171	75	75	52	90	142	190	211	144	19
치안센터	1,038	186	92	58	37	7	21	7	34	5	56	43	85	68	123	95	107	14

▣ 코드별 112신고 접수현황

▣ 자율방범대 현황

▣ 경비업체 현황

▣ 기초질서 단속 실적

▣ 총포 소지허가 현황

▣ 전국 해버리기센터 현황

[그림 2-9] 경찰청 주요통계정보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48>
(검색일자 : 2019.06.20.)

2019 소방청 통계연보		권리자
2019년 위험물 통계자료(2018년 기준)_발간음(최종)		권오상
2018년 구급활동 분석결과		김동휘
2017년, 2018년 소방산업통계 자료		여기말
2018 소방청 통계연보		정보통계담당관
2018년 예방소방통계자료		김성두
2017년 구조·구급활동 통계분석		김동휘
2017년 소방청 성과관리시행계획		강문구
2017년 소방청 공영차량 접수 및 운임연항 자료		신연덕
위험물통계(2009년~2018년)		권오상
소방청 성과관리전략계획('17~'21)		강문구
2017 소방청 통계연보		정보통계담당관실
2016년 국민안전서 통계 연보		정보통계담당관실
2015, 2016 소방산업 통계집계보		이병희
2017년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오승삼

[그림 2-10] 소방청 주요통계정보

출처: 경찰청, <http://www.nfa.go.kr/nfa/releaseinformation/statisticalinformation/main/;jsessionid=oxaueY32d47AByzcySpGTNJ.nfa21> (검색일자 : 2019.06.2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반 확대 및 예술 창조 역량 강화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한다. 선진형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및 체육 진흥, 건전 종교활동을 지원하며 국정에 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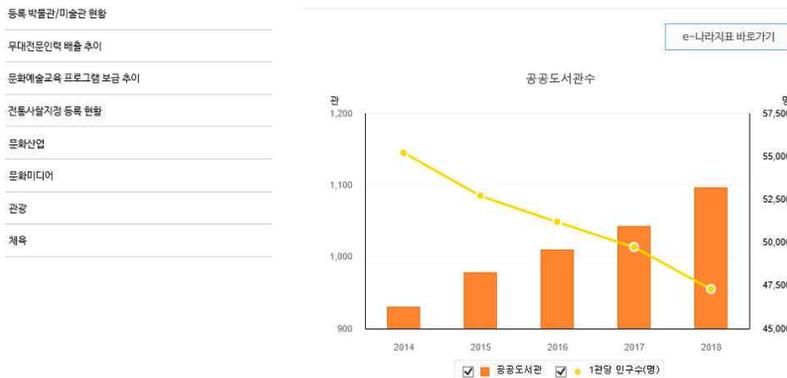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통계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로 문화예술통계, 문화산업통계, 관광통계, 체육통계가 있다. 건축 관련 서비스 통계로는 각 주제별로 연관된 건축물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정보로서 공공도서관 현황,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체육과 관련된 체육시설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통계화하여 제공한다.

42)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about/intro/greeting.jsp (검색일자 : 2019.06.20.)

[표 2-11] 문화센터 주제별 통계

분야	통계명
문화예술	(공연예술조사)공연시장 규모 및 특성분석, 공연시설 운영현황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시설 이용 (전국도서관통계) 전국도서관현황
문화산업	문화산업 현황
관광	국민여행조사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체육	국민생활체육조사 / 장애인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출처: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l>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06.20.)



[그림 2-11] 문화센터 통계정보

출처: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l> (검색일자 : 2019.06.20.)

□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복지시설 통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한의학 정책과 건강보험정책 및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조정하고 보건의료산업·생명윤리정책,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및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 국민연금제도 기금 운영, 노인보건복지 정책,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아동·보육정책 총괄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⁴³⁾

4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1 (검색일자 : 2019.06.20.)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보육·아동, 노인, 장애인, 질병·건강, 보건·의료의 통계 분야를 제공하는데, 건축과 관련된 통계로는 사회복지장 통계인 복지시설의 수가 있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줄어드는 아동인구에 대한 복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데, 시설기획과 설계, 관리, 예산 등 건축 및 운영 관점의 주안점 반영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2-12] 보건복지부의 각 분야별 통계조사 현황

분야	통계명
보육/아동	아동종합실태조사 /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노인	노인실태조사 / 노인복지시설현황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현황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질병/건강	공중영업소실태보고 /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이용현황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06.20.)

승인통계(보건복지부 통계)

현행통계		작성중지 통계														
색인별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기타
분야별	전체	보육/아동	노인	장애인	질병/건강	보건/의료	사회									
기년월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보육/아동'에 대하여 총 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통계명	소관부서	분야	작성방법	공표일정	기년월
산후조리실태조사	출산정책과	보육/아동	조사통계	2019년 01월	
보육실태조사	보육정책과	보육/아동	조사통계	2019년 04월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보육정책과	보육/아동	보고통계	2019년 04월	

[그림 2-12]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검색일자 : 2019.06.20.)

□ 여성가족부의 여성 지원시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고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복지정책을 마련한다.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한다.⁴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여성고용, 청소년, 가족, 젠더폭력 분야에 대한 통계들을 제공

44)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i/amo/mi_amo_f002.do (검색일자 : 2019.06.20.)

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 통계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모자보호 시설 수 및 생활 현황 등 건축시설 통계가 제공된다.⁴⁵⁾ 특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여성이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수요자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적 측면의 의미와 가치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13] 여성가족부 각 분야별 통계조사 현황

분야	통계명
성평등	· 성불평등지수(GII)현황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IPU 여성국회의원비율 및 각국의 순위
여성고용	·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 여성경제 활동인구 및 참가율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 청소년 가출 실태 · 전국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현황 ·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실태
가족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 국제결혼 현황 · 모자보호 시설수 및 생활현황 ·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한부모 가구비율 ·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젠더폭력	·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o/stt/io_stt_f001.do (검색일자 : 2019.06.20.) 를 참고하여 작성

○ 성평등

성불평등지수(GII)현황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IPU 여성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	-------------	------------------------

○ 여성고용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여성경제 활동인구 및 참가율
-------------------	--------------	------------------	-----------------

○ 청소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청소년 가출실태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현황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실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현황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1388 청소년 전화접수현황

[그림 2-13] 여성가족부 통계정보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검색일자 : 2019.06.20.)

45) 여성가족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검색일자 : 2019.06.20.)

□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ECOS)

국가의 화폐발행, 통화신용정책 및 각종 금융시스템 안전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은 경제통계 시스템(ECOS)을 운영하면서 금융 및 물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4년 1월부터는 정책입안자와 일반인들에게 이들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통계검색(증감률 계산, 그래프보기, 다운로드 기능 포함) 및 통계간행물 검색은 물론,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⁴⁶⁾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통화 및 유동성지표,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예금/대출금/기타금융, 금리, 지급결제, 증권, 재정, 물가, 국제수지/외채/환율, 기업경기/소비자동향/경제심리,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대출행태조사, 산업 및 고용, 거시경제분석 지표, 해외/북한이라는 18개의 분야별 주제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⁴⁷⁾

한국은행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직접적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과 산업 및 고용 중 국내건설수주액, 건축허가현황, 건축물착공현황, 건설기성액,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주택보유수 및 주택 보급률, 미분양주택현황 등 건축시장의 주요지표에 대한 건축서비스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46)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소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 2019.10.11.)

47)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소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 2019.10.11.)

[표 2-1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내 통계자료목록

분야	통계명		
통화 및 유통성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통화금융지표 · 본원통화 · M2(광의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 Lf(금융기관 유동성)관련 통계 · L(광의 유동성) 구성내역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주요계정 · 화폐발행잔액 · 예금은행 지급 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산반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원화 대출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예금/대출금/기타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은행 수신 ·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 · 산업별대출금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여수신 · 가계신용 · 기타 금융 통계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여수신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 금리연동대출 비중 ·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지급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교환 및 부도 · 한은금융망 · 지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공동망 · BIS 기준통계 · 전자금융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시스템통계 · 신용카드 · 금융정보화 통계
증권/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채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공급물가지수 · 총산출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지수 · 수출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가지수 · 기타가격지수
국제수지/외채/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 지역별 국제수지 · 통관기준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지수 · 외환보유액 · 국제투자대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채무/채권 · 환율 · 해외투자/차관
기업경기/소비자동향/경제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기실사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심리지수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지표 · 경제활동별 · 지출항목별 규모 · 생산 및 지출 · 소득 및 처분 · 자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거래(종합계정) · 제도부문별 생산 · 소득 · 자본계정 ·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 총자본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소비지출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계정 · 총저축과 총투자 · 정보통신산업(실질)
자금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SNA기준 · 1993 SNA기준(2002~2013) · 1968 SNA기준(1975~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SNA기준(1969~1974,연간) · 1953 SNA기준(1962~1970,연간) 	
기업경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분석지표 · 성장성에 관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

분야	통계명		
통화 및 유통성 지표	· 주요 통화금융지표 · 본원통화 · M2(광의통화)	·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 Lf(금융기관 유동성)관련 통계 · L(광의 유동성) 구성내역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 한국은행 주요계정 · 화폐발행잔액 · 예금은행 지급 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산반월)	· 한국은행 원화 대출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예금/대출금/기타금융	· 예금은행 수신 ·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 · 산업별대출금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 지역별 여수신 · 가계신용 · 기타 금융 통계	
금리	· 시장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여수신 비중	·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 금리연동대출 비중 ·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손익의관계비율 ·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 자산자본의 회전을 · 생산성에관한지표 · 부가가치의 구성	· 제조원가명세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비율 · 기업경영분석(분기) ·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 기업경영분석(지역)
산업연관표	-		
국민대차대조표(2015년 기준년)	· 자산별 자본스톡 ·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명목) ·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 말기준)	
대출행태 서베이	· 대출태도	· 신용위험	· 대출수요
산업 및 고용	· 산업일반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고용 · 임금 · 기계 · 사회
거시경제 분석 지표	-		
해외/북한	· 주요국제통계 ·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 북한 GDP 관련통계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체 목록",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자 삶 제고를 위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의 관행 개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청년허브구축과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복지 증진에 관한 일자리 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진입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산재보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미래 적합 직업훈련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⁴⁸⁾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는 고용, 임금근로시간, 기업체 노동비용, 사회보험, 사업체 현황, 직업훈련, 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평등, 산업재해 분야 등에 관한 것이며, 건축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⁴⁹⁾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생산하는 사업체 현황정보는 건축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개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정보 분석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표 2-15] 고용노동부 내 통계자료목록

분야	통계명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 빈일자리 · 입이직/ · 현원 · 구인/ · 채용/ · 미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 · 채용계획/ · 계절조정지수 ·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 기간제근로자/ · 고령자 고용현황 / ·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임금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 직종 산업별 임금 및 근로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직종 산업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 계절 조정 지수
기업체 노동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비용 / · 법정노동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외 복지비용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 상여금 퇴직연금 적용 가입률 · 노조 가입률 · 사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사회보험가입률 · 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 구직급여 · 신청동향
사업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수/ · 종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수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분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근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결정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고용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무 고용현황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현황 · 산재보험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출처: 고용노동통계, “통계DB 주제별 목록”,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2&leftMenuId=0010001100101&bbsId=> 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10.10.)

48)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 (검색일자: 2019.10.10.)

49) 고용노동부,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

② 민간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DB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역량을 증진시키며, 협회의 수입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종합정보센터(Architectural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여 건축실무에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기술, 제품,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자재정보, 건축아카이브, 건축 빅데이터, 적법성검토, 준공도면정보 등이다. 또한 공사감리나 건축물 점검진단 등 건축사의 업무지원에 관한 서비스 정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비품 및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축사대회, 건축 산업대전, 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등 산업계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표 2-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종합정보센터 DB

구분	내용	제공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회원이 건축설계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법령, 자재, 아카이브(문서, 도면 등)의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건축자재 정보유통 서비스 (자재정보, 시방서, 상세도 포함) - 건축아카이브·빅데이터 서비스 - 적법성 검토 서비스 - 준공도면 정보제공 서비스
업무지원서비스	회원이 건축설계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상용제품·서비스를 협회가 선정하여 저가로 회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공사감리업무 지원 서비스 - 건축물 점검진단 지원 서비스 -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지원 서비스 - BIM 도면 관리 서비스 - 온라인 교육 서비스(BIM 등)
공동구매서비스	회원 및 회원사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협회가 대호하여 공동으로 구매하여 저가로 보급하는 서비스	- CAD 공동구매 서비스 - BIM 공동구매 서비스 - 인터넷·전용선 공동구매 서비스 - 비품·기자재 공동구매 서비스
홍보지원서비스	협회가 추진하는 대민홍보, 전시회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한 서비스	-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 한국건축 산업대전 등

출처: 건축종합정보센터, <http://kirahub.kira.or.kr/infomation/company.do> 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06.25.)

010001100101102&leftMenuId=0010001100101&bbsId= (검색일자: 2019.10.10.)



[그림 2-14] 건축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개념도

출처: 건축종합정보센터, <http://kirahub.kira.or.kr/infomation/company.do> (검색일자: 2019.06.25.)

한편,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으로 인해 설계도서 상에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자재 제조사들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추천자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협회의 회원들, 즉 건축사들에게 우수한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축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축자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 제조사들은 생산하고 있는 건축자재들의 정보를 포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림 2-15]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제공 자재정보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http://www.kacg.kr/?pageld=shrm_1 (검색일자: 2019.06.25.)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통계법」에 근거하여 수집한 건설업 관련 통계자료 뿐 아니라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의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그 외 회원사들에게서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및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들은 크게 건설업무, 통계, 법령, 뉴스 및 공고, 교육 및 채용, 업체정보 등이다. 건설업무의 경우 종합건설업안내, 시공능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안내, 영업기간평가안내, 해외건설정보 등이 있으며, 통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건설경기지표, 종합건설업조사, 건설경기전망, 건설경영분석, 종합건설통계 DB 등이 있다.

업체정보는 건설업등록분포현황, 월별등록분포현황, 월별부도업체수현황, 외국건설업체현황 등이 있으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건설업 관련 법령들과 입법예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및 채용 정보는 인재 정보 등록 및 정보 공개, 채용정보 등록, 채용설명회 정보 등이다. 이 중 통계 메뉴의 종합건설의 경우 협회에서 작성하는 통계 외에도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은행,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작성하는 건설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2-17]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제공·관리 데이터

구분	주제	주제별 정보
통계	통계	· 건설경기지표 / · 주요건설통계 · 종합건설업조사 / · 건설경기전망 / · 월간건설경제동향
	건설업무	· 종합건설업안내 / · 시공능력평가안내 / · 상호협력평가안내 · 영업기간평가안내 · 건설적산기준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법 / · 국가계약법
	통계 외	· 건설경영상태분석 / · 완성공사 원가통계 / · 민간건설백서 · 부동산통계 / · 종합건설통계
통계 외	뉴스·공고	· 기술 및 자재 · 건설안전정보 · 해외건설정보 · 건설용역기관
	교육·채용	· 지방계약법 · 노동관련법령 / · 입법예고
	업체정보	· 건설업양도공고
통계 외	교육·채용	· 건설인재평생교육원 · 채용설명회 /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등록
	업체정보	· 인재정보 / · 인재정보 등록 · 제휴업체 채용정보 · 제휴업체 인재정보
	업체정보	· 건설업등록분포현황 · 월별등록분포현황 · 전월대비 등록수변동 · 월별부도업체수현황
통계 외	업체정보	· 외국건설업체현황 · 건설업체검색 · 기업공개안내 및 설정 · e회원명부

출처: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2019.06.25.)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분야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통계작성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부처 홈페이지 통계정보를 통해 일일산업동향, 일일경제지표, 원자재가격정보, 외국인투자통계, 외국인 투자기업정보, OECD다국적기업, 해외자원개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일산업동향 및 일일경제지표의 경우 그날의 추가, 환율, 유가, 금리, 반도체 주요이슈 등의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⁵⁰⁾.

이러한 정부 홈페이지의 7개 주제 외 분야별 통계의 경우 통계청 통계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 기관의 개별 사이트를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엔지니어링산업 및 산업디자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는다.

[표 2-18]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

기관	산업분야	DB운영현황	내용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etis)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통계법에 따라 협회에 위임된 업무; 사업체의 신고, 사업체 대상 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제공
한국 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보고서,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그 밖에 기타 설문조사 결과 제공
		디자인DB	디자인사업 현장·동향정보, 공모·전시·행사 정보, 관련 협회·교육기관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https://www.etis.or.kr/>), 산업디자인 통계조사(<http://kidxp.or.kr/?menu=893>), 디자인DB(<http://www.designdb.com/>)을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06.25.)

50)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http://www.motie.go.kr/motie/py/sa/industrytrend/industryTrendUser/industryTrendList.do?frst_yn=Y (검색일자: 2019.06.25.)

3) 건축서비스산업 유관 통계 구축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 연관 통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F)은 한 개의 대분류에 속한 모든 산업을 묶어 건설업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M7211)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 중 일부인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디자인업(M7320)의 일부인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여러 산업을 망라한다. 따라서 정확한 산업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세세분류의 통계가 필요하지만 관련 통계 대부분이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계 산업에 그치고 있다.

[표 2-19]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노동생산성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산업디자인통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경제총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경영분석			
	기업활동조사			
	환경산업통계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노동생산성지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2-20]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내용

통계명	분류	내용
경제활동인구조사	대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 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중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력 현황 파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중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일자리행정통계	중	산업분류별 일자리(총계, 지속일자리, 소멸일자리 등) 조사
임금근로일자리 동향행정통계	중	분기별로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중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파악
기업경영분석	중	국내기업의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기업활동조사	중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경영실적, 성과관리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
환경산업통계조사	중	환경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중·소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노동생산성지수	소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노동비용을 분기별로 측정, 분석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소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노동실태조사
경제총조사	소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서비스업동향조사	세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업조사	세세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 실태 파악
산업디자인통계	세세	종사자수, 사업실적, 고용 전망 등 디자인산업의 현황 조상

출처: 연구진 작성

이처럼 기존 한국산업표준분류의 범위를 넘나드는 산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산업특수분류(CT·로봇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를 이용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산업 특수 분류는 종전 대·중·소·세분류 각 1개, 세세분류 4개로 구분된 전문디자인업과 다르게 공간,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등 디자인 관련 전 산업분야를 포함해 대분류8, 중분류42, 소분류154개로 구성한다.⁵¹⁾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이러한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매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2-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연혁

출처: 한국산업디자인협회(2018), 2018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총괄보고서 p.1

□ 건설업 통계 현황

건설업의 경우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작성기관 별로 살펴봤을 때,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현황, 허가 및 착공 량, 건설업 고용상황 등 건설업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기관들은 산업전반에 대한 통계 생산을 위한 하나의 분야로 건설업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실태와 노동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 현원 및 부족인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역 현황을, 한국은행은 기업경영실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건설경기와 경제활동인구, 일자리 현황,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통계를 통해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5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디자인 산업, 국가통계분류로 등록”(2013. 8.26)

[표 2-21] 건설업 관련 통계 현황(정부부처, 기관)

작성기관	통계명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물통계	· 전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건축허가및착공	· 건설부문투자동향 및 경제동향분석, 국민소득 추계 및 건축행정의 정책자료, 건축자재 수급, 생산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고용허가제고용동향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사업체노동력조사	·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사업체수, 총 종사자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노동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력 현황 파악
통계청	건설설계동향조사	·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 조사
	일자리행정통계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 근속기간별, 기업체규모별, 산업분류별로 일자리통계를 제공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 분기별로 세부산업별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
	경제총조사	·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기업활동조사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경영실적, 성과관리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무역통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국내기업의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통계청 KOSIS에 등록된 건설업 관련 통계 조사 결과, 건설업 세부 분야별로 관련 협회에서 통계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각 산업의 연간 실적을 조사하고 통계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업계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건설산업의 경우 공종 분야별 다수의 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협회는 협회회원을 대상으로 실적, 임금 수준 등의 정보를 입수·DB로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통계를 비교적 쉽게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 건설업 관련 통계 현황(협회)

작성기관	통계명	내용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조사	· 조직형태 · 계약내용 등 일반사항과 임금 · 매출액 등 결산사항 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 동향 조사
	건설업경영분석	· 건설업의 경영상태 및 재무 분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업통계조사	· 설비건설업의 연간공사실적 조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연간공사실적 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전문건설공사의 연간공사실적 조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수주통계	·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 조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조사	· 전기공사업의 고용 · 급여, 공사액 등 실태조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임금 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 금 조사

출처: 연구진 작성

□ 주택, 토지 등 기타 분야의 통계

주택과 토지에 관한 통계는 주택보급현황, 부동산 거래량, 거래가격 변동률, 분양시장 동향, 주거실태 등 대체로 국내 부동산과 거주상황 등 동시적 분석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주택, 토지는 통계작성 기준에 있어서 산업분류가 없고 주택건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므로 타 산업통계와는 위계가 다르다.

[표 2-23] 기타분야(주택, 토지) 통계 현황

통계명	조사대상	내용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공동주택거래가격자료, 아파트전세거래가격자료	· 전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거래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미분양주택현황	· 매월 전국 및 지역별 미분양 주택현황을 파악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사업체	· 전국 민간분양아파트의 지역별 분양시장 동향 제공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가구	·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아파트	· 아파트 단지의 주위환경 조성, 편의시설배치 및 규모, 주거밀도의 적정성 등을 파악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을 조사하여 준주택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
임대주택통계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건설실적(사업승인 기준) 및 분양전환 실적, 재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
주거실태조사	가구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	· 전국 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된 호수와 준공 호수 파악
주택도시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내역	·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등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용중인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매년 파악
주택보급률	주택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
주택소유통계	주택	·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현황, 주택 소유자의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및 주택가액별 현황 등을 분석
주택총조사	인구, 가구, 주택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국토지리정보현황	국토의 측량 및 지리정보	· 국토의 측량 및 지리정보에 관한 통계를 파악하여 국토해양통계연보에 수록
부동산거래현황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성
외국인토지현황	토지	·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현황 관리

지적통계	토지 및 임야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토의 면적 필지수를 시도, 시군구별, 지목별로 집계
택지에정지구지정및 공급현황	사업체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실적 점검
토지소유현황	토지	·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현황에 관한정보를 연단위로 수집

출처: 연구진 작성

□ KOSIS 미등록 통계 현황

통계청 KOSIS 에 등록된 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체 통계시스템이나 담당사업팀은 있으나 미등록 통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통계의 특성상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KOSIS에 등록되지 않은 통계로는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건축사 현황 등의 행정정보자료와 세움터의 '건축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 통계가 있다.

[표 2-24] 작성기관별 통계사업 현황

분야	작성기관	통계사업명 또는 사업팀	비고
건축 서비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사업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보고서 발표(KOSIS 등록 통계)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매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수행(KOSIS 등록 통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통계조사	매년 환경산업통계조사 수행(KOSIS 등록 통계)
	대한건축사협회	-	-
	한국건축가협회	-	-
건설	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 계약 정보 종합관리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운영	월간건설경제동향, 완성공가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종합건설업조사 수행(KOSIS 등록 통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경영지원실	매년 계약실적, 기성실적 통계연보 발간(KOSIS 등록 통계)
	대한시설물유지관리	경영지원본부	매년 계약실적, 기성실적 통계연보 발

	협회		간(KOSIS 등록 통계)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관리팀	매년 전기공사업 평균비율(경영분석), 통계연보 발간(KOSIS 등록 통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매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임금실태조사 실시(KOSIS 등록 통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통계편람,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영분석표 발간(KOSIS 등록 통계)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 DB	매분기 노동생산성지수 발표
	대한전문건설협회	기획관리본부 정보관리실	매년 전문건설업조사 실시(KOSIS 등록 통계)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매년 해외건설수주통계 발표(KOSIS 등록 통계)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화 및 유동성,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등 다양한 경제통계 발표
주택 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정보포털	매월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매년 주택보증통계 발표(KOSIS 등록 통계)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매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발표 (KOSIS 등록 통계)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부동산거래현황통계 발표 (KOSIS 등록 통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매년 국토지리정보현황 발표(KOSIS 등록 통계)
	토지주택공사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국토부, 행안부 등 타 기관에서 작성한 토지와 주택의 거래, 가격, 공급 관련 통계자료 게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행정자료 통계 발간
	세움터	건축통계	인허가통계, 건축물 통계 제공

출처: 연구진 작성

3. 소결;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한계

1) 제한적인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의 범위설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의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기획, 설계, 시공, 사용 과정에 수행하는 모든 지식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축서비스와 동일한 ‘건설용역’업을 건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서비스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의 정의처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활동이라면 건설산업으로서 건설용역도 건축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산업 분야의 구분보다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조성 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산업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는 단순히 조성과정에 관계되는 산업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부동산, 관광 등 건축물 조성 이후 사용과정에서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건축물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까지 포괄하기에 현행 법제도의 산업정의는 한계가 있다.

2) 국가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로드맵 부재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현행 법 정의를 참조할 때 건축물 조성과정별로 요구되는 정보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즉,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고 공급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통계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는 산업육성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민간은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참고가, 학계에서는 연구과정의 검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장의 논거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생산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건축 산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종합계획 없이 각 부처별 소관 법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부분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해당 통계는 국가통계의 플랫폼인 통계청에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산업정보의 입체적, 종합적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건축

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과제가 설정되었고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 개편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국가통계승인 추진 전략은 중장기 통계구축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건축서비스산업통계는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의해 구축된다. 이들 기관은 이용자(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업체, 건축사, 대한건설협회: 시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산업에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주요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수주 및 매출 현황과 기업정보, 기타 시장 동향을 통계화하여 상세히 제공하는 반면 건축사협회의 경우 건축자재의 DB구축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작성 및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3) DB 활용 및 전략적 통계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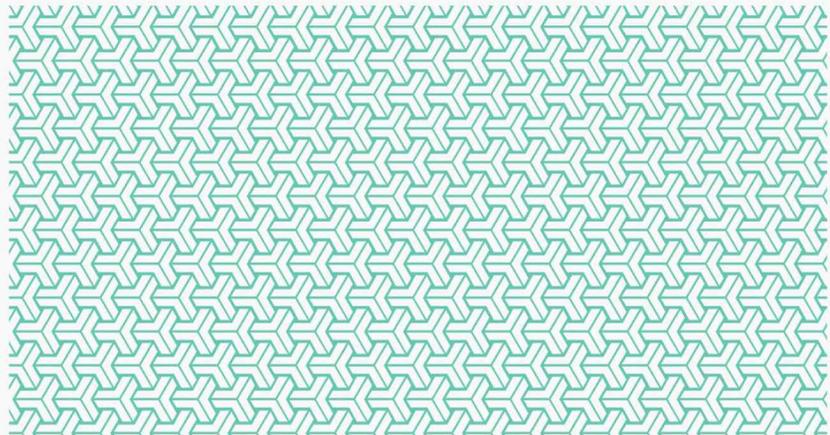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산업의 최종 결과물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다. 따라서 건축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과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시장의 실질적인 관리 대상인 건축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건축동향(인허가 및 착공)은 어떠한지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세움터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다. 세움터에는 건축물에 관한 대부분의 기본 정보들이 DB화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의 내용만 결정되면 다양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지역별·용도별·규모별·면적별·노후도 등 항목별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용도의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한 29개 건축물 주용도가 아닌 5개 용도⁵²⁾로 압축한 정보에 그치고 있다.

또한 건축 산업 현안과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여 세움터 정보수집 프레임의 구성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문제, 환경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건축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건축 산업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물가, 사업비 등 예산과 관계되는 정보도 부재하여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모두에게 가치 재생산의 측면에서 활용도는 떨어진다.

52) 현 세움터 건축물 통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제3장 국내외 건축서비스 유관 산업의 통계사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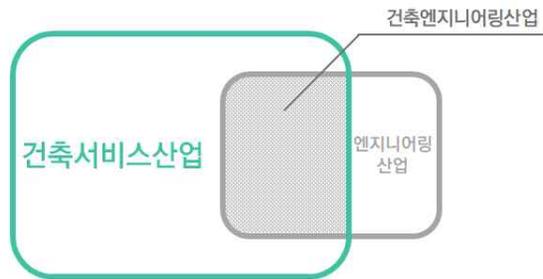


1. 엔지니어링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산업디자인 DB 및 통계 구축 현황 : 한국디자인진흥원
3. 건설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대한건설협회
4. 일본의 건설서비스산업 범위와 통계구축 체계 및 시사점
5. 소결: 국내의 유관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1. 엔지니어링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엔지니어링산업이라고 한다.⁵³⁾엔지니어링활동 중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건축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다수가 건축서비스사업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 간 교집합에 건축엔지니어링산업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통계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석에 유의미하다.



[그림 3-1] 건축서비스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엔지니어링산업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제정⁵⁴⁾하였고,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 수행 단체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설립되었다.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세부내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3조 2항의 각 호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엔지니어링의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조사, 제도연구, 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 기준 연구,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며, 이러한 활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DB와 통계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5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2조

5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2010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은 1973년 제정된 「기술용역육성법」을 1992년 전부개정하여 만든 법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10.10.)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DB의 종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신고 및 사업체조사를 통해 생산하고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통계편람),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경영분석),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임금실태)로 총 3개가 있다. 그 밖에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법령,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엔지니어링사업체의 채용 및 엔지니어링 인재 정보, 수주실적현황 및 순위, 해외진출관련 법령·국가·설계기준·프로젝트 정보, 금융지원 등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⁵⁵⁾

[표 3-1]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Data 현황

분류	소분류 내용
정보	관련법령,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하도급 분쟁조정, 구인·구직, 건설워크넷(채용·인재정보), ENG데일리, 북한자료 등의 정보 제공
통계	임금실태, 경영분석, 통계편람, 수주실적순위, 수주실적 현황 등의 통계·정보제공
교육	엔지니어링 관련 교육사업소개, 교육과정안내, 사이버아카데미
민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건설기술자 관련 신규등록·변경신고 및 조회 등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민원, 사업체 수주·사업 실적관리, 임금실태 조사안내 및 조회 등
해외	해외진출지원, 금융지원, 시장개척지원, 입찰 및 발주정보, 인력양성 정보 제공
연구·자료	ENGINEERING INSIGHT, 정책연구, 해외자료, 기타자료 제공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맵”, <https://www.etis.or.kr/webs/sitemap.jsp?leftParam=5&topParam=5>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10.10.)

55)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맵”, <https://www.etis.or.kr/webs/sitemap.jsp?leftParam=5&topParam=5> (검색일:2019.10.10.) 참고하여 작성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협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다 세세하게 구분해 보면 정보 부문에서는 관련법령,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하도급 분쟁조정, 구인·구직, 건설워크넷(채용·인재정보), ENG데일리, 북한자료 등의 정보가 있다. 관련 법령 정보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산업·사업체와 연관된 각종 기준과 지침 정보를 제공한다.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부문에서는 대가기준의 개요와 근거, 주요내용과 정부나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대가기준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각종분야에서 조사, 계획, 감리, 설계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정보를 공유하며, 협회에서 직접 생산·관리하는 정보 외에도 구인·구직 페이지 연계운영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구인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구직을 회원사·회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설워크넷의 채용·인재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56)

[표 3-2]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 부문 Data 현황

소분류	구성
관련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자경력관리기준,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등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대가기준의 주요내용, 국토계획·교통·수자원·정보통신공사·건축기계설비·해양조사·지반조사 등의 표준품셈 등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제도 안내, 용어의 정의, 대상 사업, 조정효력, 조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하도급표준 계약서 양식 제공, 분쟁조정 접수 안내 등
발간자료실·ENR데일리	협회포럼 자료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초고층 건물의 설비시스템 설계 시공 사례 조사 연구 등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한 발간물 제공, 엔지니어링데일리(신문) 제공
구인·구직	회원사·회원의 자발적인 구인·구직 정보 등록
건설워크넷	채용정보(건설관련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채용정보), 인재정보(건설기술인 경력신고로 축적된 데이터 활용)
북한자료	북한의 산업구조, 대북 SOC투자, 남북 산업협력, 북한의 개발과 국제협력 등 북한과 관련한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 <https://www.etis.or.kr/webs/inform/law.jsp?leftParam=2&topParam=2&boardId=TOTALBBS>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10.10.)

56)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 <https://www.etis.or.kr/webs/inform/law.jsp?leftParam=2&topParam=2&boardId=TOTALBBS> (검색일자: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해외진출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국가별 법령정보와 현황정보, 관련 기준, 해외 시장 동향, 해외 프로젝트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지원 부문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등이 운영하는 금융·보험 상품 정보가 있다. 시장개척부문은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KOTRA 등에서 운영하는 유관 사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입찰 및 발주정보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포털이나 시스템, 서비스 등을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양성은 위 기관들을 비롯해 국내 대학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 기구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⁵⁷⁾

[표 3-3]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해외' 부문 Data 현황

소분류	구성
해외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국가별 법령정보 · 국가현황정보 · 설계기준 · 국제개발 프로젝트 · 글로벌 시장동향 · 기타프로젝트 등의 정보 제공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수출보증, 해외근로자안심보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사업이행성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수출이행성보증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 · 건설공제조합(보증, 해외공제)의 해외사업관련 금융지원 상품 정보 제공
시장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해외시장개척지원) · 해외건설협회(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수수지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F/S지원, 해외수수지원,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개도국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 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지원 등) · 한국에너지공단(해외설비인증획득지원, 국내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등) · KOTRA(해외시장개척지원)의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정보 제공
입찰 및 발주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해외발주정보, EDCF 입찰정보, KOICA입찰정보 제공) · KOTRA(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찰 및 발주정보 안내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57)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해외”, https://www.etis.or.kr/2014/jsp/oversea/oversea_main.jsp?leftParam=0&topParam=6 (검색일자 :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 KOTRA(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 한국플랜트산업협회(플랜트지식개발센터)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교육훈련)
- 서울대학교(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 포항공과대학교(엔지니어링대학원)
- 연세대학교(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의 인력양성 기구 및 프로그램 소개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해외”, https://www.etis.or.kr/2014/jsp/oversea/oversea_main.jsp?leftParam=0&topParam=6 (검색일자 :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규·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의 업무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신고,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사업체의 실적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58) 59)} 이러한 민원성 업무는 관련 데이터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해당 분야 DB구축은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청이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지원하는 등⁶⁰⁾ 산업진흥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성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 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21조, 제23조, 제26조

5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56조

6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28조

[표 3-4]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민원' 부문 운영 및 Data 현황

소분류	민원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신규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 온라인조회(사업자, 기술인력) · 온라인 변경신고(기술인력, 전문분야, 소재지, 대표자, 상호, 휴폐업, 재개업) · 온라인 발급(사업자신고증, 경력증,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
엔지니어링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최초신고, 변경신고, 경정신고, 학과·자격심의) · 회원여부조회 · 온라인신고(최초신고, 변경신고) · 온라인 발급(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경력증)
건설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경력 최초신고, 변경신고, 교육훈련) · 온라인발급
실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실적(신고안내, 신규신고, 변경신고, 정보조회, 순위공표) · 사업실적(신고안내, 신고, 전년도 사업실적조회) · 온라인발급(수주실적확인서 발급, 준공실적확인서 발급)
임금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안내 · 임금실태조회 · 임금실태조사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민원", https://www.etis.or.kr/webs/common/minwon_sitemap.jsp?leftParam=910&topParam=5 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 2019.10.10.)

2)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통계별 주요내용 및 결과활용

□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조사(엔지니어링 통계편람, 국가승인통계 제115029호)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자료를 근거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 위치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고 이를 정부의 정책 수립 등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2008년 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고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⁶¹⁾

조사 시행의 근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이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자의 신고가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계화하

61)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산업통상자원부, p.8. 참고하여 작성

여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을 작성·공표하고 있다.⁶²⁾

이 중 엔지니어링 사업체 현황 데이터는 「기술용역육성법」이 제정된 1970년대부터 수집·관리되었으나, 실제 통계로 공표되기 시작한 시점은 국가통계로 승인된 2009년부터다. 이후 2011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통계명 및 조사표명, 서식 변경 등이 있었으며 신고인 유형과 기술부문, 전문분야 목록도 변경되었다.⁶³⁾ 본 변경이후 74개로 나뉘어져있던 전문분야가 29개로 통합·신설되었으며 그 결과 건설(건축) 분야별 현황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⁶⁴⁾

통계유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며, 보고체계는 '①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현황 신고 ②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신고접수 및 통계화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 작성 주기는 1년이며 기준 시점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내용은 사업자별 신규신고와 휴·폐업 등 변경사항,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현황, 소재지별 현황, 기술인력의 등급·성별·연령별 분야별 현황과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기술사 보유현황 등의 통계치를 파악하게 된다. 분석 결과물은 통계편람으로 발간하게 되고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된다.

이러한 통계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자체 운영비로 충당된다. 타 조사와 달리 기존 DB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민원업무(신규·변동사항에 대해신고)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수립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62)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산업통상자원부, p.8. 참고하여 작성

63)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산업통상자원부, p.8. 참고하여 작성

64)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산업통상자원부, p.59. 참고하여 작성

[표 3-5]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통계개요

구분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승인번호(작성승인)	제115029호(2008.12.29.)
보고체계	사업자)협회)산업통상자원부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보고통계
조사대상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전체
작성방법	사업자의 신고내역 분석
조사방법	사업자의 신고내역 기반
조사주기	1년(연1회)
조사항목	사업자현황, 기술인력현황
공표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115&confmNo=115029&kosisYn=Y>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생산성 등을 파악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에 요구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공사입찰 운영의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 말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⁶⁵⁾ 조사의 근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이며 조사통계로서 모집단은 법 제21조에 의거해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작성을 위해 먼저 모집단에서 업체의 매출을 규모별로 층화하고 기술부문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을 설계한다. 선박, 항공우주, 금속, 광업 등과 같이 모집단의 규모가 작은 부문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모집단의 규모가 커서 전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조사범위를 달리 시행하고 있다. 표본이 결정 되면 협회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⁶⁶⁾

통계의 조사와 공표주기는 1년이다. 2017년도 경영분석지표는 2016년, 2017년

65)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372&confmNo=372002&kosisYn=Y> (검색일자 :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66)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7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산업통상자원부, p.3. 참고하여 작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모두 보유한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속된 시계열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다. 재무제표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분석대상 기업이 서로 달라 직접비교는 할 수 없지만, 비율 값인 경영분석지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에 제한적이나마 의미를 두고 있다.⁶⁷⁾

[표 3-6]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통계개요

구분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승인번호(작성승인)	제372002호 (2006.12.21.)
조사체계	사업자>협회>수행기관>협회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작성방법	전수조사(일부)+표본조사
조사방법	우편, fax, 이메일, 온라인 등
조사주기	1년(연1회)
조사항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표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372&confmNo=372002&kosisYn=Y>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조사항목은 크게 회사현황, 기술수출 실적, 기술도입 실적,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현황, 특허관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다. 예를 들어 회사현황은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와, 총자산, 자본금, 종업원수, 기업규모, 기술인력, 주요활동 등을, 기술수출 실적은 수출분야, 발주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명, 기술내용을, 기술도입 실적은 도입분야, 기술제공자, 도입기간, 계약기간, 사업명, 기술내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무엇보다 경영분석지표 도출을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이 이루어진다.⁶⁸⁾

조사 결과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의 지표로 전년도 대비 증감율을 산출한다. 성장성 부문은 총자산 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지표를 도출하고, 수익성은 종자산순이익률, 기업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다. 안정성은 자기자보비율, 유동비율, 현금비율 등을 통해

67)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7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산업통상자원부, p.5. 참고하여 작성

68)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엔지니어링사업자현황”,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372&confmNo=372002&kosisYn=Y> (검색일자 :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평가하며,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을 살펴 경영 상태와 변화정도를 확인한다. 69)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사업계약 체결 시 업체와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는 1994년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25년 간 시행되고 있으며, 70)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산업들의 노임단가 기준이 되어 준용되고 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5조와 제18조를 비롯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와 시행령 제14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 수행 시 기술자 노임단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71)

조사의 모집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적용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며, 표본은 엔지니어링기술부문과 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규모를 기준으로 층화 추출한다. 기술부문기준으로 환경부문과 원자력부문은 전수 조사 대상이고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기타부문은 결과 값에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전수층을 결정한다. 72)

조사체계는 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내용은 기준년도 공표결과를 토대로 해당 년, 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등이다. 임금에는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등, 월간 퇴직급여 총당금, 월간사회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이 포함된다. 73)

69)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7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산업통상자원부, p.146. 참고하여 작성

70)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p.3. 참고하여 작성

71)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p.3. 참고하여 작성

72)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pp.5-6. 참고하여 작성

73)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p.4. 참고하여 작성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서 공공의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시 노임단가로 적용되고 있어,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을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 주기는 1년으로서 공표된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2018년 공표결과를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적용되고 있다.⁷⁴⁾

[표 3-7]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통계개요

구분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승인번호 (작성승인)	제372001호 (1994.07.23.)
조사체계	사업자)협회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작성방법	전수조사(일부)+표본조사
조사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등
조사주기	1년(연1회)
조사항목	기술부문별·기술자등급별 임금
공표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372&confmNo=372001&kosisYn=Y>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 총 7개 기술부문에 나누어 공표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고급숙련·중급숙련·초급숙련 기술자 총 8개의 기술자들의 월 임금을 조사된 평균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74)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p.4. 참고하여 작성

2. 산업디자인 DB 및 통계 구축 현황: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⁷⁵⁾ 산업디자인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으로, 농업이나 광업 등의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산업이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이 경우 산업디자인과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축서비스 또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건축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산업디자인과도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산업디자인 분야의 DB나 통계 또한 건축서비스산업과 상관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림 3-2] 건축서비스산업과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⁷⁶⁾ 이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의2에는,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시행기준으로서 디자인산업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7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 2조

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 1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디자인은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에 해당되지만 디자인 특성상 다양한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해당 분류로는 이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산업과 관계되는 모든 산업을 재구성한 특수산업분류를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범위로 활용하고 있다.

[표 3-8]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대분류, 중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	1-1	5	5-1
	1-2		5-2
	1-3		5-3
	1-4		5-4
	1-5		5-5
	1-6		6-1
	1-7		6-2
2	2-1	7	6-3
	2-2		7-1
	2-3		7-2
	2-4		7-3
	2-5		7-4
3	3-1	8	7-5
	3-2		8-1
	3-3		8-2
	3-4		8-3
4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출처: 통계분류포털,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KSIC 연계표(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https://kssc.kostat.go.kr:8443/>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설립⁷⁷⁾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개발 지원사업과 기타 정부의 위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중략)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생략)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1.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유통 활성화, 창업·경영지원,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1) 산업디자인 DB의 종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단순한 DB라기 보다 산업 및 사업체 홍보와 디자인 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일차적으로 진흥원 홈페이지를 플랫폼으로 기업지원, 교육, 연구, 문화 확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연관 웹사이트를 통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 DB를 구축하고 있다.⁷⁸⁾ 이중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DB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을 통한 업체

7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조

78)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kidp.or.kr> (검색일:2019.10.10.) 참고하여 작성

DB와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목록, 디자인혁신유망 기업 목록, Design Innovation Lab(선정업체)을 들 수 있다.

연구를 위한 DB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연구사업, 디자인문화콘텐츠 ISC, 서비스디자인연구, 국민디자인단(서비스디자이너·기업 Pool) 등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 문화확산 부문은 한국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글로벌 생활명품 공모를 통해 확보하며, 디자인권리보호 업무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나 분쟁조정위원회(디자인의 지식재산권 관련)를 운영함과 동시에 디자인공지증명 업무로 디자인 상품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다. 79)

[표 3-9]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요업무와 산업디자인 관련 데이터(홈페이지 기준)

분류	내 용
기업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결과 리스트), 중부권 디자인 거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디자인 해외진출지원, 국제교류협혁, KIDP china,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Design Innovation Lab,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온라인제조서비스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디자인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스타일산업 산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G벨리 DK Works제품개발지원센터
교육	대학(원) 교육지원, 실무디자이너 교육지원, 해외교육, 기타 교육 지원
연구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및 시스템개발, 디자인연구개발사업,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정책연구사업, 디자인문화콘텐츠 ISC(Industrial Skills Council), 서비스디자인연구, 국민디자인단
문화확산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디자인코리아,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글로벌 생활명품 공모, 디자인권리보호
기타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디자인DB(디자인트렌드 정보, 관련뉴스, 이미지, 연구자료 제공, 특허정보, 기업지원 안내 및 지원성공사례, 협회·학회 등 기관안내, 일자리 정보 등 제공)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kidp.or.kr>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0.)

79)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kidp.or.kr> (검색일:2019.10.10.) 참고하여 작성

2) 산업디자인 주요 통계 및 활용 현황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조사통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하는 ‘산업디자인 통계조사’가 유일하다. 이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디자인산업 관련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내용은 디자인산업현황, 투자 및 개발 현황, 경쟁력, 인식 및 선호도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본 조사는 디자인 센서스라는 이름으로 1997년부터 시행해왔으나, 200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며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 받았다.⁸⁰⁾

본 통계조사의 시행근거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2,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3항과 「통계법」 제18조이며 조사의 주체인 통계작성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였고 이에 진흥원이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3-10]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개요

구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승인번호(작성승인)	제 115026 호(2007.11.14.)
보고체계	사업체)조사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디자인활용기업, 디자인전문업체, 중앙부처·지자체 등
작성방법	전수조사(일부)+표본조사
조사방법	면접조사, 문헌조사 등
조사주기	1년(연1회)
조사항목	디자인활용기업(27개), 디자인전문기업(30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18개)를 대상으로 디자인활용현황, 디자인 사업·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다수의 조사항목 조사
공표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결과(조사년도 익년 1월)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115&confmNo=115026&kosisYn=Y> 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10.14.)

80)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kidp.or.kr/?menu=891> (검색일: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산업디자인, 디자인산업은 그 정의가 통상적인 산업의 정의·분류와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 산업디자인만의 특수 분류인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기준시점은 조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공표 주기는 1년이다. 조사 대상은 크게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전문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분류된다.⁸¹⁾

[표 3-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대상

구분	내용
실태조사 영역	·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중앙부처 (17부 5처 16청) · 일반업체 중 디자인활용업체 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시/자치구) · 전문 디자인업체
문헌조사 영역	· 프리랜서 현황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 국제 디자인산업 현황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kidp.or.kr/?menu=891>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4.)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는 산업디자인만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을 활용하는 정도와 방식을 토대로 일반업체와 전문디자인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조사대상을 나누고 각각 다른 항목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업체는 디자인 전문서비스 업체가 아니므로 2차에 걸쳐 조사가 시행된다. 1차 조사는 일반업체의 디자인 활용여부를, 2차 조사에서는 디자인 투자와 디자인의 사업 기여도, 디자인 활용현황, 디자인 관련 인력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디자인을 활용하는 일반업체와 달리 디자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하므로 주력분야, 사업실적, 인력현황, 교육현황, 해외교류 등의 보편적인 사업체조사와 유사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디자인의 생산자가 아닌 발주자로 보고 디자인 활용현황, 디자인 사업 발주현황 등을 조사한다. 그 밖에 문헌 자료를 활용한 조사로는 프리랜서 산업의 규모,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부가가치 등),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등이 있다.⁸²⁾

81)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_svc/index.do?orgId=115&confmNo=115026&kosisYn=Y (검색일자 :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82)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kidp.or.kr/?menu=891> (검색일자 :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표 3-12]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항목	
일반업체	· 조사 전년도 기준 디자이너 종사 여부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 여부	
디자인활용업체 (일반업체) 실태조사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투자 실적 ·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 정부 정책 및 지원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활용 수준 · 디자인 인력 현황 · 디자인 교육 현황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사업 실적 · 디자인 교육 현황	·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현황 · 디자인 해외 교류 · 정부 정책 및 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태조사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교육 관련	·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
기타	· 프리랜서 산업 규모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http://kidp.or.kr/?menuno=891>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4.)



2017년 디자인 경제적 가치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17.4조원으로 추정되며, 디자인인프라의 가치가 39.5조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됨.

디자인 경제적 가치 추정식 | 디자인특수분류 해당 매출액 x 디자인 활용률 x 부가가치율



89조원

2013년



117.4조원

2017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경제적 가치



[그림 3-3] 2017년 디자인 경제적 가치

출처: 송현민 외(2019),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요약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p.5

3. 건설산업 DB 및 통계 구축 현황: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의미하고,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일컬어 건설산업이라 한다.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정,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해체를 위한 공사를 의미하며⁸³⁾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의 전방산업으로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시 말해 건축서비스가 연구, 조사, 자문, 기획, 계획, 설계 등의 활동에 집중된 중간재적 성격의 서비스산업이라면, 건설업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현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림 3-4]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업(토목 제외)과의 관계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법 제49조가 통계 관련 규정이다. 이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시행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건설산업 관련 통계조사는 건설업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등 여타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국가통계가 있는데, 대다수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국가의 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국민의 주거 및 주요 산업시설과 연관되어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각종 정부 정책 과도 상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종 통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UN 건설업 통계 국제 권고안)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을 준수해야하므로 일반적인 통계보다 작성방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인도 있다.⁸⁴⁾

8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

84)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건설업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101&confirmNo=101014&kosisYn=Y> (검색일자 : 2019.10.10.) 참고하여 작성

[표 3-13] 건설업 관련 통계 (토목 및 일부 연관성이 낮은 통계 제외)

통계명	작성기관 (위탁·조사기관)	근거법*
건설업조사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법 제17조)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지방청)	(통계법 제17조)
건설공사계약통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통계법 제17조)
국내건설수주동향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통계법 18조)
설비건설업통계조사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통계법 제4조
전문건설업통계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법 18조
종합건설업조사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통계법 제18조, 제27조
해외건설수주통계	해외건설협회 (행정집계)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전기공사업통계조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통계법 제17조, 제18조
완성공사원가통계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통계법 18조)
건설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주: 근거법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을 괄호 안에 표기함

**주: 국가승인통계 아님

출처: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검색일자 : 2019.10.14.), 대한건설협회 “2017년 도 결산 건설업 경영분석”,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90&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tatistic_management&dataId=36211&pageIndex=1 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 2019.10.14.),

건설산업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작성주체들에 의해 경영, 산업, 수출, 계약 등의 다양한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 종합건설업조사 같은 주요 통계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조사·작성되고 있다.

1) 건설산업 DB의 종류

대한건설협회에서 생산·관리하는 건설산업 관련 정보는 통계뿐만 아니라, 건설 업무 관련 정보, 관련 법령, 건설산업 관련 뉴스 및 공고, 교육, 채용정보, 업체정보 등 다양하다.

협회가 제공하는 건설업무 관련 정보에는 종합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안내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안내, 상호협력평가 안내, 영업기간평가 안내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발주 입찰 자격 기준」에 따른 건설업체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설임금, 표준품셈, 건설기계경비산정,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등을 제공하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건설기술과 건설자재 수급전망에 대한 정보, 건설안전에 대한 정보, 해외건설정보, 건설용역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⁸⁵⁾

통계 관련 정보는 협회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 통계와, 조사를 위탁받은 통계 데이터 외에도 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통해 수집된 정보,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신고 또는 조사받아 구축한 정보, 기타 외부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들이 있다. 주요 내용은 건설경기지표, 종합건설업조사, 건설경영분석, 완성공무원가통계, 부동산 통계 등이며 더불어 주요건설통계, 건설경기전망, 월간건설경제동향, 민간건설백서 등의 분석 보고서도 제공한다. 또한 '종합건설통계DB'를 통해 협회에서 작성하는 통계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은행, 해외건설협회에서 생산하는 통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⁸⁶⁾

법령정보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계약, 종사자 고용 및 임금 현황, 기타 뉴스와 건설업양도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교육 및 채용부문에서는 제휴업체의 채용공고와 인재공고, 협회에서 운영 중인 건설인재평생교육원 페이지 링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체정보는 협회에 등록·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업체 통계 및 분포현황, 월별 부도업체수 현황, 건설업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⁸⁷⁾

85)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검색일자 :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86)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검색일자 :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87)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검색일자 : 2019.10.14.) 참고하여 작성

[표 3-14] 대한건설협회의 업무와 건설산업 관련 데이터(홈페이지 기준)

분류	내용
건설업무	종합건설업안내, 시공능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안내, 영업기간평가안내, 건설적산기준, 기술 및 자재, 건설안전정보, 해외건설정보, 건설용역기관
통계	건설경기지표, 주요건설통계, 종합건설업조사, 건설경기전망, 월간건설경제동향, 건설경영분석, 완성공사원가통계, 민간건설백서, 부동산통계, 종합건설통계DB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노동관련법령, 입법예고
뉴스·공고	공지사향, 건설업양도공고
교육·채용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채용설명회, 채용정보, 채용정보 등록, 인재정보, 인재정보 등록, 제휴업체 채용정보, 제휴업체 인재정보
업체정보	건설업 등록분포현황, 월별 등록분포현황, 전월대비 등록수변동, 월별부도업체수 현황, 외국건설업체현황, 건설업체검색 등
기타	세금계산서, 입찰자료제공, 무료경영진단, 건설관련서식, 회원사 및 협력업체 홍보,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등

출처: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0.14.)

2) 건설산업 주요 통계 및 활용 현황

□ 건설업조사

건설업조사는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74년 승인되었다.⁸⁸⁾ 건설업조사의 시행 근거는 「통계법」 제17조이며 통계청에 의해 국가가 승인한 지정통계로 고시되고 있다. 지정통계는 일반통계와 달리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타분야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하거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계는 ‘지정통계’가 되며,⁸⁹⁾ 실제 건설업조사 결과는 건설관련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GDP, 산업연관표 및 GRDP작성, 월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⁹⁰⁾

건설업조사는 1968년 한국산업은행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1972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⁹¹⁾으로 이관되었으며, 1974년 통계작성을 승인받았다. 조사 초

88)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건설업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 (검색일: 2019.11.04.)

89) 「통계법」, 법률 제14843호(2017. 8. 9., 일부개정) 제3조, 제17조

90)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건설업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 (검색일: 2019.11.04.)

기에는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3개 기관·협회만이 수행하였으나 이후 협회의 분립과 공사업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대한설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2018년 7개 건설관련 협회를 통해 인터넷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⁹²⁾

각 협회들은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일반사항 및 실적과 결산에 대해 조사한다. 일반사항 및 실적 관련 내용으로는 조직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하는 타산업, 공사업, 공종세분류부호, 공사지역명 및 부호, 발주자명, 도급종류, 발주자분류부호, 착공·준공년월, 총공사금액, 계약액, 기성액, 발주자 공급원자재금액 등이 있으며, 결산 관련 조사내용으로는 종사자수, 연간급여 및 임금, 매출액 및 건설비용 등이 있다.⁹³⁾

그러나 많은 업체가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거나 또는 하나의 협회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조사가 발생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실적은 업종별로 작성하고, 결산은 통합하여 상위 업종⁹⁴⁾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체 대표자나 재무 회계팀 실무자를 적격응답자로 지정⁹⁵⁾하였다.

건설업 조사 중 실적조사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기본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무응답이 없으나 결산조사의 경우 단위 무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면접조사가 아닌 인터넷조사시스템을 통한 자체식 조사이며, 실적조사와 달리 응답의 의무가 없고 내용이 많고 매우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므로 무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무응답 업체는 향후 조사에서 제외하는 데,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실적조사에 따른 기성액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⁹⁶⁾

행정자료의 활용은 조사 중 업체정보 유출에 대한 응답의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다변화와 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의 필요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또한 국세청 등에 신고 되는 법인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등의

91) 경제기획원은 현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현 통계청에 해당한다.

92)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pp.1-4.

93)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p.8.

94) 건설업조사의 결산사항 작성 시 여러 건설업종에 등록된 경우 적용되는 상위업종은 '종합>전문>기계설비>시설물>전기>정보통신>소방'과 같다. (출처: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p.17.)

95) 인터넷조사이므로 적격 응답자의 응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96)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p.19.

행정자료는 기존의 통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이를 활용하면 통계조사 시행의 예산부담과 인력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UN,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자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통계 선진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이 보편화 되어있다.⁹⁷⁾

이에 2007년 「통계법」을 전부개정⁹⁸⁾하여,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통계작성에 있어 행정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자료는 조사된 업체의 전체실적 대비 연간급여액, 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조사항목에 불응 등으로 결측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앞서 언급한 국세청으로 부터 입수한 법인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자료,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의 자료를 활용한다.

[표 3-15] 건설업조사 개요

구분	건설업조사
승인번호(작성승인)	제101014호(1974.11.13.)
보고체계	사업자(건설업체) > 건설관련협회 > 통계청
조사/작성유형	지정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건설업종에 등록된 기업체(약 6만 5천여개)*
작성방법	전수조사+표본조사 (조사대상년도에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경우만 포함)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조사주기	1년(연1회)
조사항목	- 일반·실적사항 : 조직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 타산업, 공사명, 공중세분류부호, 공사지역명 및 부호, 발주자명, 도급종류, 발주자분류부호, 착공·준공년월, 총공사금액, 계약액, 기성액,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등 - 결산사항 : 종사자수, 연간급여 및 임금, 매출액 및 건설비용 등
공표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건설업조사보고서”

*주: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 타산업 부문 제외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건설업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검색일자 : 2019.11.04.),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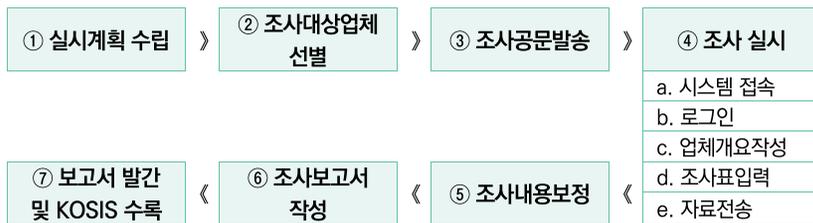
97)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p.20.

98) 「통계법」, 법률 제8387호(2007. 4. 27., 전부개정)

□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는 1994년 통계작성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조사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한다. 본 통계는 건설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및 건설산업 관련 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전략에 대한 기초 통계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 동향파악이 중요해졌으며, 건설경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보의 요구로⁹⁹⁾ 다른 조사들에 비해 조사 및 공표 주기도 짧다.

본 조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건설업체 담당자들은 인터넷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업체 담당자가 직접 조사 항목에 응답하므로 수주액이나 단위 등 오류가 발견된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그림 3- 5]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시행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조사내용은 회사명, 등록번호, 작성자, 공사명, 도급종류, 발주기관, 공동도급지분, 착공년월, 준공년월, 계약금액, 발주자공급자재액, 수주액 등이며 조사결과는 KOSIS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건설경기의 변화는 그 규모나 성격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지표역할을 하므로 결과의 목적이 분명하고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물은 건설경기지표 도출, 건설 및 경제 관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건설 관련 기업의 경영 및 투자의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그 중 건설경기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경기동향조사’와 지역GDP(GRDP)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등의 관련 지표에 활용된다. 그 밖에 건설관련 연구자의 건설업 경기를 전망 연구 등에 활용한다. 정책입안 자료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99) 통계청(2019),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pp.1-2.

[표 3-16]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개요

구분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승인번호(작성승인)	제365005호(1994.12.20.)
보고체계	종합건설업체>대한건설협회>통계청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종합건설업체
작성방법	표본조사 (조사실시 시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및 가능업체 선별'과정 있음)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
조사주기	1월(연 12회)
조사항목	공통항목 : 회사명, 등록번호, 작성자, 공사명, 도급종류, 발주기관, 공동도급지분, 착공년월, 준공년월, 계약금액, 발주자공급자재액, 수주액
공표	전산망(인터넷 www.cak.or.kr), '월간건설경제동향' 발간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pp.1~2

□ 건설업경영분석

건설업경영분석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경영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 일반통계로 승인받아 19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100)

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18조 및 제27조이지만, 조사 방법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는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01)

100)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p.2.

101)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p.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중략)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생략)

1. (요약)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요약)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무제표)
3. (요약)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요약)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표

시행령에 의해 시공능력 평가를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관련 경영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건설업 경영분석 통계를 작성한다. 작성된 통계는 건설업 경영지표 산출을 통한 건설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등 분석하여 건설경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 학술,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¹⁰²⁾



[그림 3- 6] 건설업경영분석 조사체계

출처: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보고서』, p.48.

통계의 주요 경영지표는 건설업의 연도별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지표, 연도별 건설업 경영비율, 건설업 기업규모별 경영비율, 경영비율 계층별 업계분포, 건설업 종합재무제표, 건설업 1개사 평균 주요 재무제표, 현금흐름 분석, 공사부문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자료(실제 일반관리비율 산출)로 사용된다.¹⁰³⁾

102)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p.3.

103)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p.4.

[표 3-17] 건설업경영분석 개요

구분	건설업경영분석
승인번호(작성승인)	제365002호(1976.7.14.)
보고체계	건설업체>대한건축사협회>통계청
조사/작성유형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대상	건설업체 - 목표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F 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업체(425 건설장비 운영업은 제외) - 조사모집단: 건설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조사기준년도에 건설활동을 수행한 기업체
작성방법	전수조사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신고)
조사주기	1년(연 1회)
조사항목	공사실적신고, 재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건설업조사표(국내, 해외결산사항) 상의 내용
공표	전산망(인터넷 http://kosis.kr) 등

출처: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pp.3-4

4.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범위와 통계구축 체계 및 시사점

1) 일본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¹⁰⁴⁾

① 일본표준산업분류의 개요

일본표준산업분류는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통계의 상호 비교, 이용 향상을 목적으로 일본 산업 통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본표준산업분류(2013년 10월 개정)」는 1949년 10월 설정되어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 2007년 5월, 제166회 국회에서 공적 통계의 체계적·효율적 정비 및 유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이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통계작성의 기술적 기준이 되는 ‘통계기준’이 만들어졌다. 통계기준은 동법 제28조¹⁰⁵⁾에 근거하여 총무대신이 결정한다.

[표 3-18] 일본표준산업분류(1949년10월 설정)의 개정경위

	심의회 관계*			고시관계	
	자문번호	자문일	회신일	고지일	적용일
제1회	-	-	-	1951.4.30	1951.5.1
제2회	-	-	-	1953.3.31	1953.4.1
제3회	제1호	1952.9.18	(1)1954.2.12	1954.2.27	1954.3.1
제4회			(2)1957.4.26	1957.5.1	1958.1.1
제5회	제92호	1962.11.19	1962.12.14	1963.1.12	1963.4.1
제6회	제105호	1966.2.18	1967.2.17	1967.5.1	1968.1.1
제7회	제139호	1971.6.16	1972.2.18	1972.3.31	1972.4.1
제8회	제164호	1975.12.5	1976.4.16	1976.5.15	1977.1.1
제9회	제195호	1982.12.17	1983.4.15	1984.1.10	1985.4.1
제10회	제233호	1991.6.14	1993.7.9	1993.10.4	1994.4.1
제11회	제268호	2001.2.16	2002.1.11	2002.3.7	2002.10.1
제12회	제320호	2007.4.13	2007.9.14	2007.11.6	2008.4.1
통계기준설정**	제14호	2009.1.19	2009.1.19	2009.3.23	2009.4.1
제13회	제53호	2013.5.17	2013.9.27	2013.10.30	2014.4.1

*주: 2007년10월에 통계심의회를 대신하여 통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13회부터 통계위원회에서 실시됨

**주: 2009년 설정은 시행 「통계법」 시행에 따라, 그 위계가 통계기준 변경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분류 내용의 변화는 없음

104) 송준환의 원고 “일본의 건축관련산업통계의 개요 및 특징”을 바탕으로 작성

105) (통계기준의 설정)제28조 1. 총무대신은 정령에서 정한 것에 의해 통계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락)

② 산업분류에 관한 국제기준과 비교¹⁰⁶⁾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표준산업분류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 이른바 국민경제계산(SNA)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대상이 된다. 분류 항목 집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산, 서비스 및 생산요소에 관한 인풋(Input)
- 생산 프로세스와 기술
- 아웃풋(Output)의 특징과 용도

보다 상위레벨에서는 아웃풋의 특징 및 그 용도가 중요하다. 분류 항목은 최대 네 자릿수이고 419개 항목이 존재한다.

[표 3-19]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중분류 및 항목명

대분류	중분류	항목명
A	01-03	농림어업
B	05-09	광업 및 채석업
C	10-33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공급
E	36-39	수공공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 관리 및 정화활동
F	41-43	건설업
G	45-47	도매·소매업;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업
H	49-53	운송·보관업
I	55-56	숙박·음식업
J	58-63	정보통신업
K	64-66	금융·보험업
L	68	부동산업
M	69-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N	77-82	관리·지원 서비스업
O	84	공무 및 국방, 강제사회보장사업
P	85	교육
Q	86-88	보건위생 및 사회사업
R	90-93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업
S	94-96	기타 서비스업
T	97-98	고용주로서 세대활동, 및 세대에 의한 자가이용을 위한 분별 불등한 재산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99	치외법권기관 및 단체의 활동

출처: 総務省(2014), 「国際標準産業分類(ISIC)第4次改定版」基本構造と詳細構造,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94251.pdf, p.1, 참고하여 작성

106) 総務省(2014), 「国際標準産業分類(ISIC)第4次改定版」基本構造と詳細構造,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94251.pdf, p.1, 참고하여 작성

□ 일본표준산업분류(JSIC)¹⁰⁷⁾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이란 재산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유사한 경제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동종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총합체라 할 수 있고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단, 분류 항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수, 종업자의 수, 생산액 또는 판매액 등도 고려된다. 분류 항목은 최대 4 자릿수로, 1,455개 항목이 존재한다.

- 생산되는 재산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용도, 기능 등)
- 재산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법 (설비, 기술 등)

일본표준산업분류는 통계조사 대상의 범위 확정 및 통계조사 결과의 산업별 표시에 활용된다. 분류 항목은 업체의 수, 종업자의 수, 생산액, 판매액 등이다. 분류 방법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상세분류의 4단계로 구성되며 대분류 20, 중분류 99, 소분류 530, 상세분류 1,460개로 재분류된다. 분류부호는 대분류항목이 알파벳, 중분류항목이 2자리, 소분류항목이 3자리, 상세분류항목이 4자리의 숫자로 표지된다.

[표 3-20] 일본표준산업분류의 항목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A. 어업, 임업	2	11	33
B. 임업	2	6	21
C.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1	7	32
D. 건설업	3	23	55
E. 제조업	24	177	595
F. 전기 · 가스 · 열공급 · 수도업	4	10	17
G. 정보통신업	5	30	45
H. 운송업, 우편업	8	33	62
I. 도매업, 소매업	12	61	202
J. 금융업, 보험업	6	24	72
K.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3	15	28
L. 학술연구, 전문 · 기술서비스업	4	23	42
M.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	17	29
N.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3	23	69
O. 교육, 학술지원업	2	16	35
P. 의료, 복지	3	18	41

107) 総務省(2014), 「国際標準産業分類(ISIC)第4次改定版」日本標準産業分類一般原則,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86955.pdf, p.4, 참고하여 작성

Q. 복합서비스 사업	2	6	10
R. 서비스업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9	34	66
S. 공무(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2	5	5
T. 분류불등의 산업	1	1	1
(합계)20	99	530	1,460

출처: 総務省(2014), 「国際標準産業分類(ISIC)第4次改定版」日本標準産業分類一般原則,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86955.pdf, p.4 참고하여 작성

③ 일본표준산업분류 내 건설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업¹⁰⁸⁾

건축설계 등 토목건축서비스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L-「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이 대분류에는 주로 학술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업체, 개인 또는 업체에 전문적 지식·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다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업체 및 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산업이 포함된다.

- 학술적 연구, 시험, 개발연구 등을 실시하는 산업
- 법률, 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무와 상담, 디자인, 문예·예술작품의 제작, 경영전략 등 전문적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수의학적 서비스, 토목건축에 관한 설계와 상담서비스, 상품검사, 특량 증명, 사진 제작 등의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광업과의 관계: 광물을 탐사하기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광, 지화학탐광, 시추 등의 탐광작업을 실시하는 산업은 대분류C-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05]으로 분류
- 정보통신업과의 관계: 광고문안의 작성, 상업미술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광고매체에 광고하지 않는 산업은 대분류G- 정보통신업[4151]으로 분류
- 운송업과의 관계: 운송에 부설되는 선적화물의 적재 또는 육지에 물건

108) 総務省(2014), 日本標準産業分類 (2013년10월 개정, 2014년 4월1일 시행),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90731.pdf 의 내용 인용 및 정리

을 내리는 등에 관련되는 점검 및 검수, 감정 및 검량을 실시하는 산업은 대분류H-운송업, 우편업[4899]에 분류

- 생활관련 서비스업과의 관계: 사진촬영을 실시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데이터의 프린트 또는 필름 현상, 인화, 확대 및 그 중개를 실시하는 산업 또는 필름 복제를 실시하는 산업은 대분류 N-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7993]으로 분류

본 대분류 내에는 「중분류 71- 학술·개발연구기관」, 「중분류 72- 전문서비스업(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분류 73- 광고업」, 「중분류 74- 기술서비스업(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고, 이 중에 토목건축서비스업은 「중분류 74- 기술서비스업(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중분류 기술 서비스업(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수의학적 서비스, 토목건축에 관한 설계와 상담 서비스, 상품검사, 측량증명 및 사진제작 등의 전문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분류된다. 소분류에는 「740-관리, 보조적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소(74-기술서비스업)」, 「741-수의학」, 「742-토목건축서비스업」, 「743-기계설계업」, 「744-상품·비파과검정업」, 「745- 측량증명업」, 「746-사진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742-토목건축서비스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1] 일반표준산업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그 내용

소분류 번호	상세분류 번호	내 용
742	토목 건축 서비스업	
	7421	건축설계업 건축설계, 설계감리 등의 토목·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현업기관도 본 분류에 포함된다. ○설계감리업; 건물설계제도업; 건설컨설팅업; 국가·지방공공단체 공사 사무소 (직영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
	7422	측량업 기준점측량,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토목측량, 하천측량, 경계측량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측량을 실시하는 현업기관도 본 분류에 포함된다. ○측량업

7429 기타 토목건축 서비스업

기타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광산, 유전의 시굴을 하청하는 사업소는 대부분류C-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05]에 분류된다.

○지질조사업; 시추업(광산용을 제외); 건축적산업

×유전 굴파기 청부업[0531]; 유전시굴청부업[0531]; 채광시굴청부업[05]

출처: 総務省(2014), 日本標準産業分類(2013년 10월 개정, 2014년 4월1일 시행),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90731.pdf, pp.2-13 참고하여 작성

□ 건설업¹⁰⁹⁾

대분류 D-건설업에는 도급 및 자체건설 공사업체가 포함된다. 다만, 자체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업체 및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측량, 설계, 감독 등을 실시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업체는 본사와 지사 또는 기타 업체에서 공사 체결업체 또는 건설공사의 현장 관리업체로 한정한다. 건설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건설재료, 기타의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 자체 생산품 또는 판매품을 이용하는 건설공사(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이설공사를 제외한다)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요 업무에 의해 제조업, 소매업 또는 건설업에 분류
- 금속, 비금속,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광물을 채집하기 위한 시굴, 갱도파기, 우물파기, 배토(排土)작업을 주로 청부하는 산업은 대부분류 C-광업, 채석업, 자갈채집업[05]으로 분류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임대업, 대리업, 중개업, 관리업, 건물 건대업(스스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산업을 제외한다.), 토지분양업(스스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토지조성을 실시하고, 이를 분양하는 산업은 제외한다.)는 대부분류 K-부동산업, 물품임대업[68, 69]으로 분류
- 주로 시추(광산용을 제외한다), 측량 또는 건설공사의 컨설팅, 설계, 감리를 실시하는 산업은 대부분류 L-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742]으로 분류
-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사 및 토목산업류는 주로 건설공사를 자체

109) 総務省(2014), 日本標準産業分類(2013년10월 개정, 2014년 4월1일 시행),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90723.pdf 의 내용 인용 및 정리

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외 대분류L-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7421]에 분류

- 석유정제, 화학, 제철, 발전 등의 플랜트를 대상으로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시공관리를 일괄하여 청부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대분류L-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7499]에 분류

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DB구축 체계 및 통계

□ 정부의 통계구축 체계 및 주요 통계

국가의 통계구축 체계를 구분할 때 작성주체와 방식을 기준으로 '분산형 통계'와 '집중형 통계'로 구분한다. 집중형은 하나의 통계기관이 국가의 모든 통계를 작성(생산)하는 시스템이며, 분산형은 각각의 정부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작성(생산)한다. 일본은 각 부처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각각의 기관이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물론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통계청처럼 통계업무만을 수행하는 총무성 통계국이 있으나 통계국은 기본 통계(기간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작성에 대한 자문, 각 부처의 통계 간 조정(기획, 입안, 심사, 조정 등), 국제통계작성, 통계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그림3-7).

[표 3-22] 통계구축 체계의 유형

구분	집중형	분산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 · 부처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하여 활용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필요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체계화 용이 ·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용이 · 통계전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에 업무분야의 전문지식 활용 용이 · 통계수요에의 신속한 대응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 활용 곤란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초래 · 통계전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곤란
채택국가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대만

출처: 연구진 작성

통계국의 기본통계(기간통계)조사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통계조사는 '경제센서스-활동조사'가 있다. 이는 다른 통계의 모집단 명부를 구성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국가 전체의 포괄적인 산업구조 파악을 위해 시행되며, 그 결과 경제센서스 조사는 소득세 부과, 산업 육성 및 기업 시책마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센서스는 하나의 부처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조사로서 경제산업성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총무성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됨과 동시에 통계국의 E-stat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그림 3- 7] 일본의 통계 행정체계

출처: 일본총무성(2018), 日本の未来をつくる「統計」.pdf, p.1 참고하여 작성

일본 분산형 통계 작성 체계에서, 경제산업성은 제조업, 공업, 상업을 비롯한 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건설 관련 통계는 국토교통성이 별도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건축서비스'의 개념은 부재하고 이와 유사하게 '건설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관련 명부는 국토교통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도시·건축·주택·항공·항만·운송·관광 등 17개 분야에 약 107개의 통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정책국 정보정책과 건설 경제 통

계 조사실(総合政策局情報政策課建設經濟統計調査室), 주택국 주택정책과 조사 담당(住宅局住宅政策課 調査係), 토지·건설 산업국 기획과(土地·建設産業局企画課) 등이 건축·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 동향분석, 산업연관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표 3-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주택 관련 통계 목록

통계명	구분	담당
건축 착공 통계 조사 (월보)	기간 통계	
건축 착공 통계 조사 (연 계)	기간 통계	
건축 착공 통계 조사 (연도 계)	기간 통계	
건설 조사 통계 (시간 시리즈)	기간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건축 통계 계
건축물 리모델링 리뉴얼 조사	일반 통계	
건축물 멸실 통계 조사	업무통계	
주거 생활 종합 조사	일반 통계	
빈집 실태 조사	일반 통계	주택국 주택 정책과 조사 담당
주택 시장 동향 조사	일반 통계	
민간 주택 대출 실태 조사	일반 통계	
주택 용지 완성 면적 조사	일반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건설 통계 계
주택 착공 통계에 의한 재건축 상황의 개요	가공통계	
아파트 종합 조사	일반 통계	주택국 아파트 정책실 기획 조정 계
건축물 실태 조사	일반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건축 통계 계
건축물 스탁 통계	가공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스탁 통계 계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jutaku_list.html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11.29.)

한편, 국토교통성이 작성하는 통계의 종류는 주로 근간통계와 일반통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조사통계'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가공통계'가 있는데 이는 기존 통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행 시 국토교통성이 업무내용 및 조사표를 작성하여 47개 도도부현에 송부, 도도부현이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성으로 회신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건설관련 통계의 경우 모집단은 건설업허가를 받은 사업체이며(전전년도 기준 완성된 공사 중 1억 엔 시항을 수행한 약 1만 200개 업체) 해당 업체에 국토교통성이 직접 조사표를 보내 실시한다. 조사는 인터넷, 우편을 활용하며 약 60%가 회신한다.

국토교통성에서 직접 작성하는 통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 입력 및 분석 등의 경우 외부 위탁을 맡기기도 하지만, 위탁업체는 국토교통성 내부 작업 공간에 입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일본 「자료보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계조사 결과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작업내용은 조사표 분류, 검토, 전산화 업무다.

이렇게 집계된 1차 결과는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로 발송하여 검토를 받아 신뢰도 검증을 받는다. 검증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는 통계국에서 다시 국토교통성으로 발송하여 국토교통성 건설경제 통계조사실 홈페이지와 통계국의 e-state를 통해 공표한다.

[표 3-2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 공사 관련 통계 목록

통계명	구분	담당
건설 공사 시공 통계 조사	기간 통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월보)속보	기간 통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월보)	기간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건설 통계 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연 계)	기간 통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연도 계)	기간 통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대기업 50 개사) (월보)	기간 통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대기업 50 개사) (연 계)	기간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통계 조정 계
건설 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 (대기업 50 개사) (연도 계)	기간 통계	
설비 공사업에 관한 수주 조사	가공통계	
건설 부산물 실태 조사	일반 통계	종합 정책국 사업 총괄 조정관 시공 기술계
건설 종합 통계	가공통계	
건설 디스플레이터	가공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통계 분석 원
건설 공사 진척률 조사	일반 통계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koji_list.html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1.29.)

[표 3-25]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 관련 통계 목록

통계명	구분	담당
건설 관련업 등의 동태 조사	일반 통계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통계 조정 계
건설업 활동 실태 조사	일반 통계	
건설업 구조 실태 조사	일반 통계	토지 · 건설 산업국 건설 시장 정비과 업무 계
건축 자재 · 인력 수요 실태 조사	일반 통계	토지 · 건설 산업국
주요 건설 자재 수급 · 가격 동향 조사	일반 통계	건설 시장 정비과 자재 계
건설 노동자 수급 조사	일반 통계	토지 · 건설 산업국 건설 시장 정비과 노동 계
자재의 수요 예측 <연도>	가공통계	토지 · 건설 산업국
자재의 수요 예측 <월별>	가공통계	건설 시장 정비과 자재 계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gyo_list.html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11.29.)

국토교통성을 통해 생산된 통계는 정책수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일본의 건설산업 유관 협회나 민간 연구소 등 수요기관에 의해 새롭게 가공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 건설경제연구소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는 1982년 건설업 보증회사 3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건설업체에 산업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한다. 국토교통성의 건설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 정비에 관한 조사, 건설 투자·공공 투자에 관한 조사, 건설 산업·경영 재무 분석에 관한 조사, 공공 조달·계약 보증 제도 등에 관한 조사, 주택·도시 문제·국토 정책에 관한 조사, 해외 시장 국제 비교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공유함으로써 일본 건설사 및 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¹⁰⁾

□ 일본건축가협회

건설이 아닌 건축분야의 통계활용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일본건축가협회는 건축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축가들의 단체로서, 건축가 업무지원, 정책 및 제도 지원활동, 건축 관련 연구 수행, 건축상 운영, 등록건축가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 통계는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건축 분야 기업이나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건설에 비해 통계에 관심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업무는 국토교통성의 주택국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부처와 관련 협회가 협력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협회는 통계작성 역할과는 무관하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이나 건축가에 관한 통계의 필요성은 협회라는 기관운영 목적 및 방법의 측면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건축분야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일본건축학회에서 발간한 “설계사무소 실태조사 보고서(設計事務所実態調査報告書)”도 이러한 작업의 성과물이다.¹¹¹⁾

110) 건설협회 등 연구소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기관의 자료나 ENR 같은 해외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수행하지만 국가(국토교통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만으로도 일본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2019.05.22. 기관 방문 면담 결과)

111) 2019.05.23 일본 출장 시 해당 기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우리나라의 대한건축사협회처럼 일본 건축 분야에서도 건축사 자격증의 등록·각종 신청·명부열람·등록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등록기관으로 일본건축사회연합회가 있다. 연합회는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 외에도 건축 관련 교육(CDP) 시행, 건축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中央指定登録機関(建築士法第10条の4)

<일본 건축사법 제10조의 4(중앙 지정 등록 기관)>

国土交通大臣は、その指定する者(以下「中央指定登録機関」という。)に、一級建築士の登録の実施に関する事務、一級建築士名簿を一般の閲覧に供する事務並びに構造設計一級建築士証及び設備設計一級建築士証の交付の実施に関する事務(以下「一級建築士登録等事務」という。)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中央指定登録機関の指定は、一級建築士登録等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국토교통성 장관은 해당 지정자(이하 중앙지정 등록기관)라고 한다.)에 일급건축사 등록 실시에 관한 사무, 일급건축사 명단을 일반 열람에 공인하는 사무와 구조설계 일급건축사증 및 설비설계 일급건축사증 교부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1급 건축사 등록 등 사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중앙지정등록기관 지정은 일급건축사 등록 등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수행한다.

건축사회연합회는 일본 1급 건축사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은 국토교통성과 지방 도도부현¹¹²⁾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1급은 국토교통성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며, 국토교통성의 등록 행정기관이 본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다. 2급 건축사와 목조 건축사 정보는 47개 도도부현 건축사회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성이 집계한다.

관리를 위한 1급 건축사의 범위는 시공회사에 소속된 건축사, 구조 및 설비전문 건축사까지 포함된다. 조사는 1급 건축사 경력 신고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타 특수 목적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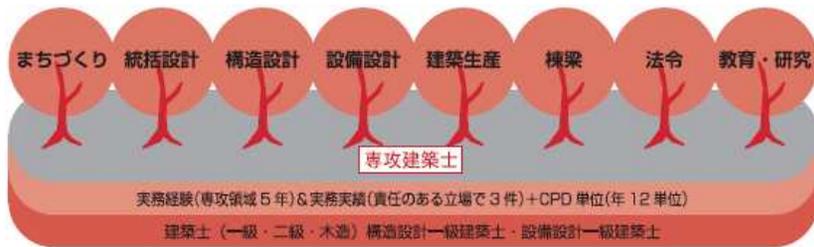
일본 건축사회연합회는 '전공 건축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축사의 업역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관련 DB를 관리하고 있다. '전공 건축사 제도'는 건축사를 8개

112) 일본의 행정구역 체계. 시정촌(市町村)을 포괄하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총 47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 한국의 시나 군을 몇개 단위로 합친 규모와 유사함(위키백과사전)

113) 2019.05.23 일본 출장 시 해당 기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전공으로 구분하고 전공별 건축사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건축사의 자격을 고도화하고 또한 다양화된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분화된 건축사 전공 영역 및 전문 분야를 표시하여 건축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자발적인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자체 평가와 검증 과정을 거쳐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전공 건축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회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 인증위원회에서 신청자를 접수평가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CDP의 일정학적 이상 이수를 통해 자격증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보완한다. 8개의 전공영역은 실무 경험을 통하여 다수(3개 영역까지) 영역 전공자로 등록하거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에 대한 등록도 가능하다.¹¹⁴⁾ 본 제도의 운영으로 일본 내 주요 건축사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8] 전공 건축사 제도에 따른 8개의 전공영역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검색일자 : 2019.06.03.)

본 제도는 자격제도 운영을 넘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건축사회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전국에 있는 건축사를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전공 건축사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건축사의 포트폴리오(건축사가 책임으로 담당했던 실무 3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도도 부현 별로 검색하거나, 전공영역, 전문분야, 이름, 회사 등의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정보 활용 목적이거나 특정지역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¹¹⁵⁾

114) 일본 출장 시 해당 기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115) 일본 출장 시 해당 기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표 3-26]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전공 영역	전문 분야
1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도시디자인, 경관 계획, 도시 계획, 재개발, 구획 정리, 유니버설 디자인, 방재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마을 만들기 어드바이저, 거리 보존·수경, 마을 만들기
2 統括設計 (총괄설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생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교통시설, 숙박시설, 물류시설, 스포츠시설, 어업 관련시설, 사찰 건축, 스키야풍 건축, 전통 건축 보호수리, 조경, 설비 관리, 프로젝트 관리, 건설 관리, 적산, 리모델링, 진단·개수, 농업 관련 시설
3 構造設計 (구조설계)	내진 진단·보강
4 設備設計 (설비설계)	에어컨, 급 배수 위생 설비, 전기 설비, 에너지 절약 정보 시스템
5 建築生産 (건축생산)	건축 시공 관리, 설비 시공 관리, 적산, 진단·개수, 공사 감리,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유지 관리, 리모델링 석면 진단·개수, 미리 절단, 건설 관리, 철골 공작도 확인, 청 대행 감정서 등 작성
6 棟梁 (동량)	사찰 건축, 스키야풍 건축, 전통 형 목조 주택, 고민가 진단·개수·재생 등 가야 糞畚 掌造 리노베이션
7 法令 (법령)	건축 확인·검사, 성능 평가, 안전 검사, 건축 분쟁 조정, 특정 행정청 업무, 건축 상담, 감정서 작성
8 教育研究 (교육연구)	디자인, 건축, 환경 설비, 재료·시공·복지 공학, 건축 계획, 도시 계획, 건축 역사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 2019.06.03.)

エリアから検索する

条件で検索する

専攻領域

専門分野

氏名

勤務先名

勤務先住所

※氏名をよみがなで検索する場合は、カタカナで入力してください。

都道府県を設定しないで検索する

[그림 3- 9] 전공 건축사 검색 서비스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공건축사 검색 페이지,
<https://aba-svc.jp/senkou-search/index.html> (검색일자 : 2019.06.03.)

[표 3-27]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전공영역	대상 건축사 자격 등	필요한 실무 경력(년)	실무 실적 건수	필요 CPD단위	실무·실적에 준하는 기타자격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건축사		-		
統括設計 (총괄설계)	건축사		「APECアーキテクト」		
構造設計 (구조설계)	1급 건축사	건축사면허 취득 후 5년의 경력	「APECエンジニア (構造)」 日本建築構造技術者協会「JSCA建築構造士」 「構造計算適合性判定員」·「構造設計一級建築士」		
設備設計 (설비설계)	건축사	+	建築設備技術者協会「JABMEEシニア」 「設備設計一級建築士」		
建築生産 (건축생산)	건축사	실무 경험 3년	日本建築積算協会「建築積算士」「建築コスト管理士」 ストック3 団体「5資格」		
棟梁 (동량)	건축사	최근 1년 CPD 12학점	日本伝統建築技術保存会「正会員」 「日本伝統建築技能者」		
法令 (법령)	1급 건축사		「建築基準適合判定資格者」		
教育研究 (교육연구)	건축사		-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 2019.06.03.)

5. 소결: 국내외 유관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1) 국내 유관산업 사례 시사점

□ 다양한 정보 관리를 통한 통계 생산 효율성 제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은 각각의 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 외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사업내역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모집단 분석 및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디자인DB 운영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과 사업체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포호(디자인 공시증명,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종합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업체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적산기준 처럼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협회가 시행하는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경우, 관련 모집단의 정보(사업체 정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가 접속해 직접 조사 내용을 입력하는 조사 실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승인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통계가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무 관련 정보, 법령정보, 건설산업 관련 뉴스, 채용 정보, 업체정보 등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와, 협회가 생산한 자료는 아니지만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그리고 회원들의 신고와 게시를 통해 구축되는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의 생산 주체와 제공 방식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건설업체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이며, 대한건설협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관리와 제공, 나아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건설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기보다 시장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업체가 자발적 생성하도록 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통계 작성·소비가 보다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 제도와 연계한 신뢰도 높은 통계

엔지니어링산업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여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등이 반영된다. 여기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승인통계인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통계결과가 시장의 노임 단가와 대가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⁶⁾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¹⁷⁾ 이처럼 제도를 활용한 정보 입수와 통계 생산으로 산업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정책 추진의 당위성까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 산업·경제 변화를 반영한 표준산업분류 내 산업 정의 및 범위 개정

일본은 통계작성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들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활동 지표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거나 확대됨에 따라 분류가 다양(세분화)해지기도 하고 축소(분류상 삭제 또는 통합)되기도 하며 정의도 변화해야함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산업분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 서비스¹¹⁸⁾'가 도출되었다.¹¹⁹⁾ 그러나 건축, 건설 분야를 주관하는 국토교

1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23조

1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23조의2

118) 우리의 건축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건축에 있어 건설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건축서비스가 아닌 건설서비스로 명칭

119) 국토교통성은 아직 건설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일본 출장

통성에서는 아직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제도화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명확한 분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도 법적인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만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적 정의와는 명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다양한 활용성 및 산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기획·생산 필요

일본의 경제센서스(복합조사)의 경우 기초조사와 활동조사로 나누어 조사의 목적, 항목, 주기 등을 구분한다. 기초조사는 사업체의 기본사항에 대한 조사(ex. 사업체명, 사업체의 매출, 사업체의 종사자, 사업체의 주요분야 등)를, 활동조사는 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들 두 조사가 경제센서스를 통해 일괄 시행됨으로써 산업·경제·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초조사와 활동조사는 동시에 시행되지 않고, 서로간의 조사내용과 통계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내용과 항목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업체가 더 이상 하나의 분야만을 수행하지 않고, 주요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또는 이전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것 등의 산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의 경우 예산 확보의 부담, 조사결과 취합 및 정리의 어려움, 응답자(사업체)들의 통계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DB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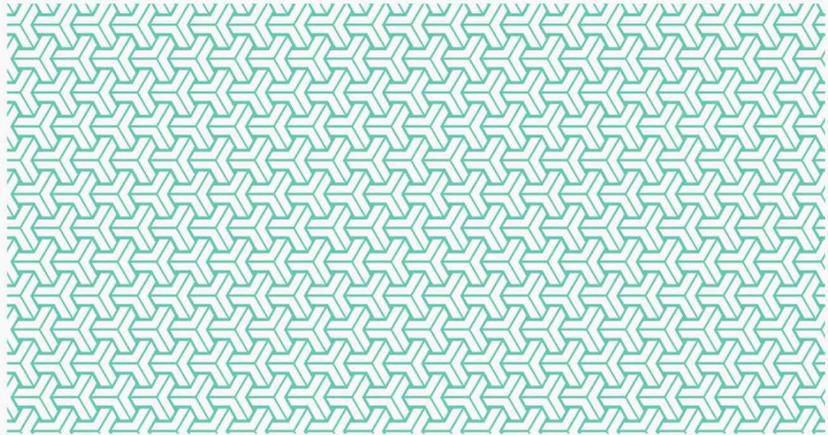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통계조사 시행에 있어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통계결과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다. 통계조사와 DB구축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관련 연구에만 활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개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만한 DB, 통계의 생산과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

시 해당 기관 면담 내용)

□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통계작성

한편, 일본은 건축 및 건설 관련 통계가 국토교통성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법이나 평가제도 등을 통해 신고의 의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 이외에도 소관부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응답률뿐 아니라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이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산 계획의 수립 및 집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국토교통성 통계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면서 관련 통계 및 정책정보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방안



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방향 및 전략
2.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추진

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방향 및 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 종류 결정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산업투자 등 기초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으로 산업내부의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실태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내부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상황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토대로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실태조사의 항목은 크게 국내외시장현황, 수주 및 매출 현황, 종사자 현황, 연구개발 현황, 인력 양성·교육현황이며, 이들 항목은 일차적으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해 파악해야 할 기본 정보임과 동시에 향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의 주요내용이기도 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삭제 <2016. 1. 12.>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앞서 법제8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산업 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정보체계에 담겨야 할 사항은 산업현황, 사업자의 수주실적, 국내외 입찰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현황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거의 동일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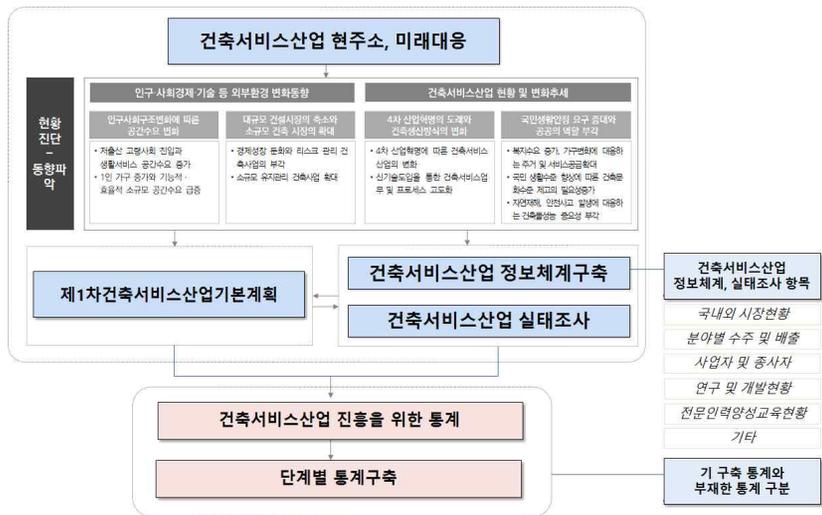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나 정보체계구축 지표와 더불어 건축서비스산업에 요구되는 통계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진흥 정책과 상관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건설하는 건축 산업은 민간의 경제활동 자체에 국한되기보다 중장기 국가운영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 시행계획을 필두로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에 필요한 통계를, 기본계획 정책 주안점과 실태조사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진흥기본계획은 크게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정상화', '건축서비스산업 기반구축', '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각각의 전략과 하위 세부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은 현재의 건축서비스산업 내부의 현안과 더불어 인구사회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상기 세 가지 기본계획 목표 중 '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며 고부가가치 생산, 강소기업육성,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내부현황 파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검토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요구되는 기초정보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통계 항목 중 현재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통계를 구분하면 단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통계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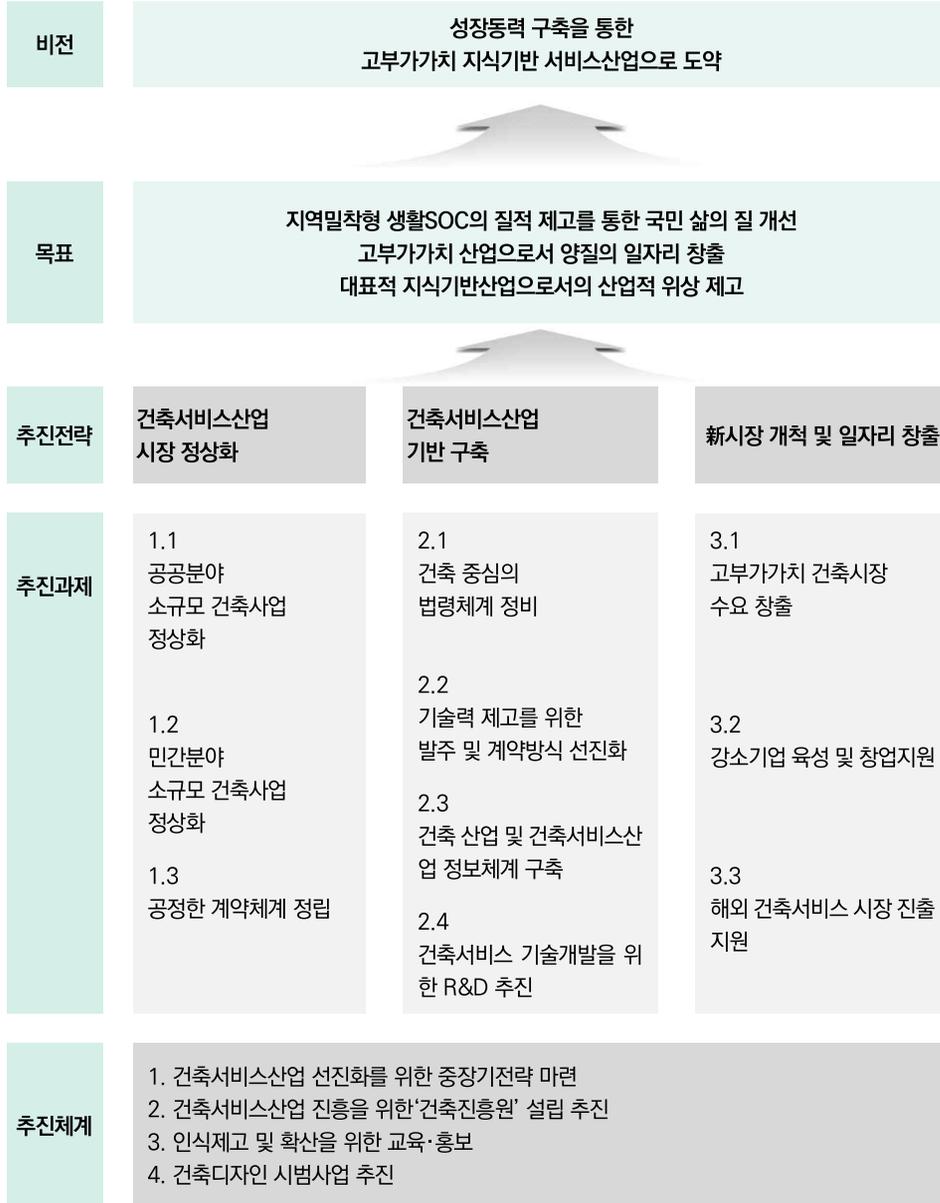


[그림 4-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방법

출처: 연구진 작성

이러한 통계구축 방향을 토대로 실태조사 항목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전략을 연결하면 표 4-2와 4-3을 통해 앞으로 구축해야 할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1]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2018),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p. 23

[표 4-2]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에 요구되는 정보

정책 / 실태조사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정상화			건축서비스-산업기반 구축				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공공 분야 소규모 건축 사업 정상화	민간 분야 소규모 건축 사업 정상화	공정한 계약 체계 정립	건축 중심의 법령 체계 정비	기술력 제고를 위한 발주 및 계약 방식 선진화	건축 산업 및 건축 서비스 산업 정보 체계 구축	건축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고부가 가치 건축 시장 수요 창출	강소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해외 건축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시장	전체 및 소규모 건축물 조성 현황/ 전체 및 소규모사업 종류/ 발주처별 발주량/ 발주방식/ 소규모 업체 현황 (규모, 수주, 운영) 업체의 경 영실태	계약방식/ 계약금액/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	발주방식/ 계약방식	-	-	-	신규사업/ 창업현황	강소기업현황	해외시장 진출현황/ 사업내용
매출	사업 분야별 수주현황/ 매출 사업업무범위/	소규모 사업업무범위/ 공사비/ 설계비 등	-	-	-	-	-	신규사업 매출	강소기업 매출	해외사업 매출
분야별 종사자	소규모 사업체 유형/ 종사자수/ 종사자전문분야	-	-	-	-	-	-	신규사업 종사자	강소기업 종사자	해외진출업체 종사자
연구 개발	시장경기 지표별 동향/ 부실사공 건수 및 원인/ 사업분야별 수요 (성능개선 분야 디자인개선 분야 등)/ 만족도	대기기준/ 표준업무	-	-	정보종류 체계, 생산 및 수요자, 비용 등	BIM 등 신 기술수요, 효과, 비용 등	신규개발 사업분야 등	지원분야 지원규모 효과	해외진출 방법, 투자비용	
인력양성 교육	전문인력의 범위/ 전문인력의 유형 및 수/ 전문인력 자격증 유형 및 수	-	-	-	-	-	-	-	-	프로그램 지원기금 지원기금
기타	-	-	법제도의 효과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3] 건축서비스산업 요구통계 및 기존 통계 현황

요구되는 통계		기존 통계		
		유관 국가통계 ¹²⁰⁾	건축서비스 관련 산업 통계	건축서비스 산업 통계
국내 외 시장	전체 건축물 현황 소규모 건축물 현황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임대주택통계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보급률 주택총조사 주택소유통계		-
	시장 발주사업 종류 발주처 및 발주처별 발주량 발주방식	-	-	-
	주요 해외시장 및 사업분야	-	건설_해외건설수주통계	
	주요 해외시장 발주처, 발주건수, 규모	-		
	계약방식(협력 포함), 계약금액, 기성액	-	건설_건설업조사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대가	-	-	
	업체	사업체 유형 등록 및 멸실 수 지역분포	경제총조사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사업체노동실태 서비스업조사	-
신규창업유형 및 업체수규모·주 력분야		-	-	-
강소기업유형 및 업체수규모·주 력분야		-	-	-
업체의 경영분석		-	건설_건설업경영분석	
매출 (분야 및 규모)	전체 사업 분야별 수주건수, 규모, 매출	-	건설_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건설_전문건설업통계조사 유지관리_시설물유지관리업 조사 설비_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기_전기공사업통계조사	실태조사(연구)
	소규모 사업 분야별 수주건수, 규 모, 매출	-	-	-
	신규창업기업 분야별 수주건수, 규모, 매출	-	-	-
	강소기업 분야별 수주건수, 규모, 매출	-	-	-
	해외시장 분야별 수주건수, 규모, 매출	-	건설_해외건설수주통계	
분야 별 종사 자 규모	전체 및 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 노동실태 산업디자인통계	건설_건설업조사	실태조사(연구)

종사자 특성 및 처우	기술자 종류, 기술자수	-	-	실태조사(연구)
	종사자 감소, 증가, 이동 동향	-	-	
	자격증 종류, 자격증 소지자 및 멸실자 수	-	-	실태조사(연구)
	종사자 국적, 전문분야, 성별, 나이, 학력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실태조사(연구)
	종사자의 취업, 근속연수	-	-	실태조사(연구)
	종사자의 임금	건설_고용허가제고용동향	건설_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_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전기_전기공사업체통계조사	실태조사(연구)
연구 개발	건축시장, 소규모 건축시장 경기, 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수	주택총조사	-
	사업분야별 수요	-	-	-
	사용자 만족도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주거실태조사	-
	대가기준, 표준업무	-	-	-
	신기술 수요 및 효과, 비용	-	-	실태조사(연구)
	지원방식, 규모	-	-	-
	해외진출방법 및 비용	-	-	실태조사(연구)
인력양성 교육	전문인력의 유형 및 수, 성별, 나이, 학력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산업디자인통계 환경산업통계	-	실태조사(연구)
	퇴직 후 진로	-	-	-
	관련분야 학생 수, 졸업생 수, 진로	-	-	-
기타	분야별 법제도 활용도	-	-	-
	법제도의 문제점	-	-	-
	법제도의 효과	-	-	-
	건축시장 거래량, 가격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 현황 주택실거래가격지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거래현황	-	-
	토지정보	국토지리정보현황 지적통계 외국인토지현황 택지에정지구지정 및 공급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	-

출처: 연구진 작성

120) 표2-21,22 기준

기 구축 통계 정보는 산업 주체와 분야에 대한 기본현황으로, 업체 및 종사자 수, 매출에 대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다. 본 분석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통계는 전무한 상태이며, 건축시장에 대한 정보로 건축물 통계가 일부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추진된 실태조사 결과로서 시장 및 업체, 매출, 기타 정보들이 일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표4-3의 실태조사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도출한 모든 통계가 구축 대상이 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건축서비스 산업범위 및 통계 종류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세세분류에 포함되는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네 가지 분야와, 전문디자인업 중 '인테리어디자인업'이 포함된다.

이는 크게 건축설계, 유지·관리, 도시 및 조경, 건축엔지니어링, 인테리어 기술 부문으로 구분되며 건설계획 및 설계, 설계감리, 유지·관리,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건축조사, 건축구조, 건축설비, 인테리어의 전문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는 결국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정의를 토대로 설정한 건축물 조성단계과정을 중심으로 사용과정의 변동을 고려한 산업분류라 할 수 있다.

기술부문	전문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축설계 부문	건축계획 및 설계 설계감리	M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유지·관리 부문	유지·관리	
도시 및 조경 부문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M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축엔지니어링 부문	건축조사	M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구조 건축설비	M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부문	인테리어	M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그림 4-2]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재편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그러나 법적 정의의 건축서비스산업 활동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연관 산업과 산업 활동 결과물인 건축물을 매개로 유발되는 각종 산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산업 융합도나 조성 후 다용도의 복합적 공간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산업범위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커진다. 건축물 조성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획 및 설계단계에 과학 기술서비스업 중 측량, 지질조사지도제작업의 측량업이나 제도업은 건축물 조성 및 관리업무와 연동되어야 하며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 조성 후 건축물을 매개로 경제활동이 유발되는 후방산업으로는 임대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존 산업이 건축서비스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이나 사업지원서비스업(75)의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도 건축물을 매개로 기획 및 설계 등의 업무가 발생하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건축물을 직접 활용하는 산업활동, 예를 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중 독서실 운영업(90212)이나 박물관 운영업(90221),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2) 등도 대표적인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계되는 후방 산업에 해당된다. 건설업(F)은 건축서비스업과 다른 분야이지만, 건축서비스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성과물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직접적인 연관 산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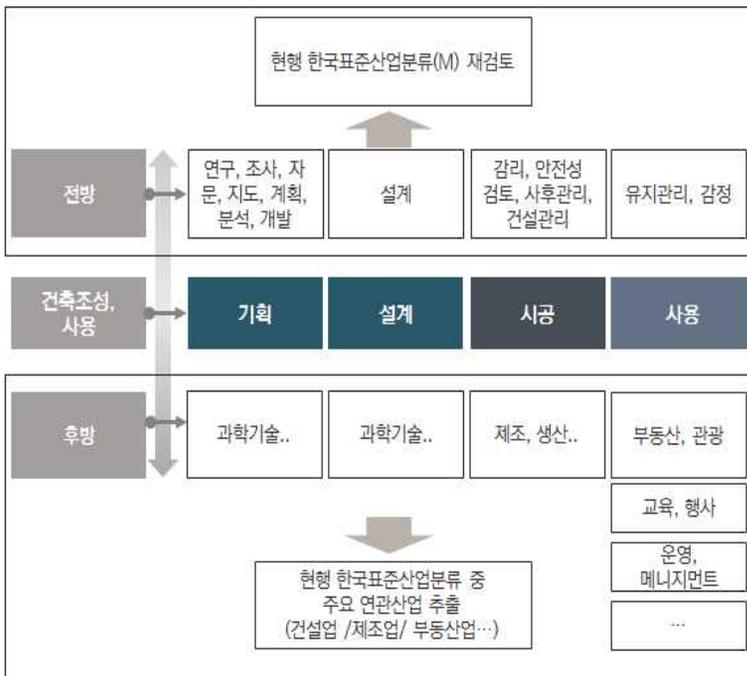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 범위는 기존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축환경과 공간수요 변화 양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 변화 전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서 언급한 건축서비스산업 연관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한꺼번에 묶어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들 중 건축서비스산업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산업은 현재 산업분류에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산업 선정을 위해 특성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 (IT기술의 적극 도입)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가상현실(가상공간)과 같은 IT 기술력 접목
-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거나 기술과 서비스 결합 ; 키즈카페, 펫카페, 탈출방 등
- (공간기반의 콘텐츠) 기존의 건축 또는 공간 개념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공간 또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생산하거나 공간 기반 콘텐츠 개발 ; 공

유오피스, 공유주택 등

- (표준화, 경제적인 모델 상품 개발) 모바일 건축, 모듈러 건축 등 기존 건축의 고정성을 탈피하는 상품 개발
- (건설 솔루션 제공)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 3D 프린팅을 통한 새로운 공법 창출, 레이저 스캐너, BIM을 통한 현장 건설 기술 영역의 솔루션 제공
- (부동산, 도시관리로 확장) 건축과 도시, 건축과 부동산 등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

건축서비스산업의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물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의 일부 세부 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산업분류를 재설정해야 한다.¹²¹⁾



[그림 4-3] 건축서비스산업 분류 재편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121)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에 포함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단계적으로, 제도적 제약이 적은 특수분류로 해당 산업을 포함하여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해당 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거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변화 특성	이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유관산업	
		전방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	후방산업
IT, BIM, GIS기술 의 도입	기술, 컴퓨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업(J) - 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62090)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3999) 	
건설솔루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72921) 	
표준화, 경제적인 모델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건설업(F) - 건물건설업(411)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 공간기반의 콘텐츠	유지, 관리, 공간 제작,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 사업시설 유자관리서비스업(741)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 숙박 및 음식점업(I) - 숙박업(5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 박물관운영업(90221) -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2)
부동산, 도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업(L)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6822)

출처: 연구진 작성

3) 건축 산업 구조를 고려한 연관 DB 활용

□ 기존 국가승인 통계 중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가공

현재 국가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통계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계 자료 또한 건축서비스산업만 별도로 분리하여 데이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전체의 일부 정보만 건축서비스산업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에는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¹²²⁾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종류와 매출액, 종사자 등에 관한 기본 정보와 사업체의 건물 연면적, 직능별 종사자 수 등 특성항목에 대한 DB를 생산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인 ‘서비스업조사’¹²³⁾는 전국 202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관련 분야의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²⁴⁾

따라서 이들 통계 중 건축서비스산업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한다면 신뢰도 높은 산업 실태분석이 가능하다.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통계가 생산되고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 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건축서비스산업 내·외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건축행정시스템의 방대한 정보 활용

건축서비스활동의 결과물 중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대상은 건축물이다. 즉, 건축물 조성 현황은 건축서비스산업 양상 및 시장 특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 행정관리는 일차적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세움

122)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국민소득(GDP), 지역별 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 통계의 기준점(Bench-Mark) 자료, 소지역단위 통계 작성 등으로 활용 - 조사 주기 매 5년 (0자 및 5자로 끝나는 연도를 기준으로 실시) (출처: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4000000004>)

123)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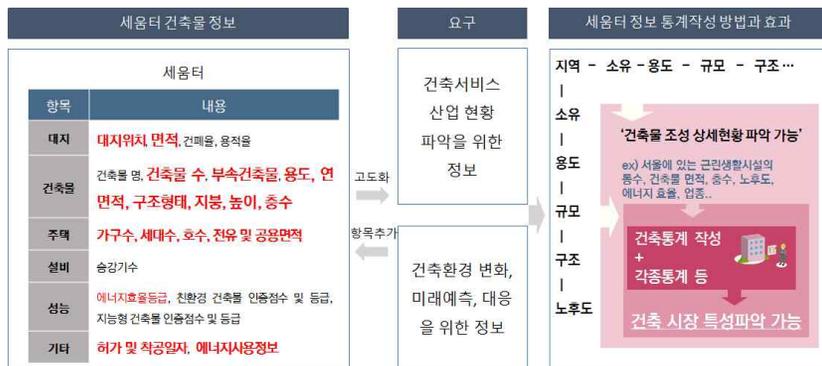
124)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kost/1/index.action?bmode=read&cd=S009003&tt=cate

터에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움터에는 대지와 건축물, 성능 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약 720만동의 건축물 정보가 세움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세움터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국가통계는 「건축법」 제 30조에 근거한 건축물 허가 및 착공통계가 유일하다. 항목 또한 세부적이지 않아 건축서비스시장 뿐 아니라 건설시장 동향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9개 용도 구분이 아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의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분류 형태를 띠고 있어 미시적인 건축시장 추세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세움터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개별 기관이 만드는 통계는 특수 목적의 한시적인 정보에 그칠 뿐 아니라 국가승인 통계가 아니므로 작성 방법이나 결과의 신뢰도 담보하기 어렵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의 지역별, 규모별(면적, 층수), 구조별, 노후도별, 소유주별 기초 통계와 더불어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물 관련 정보를 설정하여 통계로 작성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앞서 도출한 건축서비스산업에 요구되는 통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영역 확장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정보를 도출해야 하고, 더불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세움터 건축물 정보 중 통계작성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초 정보 및 통계가 생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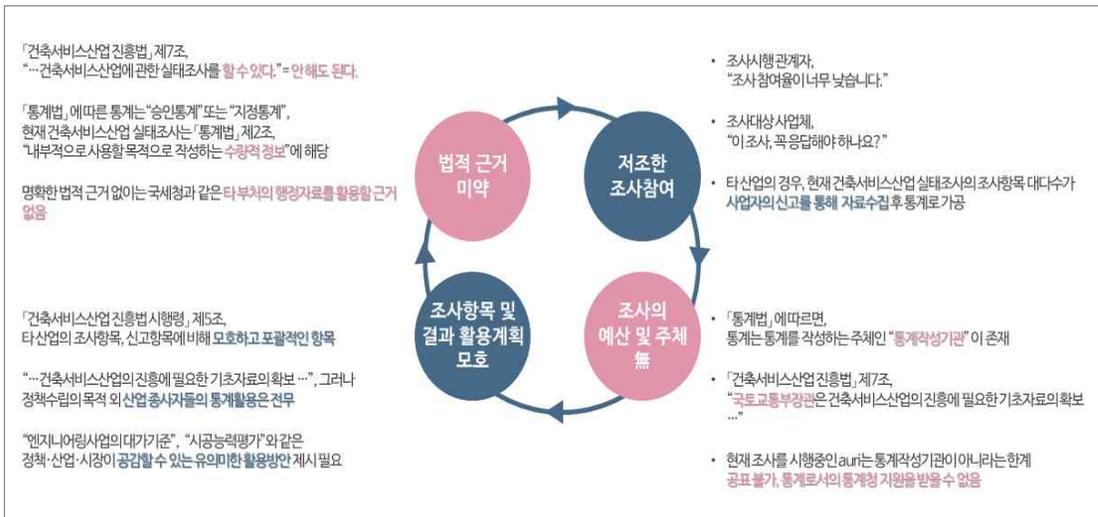
[그림 4-4] 세움터 정보의 활용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국가승인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지속성 담보

앞서 제시한 기존의 국가승인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DB를 소관하고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기관 간 협조는 정보 활용에 대한 공통의 목표설정과 그 당위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결과의 공공적 활용성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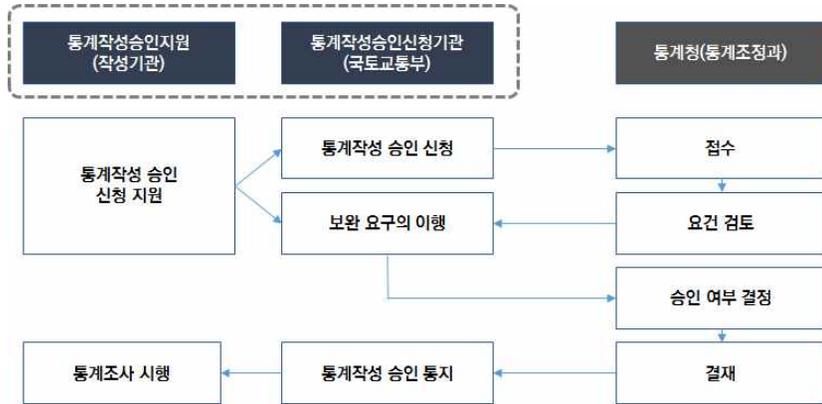
이러한 방법은 기존 2014년과 2017년에 수행한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통계작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참여 규정, 조사실행 주체 및 예산 집행 근거 등이 부재하여 정확한 결과값 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 일부 항목을 국가승인통계 활용으로 대체한다면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대폭 축소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5]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한계

출처: 연구진 작성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 승인통계 작성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작성에 요구되는 방법적, 내용적 수준을 향상하고 신뢰도 높고 지속 가능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가승인 통계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컨설팅비용 및 실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6] 건축서비스산업 국가승인 통계 신청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 (지원내용) 예산 및 기술지원

사업명	'19년 사업비	개발 통계수	과제별 직접지원 예산규모	지원기간(예정)	지원방법
국가통계 개발사업	950	5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1종 당 1억 내외 - 통계표 설계 및 DB 구축 - 통계프로그램 구입 - 기타 통계작성 및 품질 향상 비용 등 	'19년 3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를 통해 통계 개발개선 예산지원 - 전문가 맞춤형 기술지원 - 맞춤형 교육

출처: 통계청 공고 제2019-18호, 2019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계획 공고, p.1

2.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추진¹²⁵⁾

1) 조사개요

① 조사목적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획, 계획, 설계,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산업이다. 또한 국가 경제 및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업 및 유관 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 매출액 변화, 산업의 수주 및 생산성 등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현황, 분야별 종사자 현황, 관련 연구 및 개발 현황,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현황 등 조사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기초자료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해 시행된 2014년, 2017년 시범조사와 연구결과는 실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통계로서 승인받지 못한 시범조사의 경우 그 신뢰도를 증명받기 어렵고 따라서 대내외 공표가 불가하다. 또한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 통계화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사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2014년, 2017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와 더불어 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방안 모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기존시범조사의 주요 항목 등을 산업의 요구와 변화흐름에 맞추어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조사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5) 한국조사협회 정회원인 조사업체(엠브레인)가 위탁용역으로 추진. 본 절에서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표와 그림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② 조사내용

본 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항목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분야 및 수주·생산성, 해외사업,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교육 및 홍보, 종사자현황, 사업체일반현황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4-5]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활용목적

부문	조사항목	활용목적
사업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조직형태 · 고용유형, 국적, 부서별 직원구성 · 2018년 매출액 · 2018년 연간 지출액 · 사무실 점유형태 및 면적, 임대비용 · 해외지사 유무, 수 	· 산업현황 및 여건전망
사업분야 및 수주,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 사업분야(서비스)별 수주액 · 2018년 입찰 및 낙찰건수 · 발주처별 수주액 · 공공사업 수주방식별 수주액 · 민간사업 수주방식별 수주액 · 민간사업 업무대가기준 · 민간사업 업무완료 후 수금완료기간 · 기획업무 후 계약미체결 건수, 소요비용 · 향후 진출희망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제도 개선 · 건축서비스의 표준화 · 적정대가마련
종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학력별 직원 수 · 근속년수별 직원 수 · 대학전공별 직원 수 · 자격 보유자 수 · 향후 2년 간 예상 직원 수 · 직원 채용의 어려움 · 퇴사자의 주요 퇴사사유 · 2018년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
해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해외사업 수행 여부 · 2018년 해외사업 연간 매출액 및 계약건수 · 2018년 해외사업의 발주방식 · 해외업체와 협력한 프로젝트 수 · 해외업체와 협력한 협력분야 · 해외사업 참여의사 · 해외사업 진출 지역 우선순위 · 해외사업 추진 시 어려움 	· 해외시장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 GIS 활용유무, 활용 업무 ·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보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육성 · 산업생산성 향상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한 직원교육, 실시방법, 필요한 직원교육 · 사업체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육프로그램 개선 · 생산성 및 지속성 향상 · 홍보전략 수립

2014년, 2017년 시범조사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기존 조사항목 중 본 조사를 통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정책수립 및 발전안 마련에 있어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항목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항도 제외시켰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의 문항 예시 등을 축소·개선하였으며, 활용목적 및 조사부문을 고려하여 항목의 순서 등 구성도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에 없던 다양한 유형의 건축서비스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산업 간 경계가 과거와 달리 유연해짐에 따라 '향후 진출희망 사업 분야' 등 설문 항목을 추가하였다.¹²⁶⁾

③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모집단 및 표본

조사대상은 2017년도 시범조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M72111)'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본들은 통계청의 「2017년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생산된 사업체 명부이며 이 중 565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온라인과 팩스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종사자수 기준, 5명 미만, 5명 이상~9명 이하, 10명 이상~19명 이하, 20명 이상~49명 이하, 50명 이상~99명 이하, 100명 이상~299명 이하, 300명 이상의 7개로 구분하였고¹²⁷⁾ 지역, 매출액, 조직 형태에 따라 층위를 나누었다. 특히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업체는 전수조사¹²⁸⁾를, 그 외 종사자 층은 모집단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고 응답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가중치¹²⁹⁾를 설정하고 모든 분석 결과에 적용하였다.

조사기준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이다. 조사는 2019년 9월26일부터 11월24일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126) 부록의 조사표 참조

127)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종사자수 5명 미만의 '1인 기업(5명 미만)', 50명 미만 5명 이상의 '소기업', 300명 미만 50명 이상의 '중기업',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참고하여 설정

128) 전수조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체의 협조 거부로 18개 업체의 응답을 확보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결과값을 보정함

129) 가중치 산정식(표4-8) $\omega_{hi} = \frac{N_h}{n_h}$ (N_h : h층의 모집단 수, n_h : h층의 표본 수)

[표 4-6]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M72111) 사업체
표본 틀	통계청 「2017년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생산된 M72111 사업체 명부
조사 방법	M72111 사업체 명부를 기초로 사전 전화 컨택 설문 응답에 적합한 사업체 담당자를 찾아 온라인, 팩스 조사 진행
표본 배분	총화변수 : 「2017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기준으로 총화(7개)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종사자 규모 50명 이상의 사업체는 전수조사 목표, 그 외 종사자 층은 모집단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유효 표본	총 565개 표본 ※ 응답된 표본은 모집단의 종사자수 분포 비율에 맞게 사후 가중(weighting)하여 분석함
조사 기준 시점	2018년 12월 31일 (기준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조사 기간	2019년 9월 26일 ~ 11월 24일

[표 4-7]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표본설계 (단위: 개, %)

구분	모집단(개)	비율(%)	표본 배분(개)	할당 방식
전체	12,196	100%	540	-
종사 자수	5명 미만	8,712	228	모집단
	5~9명	2,403	120	축소(제공근,
	10~19명	673	62	P=0.5) 후
	20~49명	266	40	비례할당
	50~99명	69	30	
	100~299명	43	30	전수조사
	300명 이상	30	30	목표

[표 4-8] 종사자 규모별 가중치 (단위: 개)

구분	모집단 수(N_h)	응답 사업체 수(n_h)	가중치(w)
종사 자수	5명 미만	8,712	24.00000
	5~9명	2,403	32.91781
	10~19명	673	9.61429
	20~49명	266	6.48780
	50~99명	69	9.85714
	100~299명	43	7.16667
	300명 이상	30	6.00000

[표 4-9] 응답 사업체 특성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개)	비율(%)
합계	(565)	100.0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64.2
	5~9명	(73) 12.9
	10~19명	(70) 12.4
	20~49명	(41) 7.3
	50~99명	(7) 1.2
	100~299명	(6) 1.1
	300명 이상	(5) 0.9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9.2
	1억~5억원 미만	(299) 52.9
	5억~10억원 미만	(88) 15.6
	10억~50억원 미만	(105) 18.6
	50억~100억원 미만	(9) 1.6
	100억~200억원 미만	(3) 0.5
200억~300억원 미만	(5) 0.9	
300억원 이상	(4) 0.7	
지역	서울	(175) 31.0
	부산	(35) 6.2
	대구	(27) 4.8
	인천	(19) 3.4
	광주	(14) 2.5
	대전	(17) 3.0
	울산	(8) 1.4
	경기	(109) 19.3
	강원	(9) 1.6
	충북	(21) 3.7
	충남	(32) 5.7
	전북	(18) 3.2
	전남	(13) 2.3
	경북	(17) 3.0
경남	(36) 6.4	
제주	(12) 2.1	
세종	(3) 0.5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319) 56.5
	회사법인	(246) 43.5

2) 모집단 분석¹³⁰⁾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17년 작성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 고용 사업체가 10,000 곳 이상이고 이 중 5명 미만 사업체가 8,351곳으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08곳으로 가장 많다.

[표 4-10]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사업체 수 (단위: 개)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총합
합계	8,351	2,137	591	223	60	42	30	11,434
서울	2,163	743	300	130	28	23	21	3,408
부산	571	137	46	14	6	1	1	776
대구	588	95	18	4	3	1	0	709
인천	248	90	7	6	4	2	0	357
광주	268	52	17	8	0	1	0	346
대전	261	46	10	2	2	2	1	324
울산	201	27	9	1	0	2	1	241
경기	1,352	425	97	34	10	5	4	1,927
강원	253	61	5	2	1	2	0	324
충북	263	52	12	1	0	1	2	331
충남	305	73	11	4	0	1	0	394
전북	321	41	9	4	0	1	0	376
전남	281	46	8	3	1	0	0	339
경북	483	90	10	2	1	0	0	586
경남	589	82	19	6	3	0	0	699
제주	172	65	12	2	1	0	0	252
세종	32	12	1	0	0	0	0	4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총 72,392명이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18,48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30개 인데 반해 종사자수는 14,736명으로 5명 미만 업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100명 이상 업체 종사자도 7,883명으로, 이들 두 집단 종사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130) 모집단 분석에 활용된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활용하였음

[표 4-1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명)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총합
합계	18,482	13,369	7,516	6,371	4,035	7,883	14,736	72,392
서울	4,767	4,722	3,841	3,761	1,870	4,327	11,353	34,641
부산	1,203	864	604	411	391	239	349	4,061
대구	1,063	595	240	88	212	120	0	2,318
인천	561	583	82	183	296	532	0	2,237
광주	577	333	213	214	0	135	0	1,472
대전	528	282	129	50	111	327	404	1,831
울산	401	162	111	20	0	377	312	1,383
경기	3,199	2,622	1,219	936	690	871	1,460	10,997
강원	589	375	55	70	64	328	0	1,481
충북	607	312	144	26	0	299	858	2,246
충남	769	431	154	96	0	137	0	1,587
전북	731	241	120	110	0	191	0	1,393
전남	669	285	96	81	75	0	0	1,206
경북	1,041	556	112	44	64	0	0	1,817
경남	1,275	511	230	203	212	0	0	2,431
제주	430	420	151	78	50	0	0	1,129
세종	72	75	15	0	0	0	0	162

고용형태에 따른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총 60,176명으로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4,075명, 자영업자는 7,883명이다.

[표 4-12]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종사자	총합
합계	60,176	4,075	7,883	150	108	72,392
서울	31,499	1,385	1,667	14	76	34,641
부산	3,187	325	536	12	1	4,061
대구	1,470	250	591	7	0	2,318
인천	1,820	140	269	4	4	2,237

광주	1,140	92	235	4	1	1,472
대전	1,461	109	252	9	0	1,831
울산	1,109	62	209	3	0	1,383
경기	8,907	718	1,340	24	8	10,997
강원	1,130	80	258	10	3	1,481
충북	1,854	125	261	4	2	2,246
충남	1,154	105	320	4	4	1,587
전북	976	100	309	8	0	1,393
전남	837	78	280	11	0	1,206
경북	1,090	197	516	12	2	1,817
경남	1,611	183	612	19	6	2,431
제주	812	112	200	4	1	1,129
세종	119	14	28	1	0	162

조사 기준 시점(2017년, 전국 사업체 조사)사업체의 운영 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 중 3년 미만의 신생 사업체가 20.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20년 이상의 사업체는 16.3%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4-13] 사업체 운영 기간 (단위 : %)

	사업체 수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11,434)	20.4	13.2	20.4	14.5	15.1	16.3
서울	(3,408)	23.1	14.4	19.4	14.1	13.4	15.6
부산	(776)	15.1	14.6	22.6	12.5	16.1	19.2
대구	(709)	17.6	11.7	19.3	13.0	13.8	24.5
인천	(357)	16.0	12.6	24.4	18.2	13.7	15.1
광주	(346)	18.8	14.2	19.4	12.7	16.5	18.5
대전	(324)	17.6	9.0	21.3	18.2	17.3	16.7
울산	(241)	19.9	7.5	19.5	14.9	19.1	19.1
경기	(1,927)	22.9	14.4	20.3	14.5	14.5	13.4
강원	(324)	17.0	10.2	18.5	16.0	20.1	18.2
충북	(331)	19.9	13.6	17.8	15.4	17.5	15.7
충남	(394)	17.3	13.5	27.2	17.5	12.4	12.2
전북	(376)	16.2	10.1	17.3	16.0	19.7	20.7
전남	(339)	19.8	15.6	22.7	16.8	13.0	12.1

경북	(586)	17.7	10.4	17.9	15.5	20.3	18.1
경남	(699)	16.3	11.2	25.0	13.6	16.5	17.5
제주	(252)	36.5	14.7	16.3	9.9	11.9	10.7
세종	(45)	20.0	26.7	28.9	17.8	2.2	4.4

매출액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약 80%가 5억원 미만이며 100억 이상 사업체는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매출액 현황 (단위 : %)

	사업체 수	1억원 미만	1억~ 5억원 미만	5억~ 10억원 미만	10억~ 50억원 미만	50억~ 100억원 미만	100억~ 200억원 미만	200억~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합계	(11,434)	31.1	50.9	9.4	7.1	0.8	0.3	0.1	0.3
서울	(3,408)	29.4	42.1	13.0	12.4	1.5	0.6	0.3	0.8
부산	(776)	33.5	49.1	8.5	7.6	0.9	0.3	0.0	0.1
대구	(709)	48.2	41.5	6.3	3.2	0.6	0.0	0.0	0.1
인천	(357)	28.9	52.7	8.7	8.4	0.6	0.8	0.0	0.0
광주	(346)	35.5	48.6	8.7	6.4	0.6	0.3	0.0	0.0
대전	(324)	45.7	42.9	5.2	4.3	0.9	0.6	0.0	0.3
울산	(241)	42.3	49.0	4.1	3.3	0.4	0.0	0.8	0.0
경기	(1,927)	25.4	56.0	10.3	7.3	0.5	0.2	0.2	0.2
강원	(324)	24.4	65.1	8.3	1.5	0.0	0.3	0.3	0.0
충북	(331)	33.8	55.0	7.9	2.4	0.0	0.0	0.3	0.6
충남	(394)	22.6	64.5	7.4	5.3	0.3	0.0	0.0	0.0
전북	(376)	32.2	61.2	3.2	3.2	0.0	0.3	0.0	0.0
전남	(339)	25.1	65.5	6.8	2.7	0.0	0.0	0.0	0.0
경북	(586)	30.5	59.2	7.8	2.2	0.2	0.0	0.0	0.0
경남	(699)	34.3	56.5	6.0	2.4	0.6	0.1	0.0	0.0
제주	(252)	25.0	57.9	11.9	4.8	0.4	0.0	0.0	0.0
세종	(45)	31.1	57.8	6.7	4.4	0.0	0.0	0.0	0.0

3)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¹³¹⁾

① 사업체 조직 형태 및 사업장(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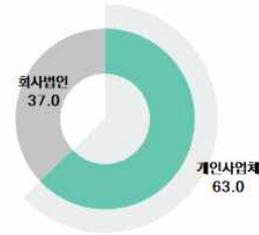
□ 조직 형태

업체의 조직 형태는 개인사업체가 63.0%, 법인이 37.0%로, 개인사업체가 법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특히 종사자수가 20명 이상 업체는 모두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5명 미만은 개인사업체가 78.2%를 차지한다. 5명 이상부터는 법인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표 4-15] 조직형태

(단위 : %)

구분	사선수(명)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전체	(565)	63.0	37.0	
종사자수	5명 미만	78.2	21.8	
	5~9명	(73)	31.5	68.5
	10~19명	(70)	17.1	82.9
	20~49명	(41)	0.0	100.0
	50~99명	(7)	0.0	100.0
	100~299명	(6)	0.0	100.0
	300명 이상	(5)	0.0	100.0



□ 사업장

조사 대상 사업체의 사업장은 80%가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월세 규모는 평균 0.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면적은 평균 98.4㎡, 약 29.7평에 해당한다.



[그림 4-7] 사무실 점유형태 및 면적 (N=(565) / 단위 : %)

131) 실태조사 상세 결과는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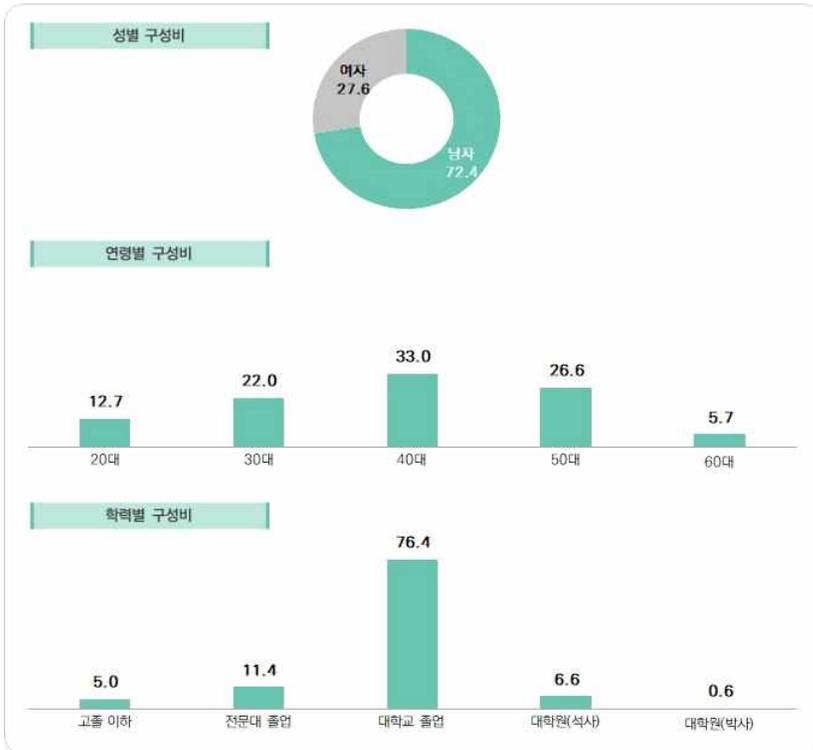
②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구성

건축서비스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7.0명이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6.8명, 비정규직이 0.1명이며, 사업부서 6.3명, 지원부서가 0.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8] 종사자 구성1 (N=(565) / 단위 : 명)



[그림 4-9] 종사자 구성2 (N=(565) / 단위 : %)

성별로는 남성이 72.4%, 여성이 27.6%로, 7:3 의 구성비를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3.0%로 가장 많고, 전체 40대 이상이 65.3%를 차지한다. 학력별 종사자는 76.4%, 즉 대부분이 대졸자이며 전문대 졸업자는 11.4%, 대학원 석사는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 및 퇴직

사업주의 입장에서, 종사자 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자격·학력 지원자 부재’(38.9%)와 ‘임금 등 근로조건 미충족’(36.1%)을 들고 있어 적정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사자의 주요 퇴사 이유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36.4%), ‘일신상의 사유(건강 악화, 학교 진학 등)’ (22.9%), ‘근로조건 불만족’(15.7%)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 직원 채용 시 어려운 점 (N=(565) / 단위 : %, 복수응답)

2018년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은 경력 1년 미만 22백만원, 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45백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경력 구간별 연봉 인상률은 평균 15% 내외이다.



[그림 4-11] 2018년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 (N=(563) / 단위 : 백만원)

④ 매출 및 지출

□ 매출액 및 종사자1인당 매출액

2018년도 기준 전체 업체의 매출액 평균은 7.1억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업체가 35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5인 미만 업체는 2.93억원으로 가장 적다. 반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의 경우 300인 이상 업체가 0.87억원으로 50~99인 업체의 매출 0.84억에 이어 가장 적고 5~9인 이하가 1.24억원, 20~49인 이하가 1.11억원으로 높게 나타나, 업체 규모 및 총 매출액 대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소규모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매출액 평균 1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과 대구가 각각 9.5억, 8.6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경남과 경북이 2.93, 2.97억원으로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 1인당 매출 또한 서울이 1.34억원, 대구 1.16억원으로 높은 편이고 부산은 8.6억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낮으며 세종과 전남이 각각 0.6억원, 0.69억원으로 가장 낮다.



[그림 4-12] 2018년 매출액 (N=(565) / 단위 : %)

[표 4-16] 2018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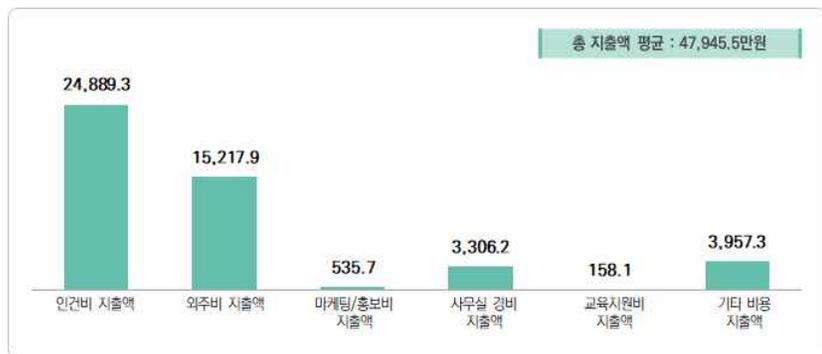
(단위 : %, 천만원)

구분	사례수 (명)	매출액					매출액 평균 (천만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천만원)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전체	(565)	10.3	38.9	20.9	16.1	13.8	71.8	10.8
5명 미만	(363)	14.0	49.3	23.1	10.7	2.8	29.3	10.5
5~9명	(73)	1.4	17.8	19.2	32.9	28.8	89.7	12.4
10~19명	(70)	0.0	2.9	10.0	35.7	51.4	110.9	9.2
20~49명	(41)	0.0	0.0	0.0	0.0	100.0	323.0	11.1
50~99명	(7)	0.0	0.0	0.0	0.0	100.0	495.9	8.4

	100~299명	(6)	0.0	0.0	0.0	0.0	100.0	2387.3	10.6
	300명 이상	(5)	0.0	0.0	0.0	0.0	100.0	3577.4	8.7
	서울	(175)	9.0	32.2	17.5	18.4	22.9	123.6	13.4
	부산	(35)	14.8	25.8	14.8	29.9	14.8	95.0	8.6
	대구	(27)	16.8	43.5	12.6	15.8	11.4	86.5	11.6
	인천	(19)	14.2	44.3	12.0	2.4	27.1	68.8	9.3
	광주	(14)	14.4	45.8	7.2	17.0	15.6	48.1	9.0
	대전	(17)	13.7	47.9	16.4	19.2	2.7	30.9	9.1
	울산	(8)	13.5	40.5	40.5	0.0	5.4	31.7	8.7
	경기	(109)	5.8	39.7	27.1	15.5	11.9	50.8	11.1
지역	강원	(9)	11.1	22.2	22.2	26.3	18.2	51.2	9.5
	충북	(21)	20.4	50.9	10.2	15.3	3.3	63.3	8.8
	충남	(32)	0.0	28.2	43.9	22.4	5.6	39.5	11.4
	전북	(18)	12.0	53.9	14.2	6.0	13.9	54.7	10.2
	전남	(13)	8.5	67.8	8.5	8.5	6.8	31.0	6.9
	경북	(17)	5.8	46.1	34.5	7.9	5.8	29.7	8.7
	경남	(36)	22.3	46.8	12.2	16.0	2.6	29.3	7.2
	제주	(12)	7.8	41.7	36.8	3.1	10.6	34.6	8.9
	세종	(3)	0.0	44.0	44.0	0.0	11.9	35.1	6.2

□ 지출액

전체 업체의 연간 지출액 평균은 4.7억원이며, 항목별로는 인건비와 외주비가 각각 2.4억원, 1.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3] 2018년 지출액 (N=(557) / 단위 : 만원)

③ 사업 분야 및 수주 현황

□ 사업분야

건축서비스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건축 계획·설계'(91.2%), '감리'(67.1%), '도시계획 및 설계'(5.5%) 순이며 대부분 '건축 계획·설계', '감리' 분야를 주력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4] 사업 분야 (N=(565) / 단위 : %, 복수응답)

□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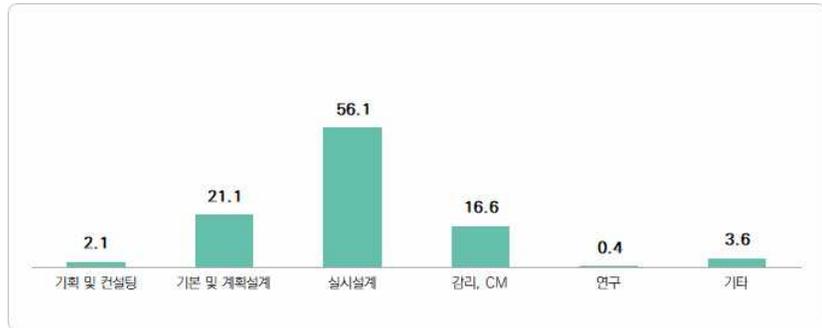
2018년도 연간 수주액은 평균 6.8억원이며, 수주액이 1억~5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59.4%로 가장 많고, 5억~10억원 미만(16.2%), 10억~50억원 미만(12.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5] 2018년 연간 수주액 (N=(565) / 단위 : %)

□ 사업분야 및 업체 규모별 수주액 비중

한편,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은 '실시설계'(56.1%), '기본 및 계획설계'(21.1%), '감리, CM'(16.6%) 순으로 높으며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간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6]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N=(565) / 단위 : %)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체부터 감리, CM 부분의 수주액 비중이 높다. 특히 300명 이상 사업체는 감리와 CM이 전체 서비스 비중에서 8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의 조직적 사업체일수록 관리 기능에 특화된 서비스업 무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7]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획 및 컨설팅	기본 및 계획설계	실시설계	감리, CM	연구	기타
합계	(565)	2.1	21.1	56.1	16.6	0.4	3.6
5명 미만	(363)	1.5	20.4	57.8	17.0	0.4	2.8
5~9명	(73)	3.9	20.8	56.1	13.4	0.3	5.5
10~19명	(70)	2.5	30.4	46.4	13.6	0.9	6.3
20~49명	(41)	1.5	27.0	42.8	18.8	0.4	9.5
50~99명	(7)	4.3	15.7	25.4	54.6	0.0	0.0
100~299명	(6)	2.0	21.2	32.5	38.5	3.7	2.2
300명 이상	(5)	1.0	6.8	9.6	82.0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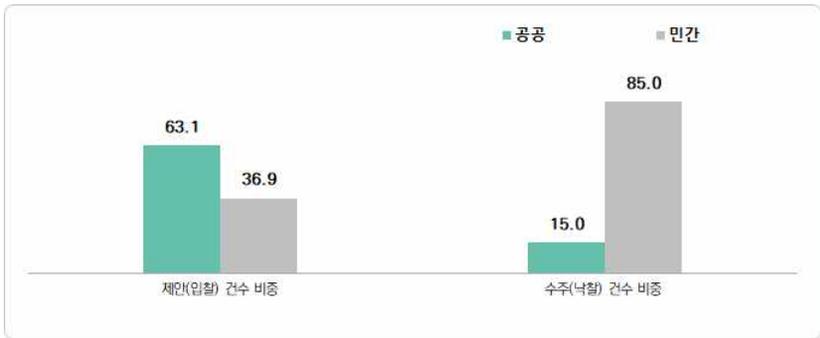
□ 입찰 및 낙찰 건수

2018년 제안(입찰) 프로젝트 총 건수는 14.1건이고 이 중 공공 프로젝트가 63.1%를 차지한다. 제안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낙찰) 건수는 평균 13.3건이며 공공이 15.0%, 민간이 85.0%에 해당한다. 즉 공공프로젝트에 입찰건수는 많지

만 낙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요 발주처 및 평균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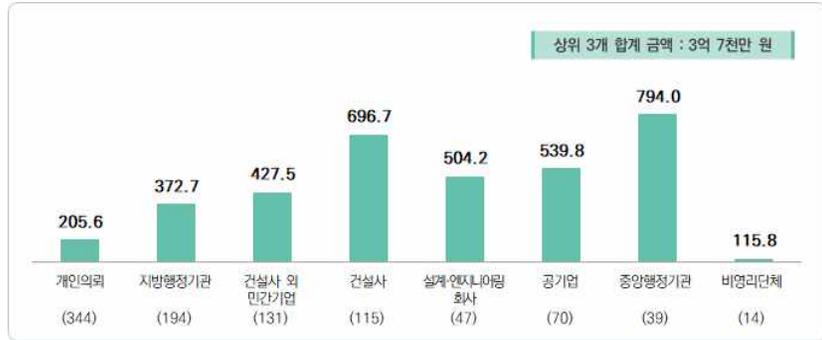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3개 발주처는 ‘개인’(64.8%), ‘지방행정기관’(33.2%), ‘건설사 외 민간기업’(22.2%)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방식별 상위3개의 연간수주액평균은 3.7억원이고 중앙행정기관이 7.94억원, 건설사 6.96억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사업체는 개인 의뢰 비중이 높은 반면 50명 이상 사업체는 지방행정기관, 민간기업, 건설사 등의 비중이 높고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통한 수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2018년 제안(입찰) 및 수주(낙찰) 건수 (N=(565) / 단위 : %)



[그림 4-18]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발주처 (N=(565) / 단위 : %, 복수응답)



[그림 4-19]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 (N=(565) / 단위 : 백만원)

[표 4-18]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1)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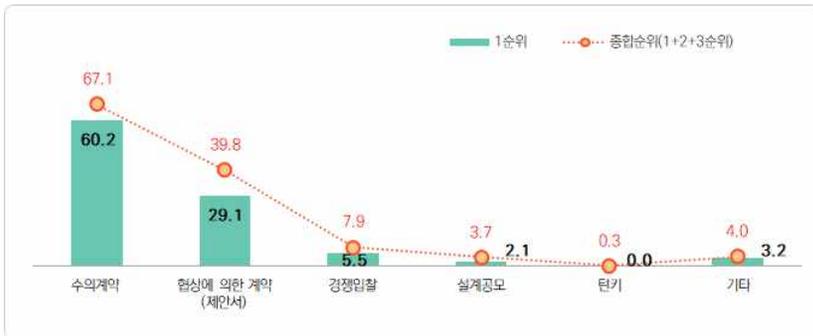
구분	개인의뢰		지방 행정기관		건설사 외 민간기업		건설사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합계	(344)	205.6	(194)	372.7	(131)	427.5	(115)	696.7	
종사 자수	5명 미만	(262)	158.6	(111)	163.6	(70)	145.9	(54)	201.2
	5~9명	(37)	314.0	(29)	364.1	(21)	400.2	(18)	947.1
	10~19명	(33)	379.8	(20)	648.7	(18)	662.0	(19)	1,154.0
	20~49명	(11)	1,227.3	(23)	1,744.3	(14)	2,172.3	(13)	1,378.4
	50~99명	(1)	4,060.0	(4)	2,455.0	(4)	2,562.3	(5)	2,949.8
	100~299명	-	-	(3)	1,400.3	(3)	7,851.7	(4)	8,347.5
	300명 이상	-	-	(4)	8,203.5	(1)	7,000.0	(2)	2,953.0
	구분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중앙 행정기관		비영리 단체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합계	(47)	504.2	(70)	539.8	(39)	794.0	(14)	115.8	
종사 자수	5명 미만	(21)	137.4	(31)	119.8	(18)	121.2	(9)	79.8
	5~9명	(7)	714.0	(6)	546.7	(6)	620.0	(1)	50.0
	10~19명	(12)	629.2	(16)	375.0	(6)	272.8	(2)	550.0
	20~49명	(5)	1,054.6	(8)	2,371.4	(5)	840.0	(2)	230.0
	50~99명	-	-	(3)	662.7	(1)	3,000.0	-	-
	100~299명	(2)	7,512.5	(4)	4,303.5	-	-	-	-
	300명 이상	-	-	(2)	10,675.0	(3)	18,333.3	-	-

□ 계약방식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3개 공공 프로젝트의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59.2%), ‘수의계약’(47.7%), ‘설계공모’(12.2%) 순으로 높은 반면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수의계약 (67.1%),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39.8%), ‘경쟁입찰’(7.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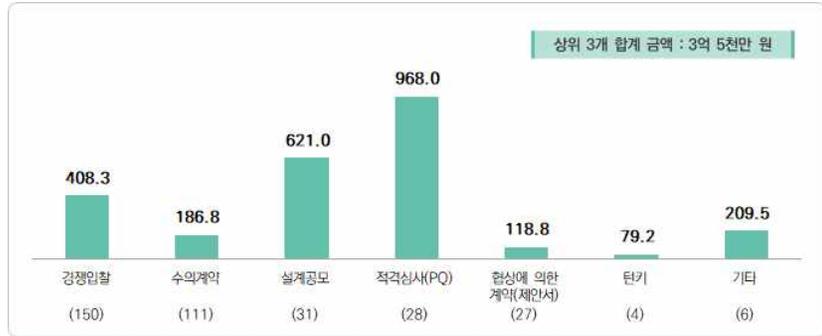


[그림 4-20] 2018년 공공 프로젝트 합산 수주액 상위 계약 성격(N=(244) / 단위 : %, 복수응답)



[그림 4-21] 2018년 민간 프로젝트 합산 수주액 상위 계약 성격 (N=(475) / 단위 : %, 복수응답)

공공 프로젝트 중 연간 수주액이 가장 높은 계약은 ‘적격심사(PQ)’로 합산금액 평균 9.6억원이며 ‘설계공모’는 6.2억원, ‘경쟁입찰’은 4.8억원이다.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연간 수주액은 ‘설계공모’(8억2천만원), ‘경쟁입찰’(6억8천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3억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공공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 (단위 : 백만원)



[그림 4-23] 민간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 (단위 : 백만원)

□ 대가 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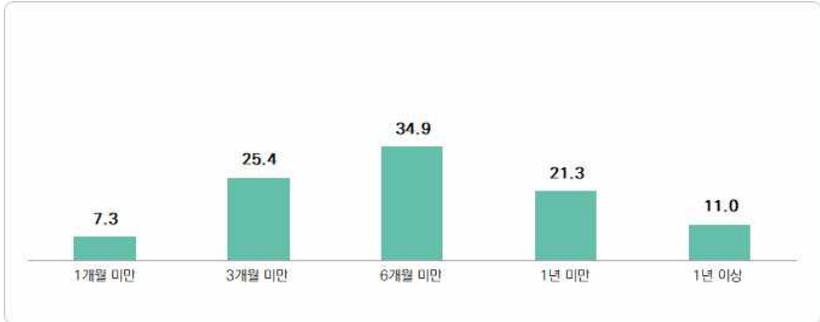
민간 프로젝트 업무 대가 방식은 대부분 '면적당 단가' (88.3%), 그 외 '공사비 요율' (8.7%), '실비정액' (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곱미터 당 평균 2.7만원, 공사비 요율 29.7%, 실비정액 0.4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2018년 수행 민간 프로젝트 업무 대가 방식 (단위 : %, 원, 복수응답)

□ 대가 지급 완료 기간

민간 프로젝트 완료 후 수금까지 평균 '6개월 미만'(34.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개월 이내 수금도 32.7%로, 전체의 67.6%는 6개월 이내 수금이 완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민간 프로젝트 완료 후 수금까지 걸린 기간 (N=(475) / 단위 : %)

□ 미지급 대가 금액

고객 요청에 따른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매출 비용 평균액이 0.34억원이며, 0.1~0.2억원 미만이 26.8%, 이를 포함하는 0.2억원 미만이 47.7%로 나타났다. 즉 둘 중 한 건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지급 금액이 0.5억원 이상인 경우도 24.9%로 4건 중 1건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4-26] 계약 미성사로 지급받지 못한 업무대가(비용) (N=(309) / 단위 : %)

□ 향후 진출 분야

건축 분야 외에 향후 진출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건축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진출계획이 있다는 타 분야로는 '부동산'(8.8%)이 가장 많고 이어 '시공'(7.5%), '산업디자인'(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업무 분야(타 분야)(N=(단위 : %, 복수응답))

④ 해외 업체와의 협업, 해외사업

□ 국내 사업 중 해외 업체와 협업 현황

국내 사업을 해외 업체와 협업한 업체는 1.4%(12곳)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건수는 평균 2.4건으로 조사되었다. 협업분야는 '기본·계획설계'(79.5%), '실시설계'(37.9%), '기획/컨설팅'(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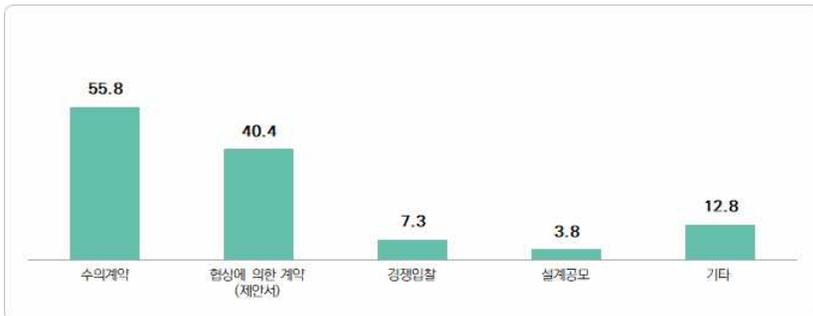
[그림 4-28] 국내 프로젝트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 (단위 : %)

□ 해외 사업 추진 현황

한편 해외 사업 중 해외 업체와 협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43.1%이며, 해당 국가 업체와 협업한 사례는 56.9%이다. 협업한 프로젝트 개수는 평균 2.7건이다. 협업 분야는 '기본·계획설계'(77.6%), '실시설계'(31.1%), '기획·컨설팅'(15.7%) 순이다. 해외 사업 주요 발주 방식은 '수의계약'(55.8%),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40.4%), '경쟁입찰'(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2018년 해외사업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 (단위 : %)



[그림 4-30] 2018년 해외사업 주요 발주 방식 (N=(12) / 단위 : %, 복수응답)

□ 해외 사업 참여 의사 및 애로점

향후 해외 사업에 참여 의향에 대한 물음에는 사업체 1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진출 희망 지역은 '아시아'(88.1%), '유럽'(24.3%), '중동'(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사업 추진 시 '발주 관련 정보 수집'(26.5%), '의사소통'(22.6%)을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실무정보(법률 등)'와 '리스크 관리',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1] 향후 해외사업 참여 의향 (N=() / 단위 : %, 복수응답)



[그림 4-32] 해외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N=(71) / 단위 : %, 복수응답)

⑤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 3D 기반의 건축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건축서비스 업체 중 3D기반의 건축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는 12.2%로, 이 중 BIM 이 9.5%, GIS 가 3.5%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중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수는 평균 2명이며, 주로 활용 업무는 '기본·계획설계'(70.5%), '실시설계'(58.0%), '기획·건설탕'(1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D기반의 건축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활용하지 않은 업체는 7.5%인데, 가용 인력 부재 또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활용도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33]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 인원 (N=(565) / 단위 : %, 복수응답)



[그림 4-34] BIM, GIS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N=(77) / 단위 : %, 복수응답)

□ 기타 건축 장비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로 '출력장비'(98.5%), '3D프린터'(4.4%), '레이저 커팅기'(1.9%), 'AR/VR 기기 및 주변기기'(1.8%)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수량은 '출력장비' 평균 1.7대, '3D프린터' 1.3대, '레이저 커팅기' 1.0대, 'AR/VR 기기 및 주변기기' 1.3대로 조사되었다.



[그림 4-35]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보유 여부 및 보유 대수 (N=(564) / 단위 : 대)

⑥ 교육 및 홍보

□ 직원교육 현황

2018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37.5%이고 외부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24.6%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은 ‘안전교육/위험관리’(21.9%), ‘디자인/설계’(13.6%), ‘법/제도/사업절차’(13.0%) 등이 주를 이루며 기타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일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36] 2018년 진행된 직원교육 (N= 565) /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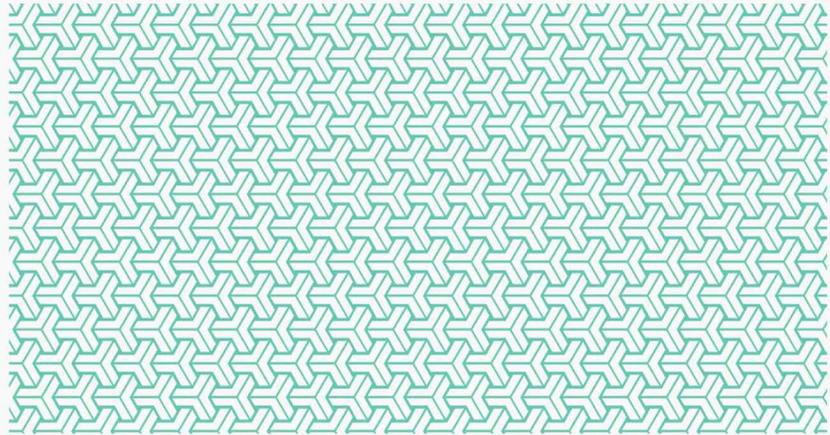
□ 직원교육 우선순위

직원교육의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유사하게 ‘안전교육/위험관리’(14.9%), ‘디자인/설계’ (12.9%), ‘법/제도/사업절차’(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마케팅이나 프로젝트 관리보다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관련 교육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각종 인증 제도의 대응 필요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37]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N= 565) / 단위 : %, 복수응답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2.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래 건축 산업을 전망하면서, 증장기 발전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자료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건축 산업과 연계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전략 마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현행 법제도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현황과 문제점, 타 산업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등을 살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통계생산의 발판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추진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현황과 한계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의 범위설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의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기획, 설계, 시공, 사용 과정에 수행하는 모든 지식 산업활동이다.

그러나 건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건축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는 단순히 조성과정에 관계되는 산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부동산, 관광, 등 조성 이후 사용과정에서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결국 건축물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까지 포괄하기에 현행 법제도의 산업정의는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가 생산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는 건축 산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종합계획 없이 각 부처별 소관 법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부분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해당 통계는 국가통계의 플랫폼인 통계청에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산업정보의 입체적, 종합적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건축 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과제가 설정되었고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 개편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국가통계 승인 추진 전략은 증장기 통계구축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건축서비스산업통계는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의해 구축된다. 이들 기관은 이용자(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업체, 건축사, 대한건

설협회: 시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산업에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주요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수주 및 매출 현황과 기업정보, 기타 시장 동향을 통계화 하여 상세히 제공하는 반면 건축사협회의 경우 건축자재의 DB구축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작성 및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산업의 최종 결과물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다. 따라서 건축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과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시장의 실질적인 관리 대상인 건축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건축동향(인허가 및 착공)은 어떠한지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세움터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다. 세움터에는 건축물에 관한 대부분의 기본 정보들이 DB화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의 내용만 결정되면 다양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지역별·용도별·규모별·면적별·노후도 등 항목별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용도의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한 29개 건축물 주용도가 아닌 5개 용도¹³²⁾로 압축한 정보에 그치고 있다.

□ 국내 유관 산업 통계 운영 현황과 시사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은 각각의 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 외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사업내역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모집단 분석 및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디자인DB 운영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과 사업체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보호(디자인 공지증명,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종합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업체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적산기준처럼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협회가 시행하는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경우, 관련 모집단의 정보(사업체 정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가 접속해 직접 조사 내용을 입력

132) 현 세움터 건축물 통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는 조사 실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승인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통계가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여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등이 반영된다. 여기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승인통계인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통계결과가 시장의 노임단가와 대가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를 활용한 정보 입수와 통계 생산으로 산업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정확성에 근거한 정책적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다.

□ 일본 사례 시사점

일본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산업분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건축, 건설 분야를 주관하는 국토교통성에서는 아직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화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명확한 분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도 법적인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적 정의와는 명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통계조사 시행에 있어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통계결과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다. 통계조사와 DB구축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관련 연구에만 활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개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만한 DB, 통계의 생산과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

한편, 일본은 건축 및 건설 관련 통계가 국토교통성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법이나 평가제도 등을 통해 신고의 의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 이외에도 소관부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응답률뿐 아니라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이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산 계획의 수립 및 집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국토교통성 통계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면서 관련 통계 및 정책정보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전략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실태조사의 항목은 크게 국내 외시장현황, 수주 및 매출 현황, 종사자 현황, 연구개발 현황, 인력 양성교육현황이다. 본 항목을 토대로 증장기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연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필요한 통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 항목 중 현재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통계를 구분하여 항목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필요 통계는, 민간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현황과 업체 현황, 매출현황 정보가 필요하고 분야별 종사자들의 취업 및 근속 현황, 연구개발 관련 대가기준 및 표준화, 인력양성 및 교육 관련 퇴직 후 진로, 졸업생에 대한 정보 등이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의 두 번째 전략은 산업범위 확장과 정보의 생산이다.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매개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는 기존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축환경과 공간수요 변화 양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 변화 전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건축환경의 변화 특징으로는 IT기술의 도입,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 공간기반의 콘텐츠, 표준화 및 경제적인 모델상품 개발, 건설 솔루션 제공, 부동산, 도시관리로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물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의 일부 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통계구축의 세 번째 전략은 다양한 국가 행정통계 및 DB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직접적인 국가승인 통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에는 산업전반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 중 건축서비스산업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면, 신뢰도 높은 산업 실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등 다양한 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 건축서비스산업 내·외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DB시스템의 경우 건축물 행정정보를 수집하는 세움터는 약 720만동의 건축물 정보가 등록 되어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건축서비스산업에 요구되는 통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영역 확장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건축물 정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산업기반으로서 통계는 누구나 안심하고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에 요구되는 방법·내용의 수준을 향상하고 신뢰도를 갖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승인 통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국가승인 통계지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추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기초자료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해 시행되었던 2014년, 2017년 시범조사와 연구결과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통계로서 승인받지 못한 시범조사의 경우 공표가 불가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지 구성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분

야 및 수주·생산성, 해외사업,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교육 및 홍보, 종사자현황, 사업체일반현황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M72111)' 를 규모나 지역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설정하였는데 총 565개소 업체가 참여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업체들이 활동하는 사업 분야의 경우 건축계획 및 설계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감리도 6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¹³³⁾. 또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건축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고 반대로 규모가 커질수록 감리나 도시계획 및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업체일수록 업역 확대 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은 업체 당 1억-5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별로는 민간수주와 공공수주의 차이가 크지 않고(약4%), 발주방식의 경우 공공은 설계 공모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은 턴키와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진출은 일부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로 발주정보 수집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3D기반의 건축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는 12.2%로, 이 중 BIM 이 9.5%, GIS 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종사자는 각각 평균 3.9명, 2.5명으로 비중이 낮다. 건축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2.8배 가량 많고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직원의 근속 연수 조사에서는 남자가 5~10년이고, 여자는 1년~3년 미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가 길다.

본 조사 과정과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의 국가 승인추진과정에서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항목별로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따져 특정 항목은 제외하거나 조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 제한적으로 설정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M72111)' 이외 부문에 대한 조사 항목 설계에 참조가 될 수 있다.

133) 중복응답에 따른 결과임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으로 통계구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국내외 DB와 통계 사례, 환경변화 양상과 국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견지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2014년과 2017년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주제로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선제적 역할과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17년 실태조사 이후 정권 교체 등 각종 사회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 조사가 시행되어 건축시장 정책수립 및 연구추진, 투자 결정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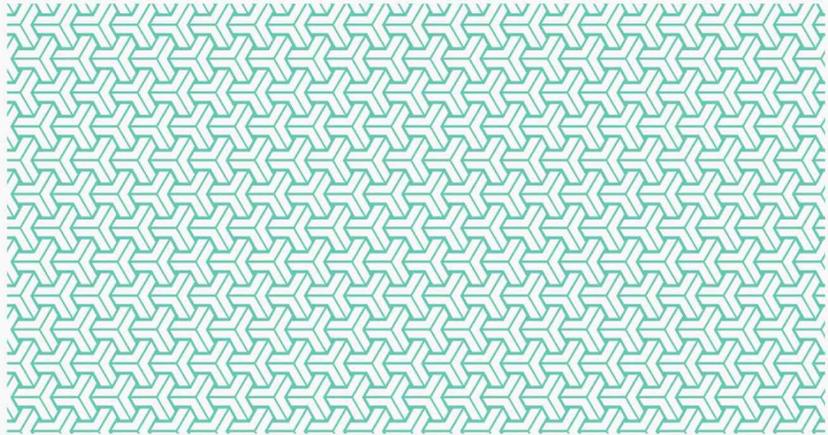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 연관 산업 범주를 재설정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성이 큰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부동산의 형태와 거래 방법 등 구체적인 산업적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DB와 통계를 찾아 분석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주체를 설정해야 한다. 엔지니어링협회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상위 정부기관의 협력, 일본 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성의 역할처럼 통계 작성 역할자의 책임이 분명할 때 보다 유용한 통계가 효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체계의 작동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정책차원의 종합적인 통계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의 정비이다. 법제도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여건과 실태조사의 어려움을 재고할 때 통계작성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필두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국가승인 절차가 이행된다면 그 위상을 법제도로 명확히 언급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2019), '건설업경영분석' 통계정보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서수정 외(2017),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송현민 외(2019),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요약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여경 외(2018),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진홍 외(2019),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44호, 건축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계청(2019),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2018), '『건설업조사』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한국산업디자인협회(2018), 2018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총괄보고서
한국은행(2017), 산업연관표_통계정보보고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건축종합정보센터, <http://kirahub.kira.or.kr>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구글 코리아: <http://google.c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
농협경제연구소 <http://www.nheri.re.kr>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http://www.kacg.kr>
디자인DB: <http://www.designdb.com>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세움터: <https://www.eais.go.kr>
소방청: <https://www.nfa.go.kr>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etis.or.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일본건축사연합회: <http://www.kenchikushikai.or.jp/>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
총무성: <https://www.soumu.go.jp/>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kidp.or.kr/>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상세 웹페이지]

국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2&leftMenuId=0010001100101&bbsId=>

국용노동부 <http://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

국가통계포털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15&confmNo=115029&kosisYn=Y>

국가통계포털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국가통계포털 <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cate/partStts.do?stts=0120000>

국토교통성(일본)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jutaku_list.html

국토교통성(일본)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koji_list.html

국토교통성(일본)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gyo_list.html

경찰청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48>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ya87a/221555311878>

대한건축사협회 <http://kirahub.kira.or.kr/infomation/company.do>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acg.kr/?pageId=shrm_1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90&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tatistic_management&datald=36211&pageIndex=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3880/>,

문화샘터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l>

문화샘터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dex/country.htm>

소방청 <http://www.nfa.go.kr/nfa/releaseinformation/statisticalinformation/main/?jsessionid=oxauoeY32d47AByZcySpGTNJ.nfa21>

소방청 <http://www.nfa.go.kr/nfa/releaseinformation/statisticalinformation/main/?jsessionid=oxauoeY32d47AByZcySpGTNJ.nfa21>

세움터 <https://www.etis.or.kr/webs/inform/law.jsp?leftParam=2&topParam=2&boardId=TOTALBBS>

세움터 https://www.etis.or.kr/2014/jsp/oversea/oversea_main.jsp?leftParam=0&topParam=6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o/stt/io_stt_f001.do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https://aba-svc.jp/senkou-search/index.html>

조달청 <http://www.pps.go.kr/kor/jsp/offerData/statistics/statistics03.pps#>

통계청 <http://kosis.kr/serviceInfo/kosisIntroduce.do>

통계청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

MT_ZTITLE&parmTabId=M_01_01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kidp.or.kr/?menuno=891>

한국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etis.or.kr/webs/sitemap.jsp?leftParam=5&topParam=5>

행안부 <https://www.mois.go.kr/frt/sub/a07/ministryInfo/screen.do>

행안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

BBSMSTR_000000000014

[기타]

고용노동부 (20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은희 외(2017), 건축서비스산업 현주소와 발전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종일, [만화산업 고속성장 빔장 풀자], 시사저널

산업통상자원부(2015),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7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2~2017)"

인재채용국(2018), '201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위한 정부부처 소개'

국토교통부(2018),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

통계청 (2014), 건설업조사, 통계청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명부(M7211), 내부문서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통계청

통계청 (2015),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통계청 (2017), "2016 고령자 통계", 9월 26일자 보도자료

통계청 (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6월 20일자 보도자료

통계청 (2018), '건설업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19), 통계청 공고 제2019-18호, 2019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 계획 공고

한국은행 (2017), '산업연관표'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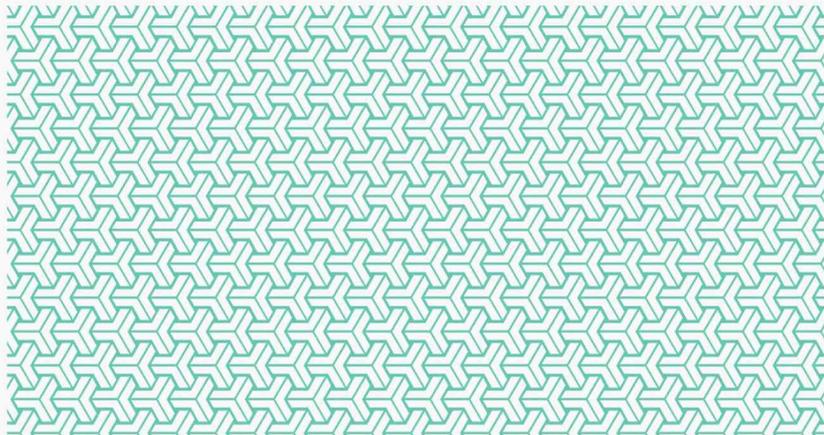
総務省(2014), 「国際標準産業分類(ISIC)第4次改定版」日本標準産業分類一般原理, 일본 : 総務省

総務省, 日本標準産業分類(平成25年10月改定, 平成26年4月1日施行), 일본 : 総務省

総務省(2018), 日本の未来をつくる「統計」.pdf, 일본 : 総務省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Summary



Kim, Eunhee
Ryu, Je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trategy to develop statistics on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linked to the architectural industry and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statistic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other sectors and overseas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tems of the survey prescribed in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status, order and sales status, worker status,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us,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status. Based on this item, the statistic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tasks were connected to derive the statistic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And the items were set by dividing the statistics produced in the current country and the statistics not yet made. The necessary statistics according to this process are the status of the small-scale building market, the state of the company, the condition of sales, the status of employment and service of employees in each field, the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 & D related price standards, training of the workforce, and information about graduates.

The second strategy of building statistics in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is to expand the scope of the sector and produce informatio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the range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an be extended beyond the existing 'speci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It is in line with the above mentioned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spatial demand, and it is not related to the future change prospec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in the future.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IT technology, the integration with new services, space-based contents, standardization, and economic model product development, construction solution, real estate, and urban management. Some industries of the current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assistance, lodging and restaurant, arts and sports and leisure service, and real estate can be reclassified as industries with high linkage with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The third strategy of statistical construction is to utilize various national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DB systems, and there is no direct federal approval statistics on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But now the government produces a variety of statistics, and the data contains a vast amount of industry-wide content. Therefore, when the data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is extracted and processed,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industry with high reliability. Based on this, when various phenomena such as actual condition surveys are conducted, the foundation can be established to understand and underst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Finally, by designating the statistics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as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should be increased and sustainability should be secured. As an industrial base, statistics should b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with confid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content and to have sustainable strategies with reliability. Therefore, the current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as defin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should be set as the first target, and the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should be expanded in the mid- to long-term.

The primary data constructed through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are composed of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pilot survey and the results of the 2014 and 2017 pilot surve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were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Institute of Architectural Urban Space, were used as reference data for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However, in the case of pilot surveys that are not approved as national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announce, tight budget,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survey subjects.

Therefore, based on the detailed tasks of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the survey site composition and pilot survey were conducted as preliminary work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survey. The survey items are detailed contents about six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business status, business field and order and productivity,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acility status, education and publicity, worker status, and general business status. The survey subjects were 'M72111)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and

related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and the proportion was allocated according to size or region. A total of 565 companies participated,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business field, where the target companies are active, the architectural plan and design accounted for 89.7%, and the supervision accounted for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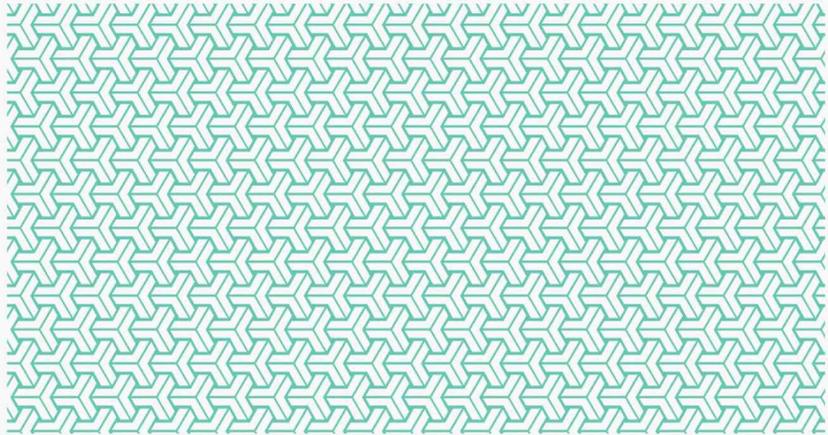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Annual sales were the highest at 100 to 500 million per company. By projec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ecial orders and public orders (about 4%). In the case of ordering method, an open design contest was the most common, and the private sector had a high proportion of turnkey and veterinary contracts. Overseas expansion is rarely done except for some large companies, and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order information is the biggest reason.

12.2% of the companies have 3D-based construction software, of which BIM is 9.5%, and GIS is 3.5%.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ho can use these programs is 3.9 and 2.5, respectively. In the case of employees engaged in architectural services, men are 2.8 times more likely than women and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40s. In the employee's tenure survey, men are 5 to 10 years old, and women are less than one year to three years, about three times longer than women.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s in the process of federal approval of statistics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The research process can be excluded by item, or the research method can be changed. Also, considering the category of the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it can be referred to as the design of the survey items for the other sectors except for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related service industry (M72111),' which is limited to this survey.

부록

Appendix 1



1. 2019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1. 2019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1) 조사지

A. 귀사의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귀사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건축 계획·설계 ② 감리 ③ 도시계획 및 설계
 ④ 조경계획 및 설계 ⑤ 건축지반조사 ⑥ 건축구조
 ⑦ 건축설비 ⑧ 인테리어 ⑨ 유지·관리
 ⑩ 건설사업관리(CM) ⑪ 기타(_____)

A2. 귀사의 2018년 연간 수주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 연간 수주액과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로 인정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연간 수주액	□	□	□	□	억	□	천만원
--------------	---	---	---	---	---	---	-----

A3. 2018년 연간 수주액을 기준으로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기획·컨설팅 :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 하는 설계업무
- ▶ 기본·계획설계 :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
- ▶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 ▶ 감리, CM :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감리 등 수행
- ▶ 연구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학술연구, 연구보고서 작성 등 수행

총 수주액 중 서비스별 구성비(%)						
기획 및 컨설팅	기본 및 계획설계	실시설계	감리, CM	연구	기타(-----)	합계
-----%	-----%	-----%	-----%	-----%	-----%	=100%

A4. 귀사에서 2018년 제안(입찰)한 프로젝트 수와 수주(낙찰)한 프로젝트 수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항목	제안(입찰) 건수	수주(낙찰) 건수	합계
1) 공공 프로젝트	()건	()건	(자동산출)건
2) 민간 프로젝트	()건	()건	(자동산출)건
합계	(자동산출)건	(자동산출)건	(자동산출)건

A5. 귀사의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3개 발주처 유형은 어디입니까? 수주 금액이 큰 순서대로 발주처 유형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행정기관 ③ 공기업
 ④ 건설사 ⑤ 건설사 외 민간기업 ⑥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⑦ 비영리단체 ⑧ 개인의뢰

A5-1.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3개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순위	수주 1위(A5_1)	수주 3위(A5_2)	수주 3위(A5_3)
2018년 수주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A11. 향후 귀사가 진출하고자 계획 중이거나 관심 있는 사업 분야는 어디입니까?
 건축분야와 타 분야별로 각각 관심있는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분야	세부 분야		
A11-1. 건축분야	① 건축 계획·설계 ④ 조경계획 및 설계 ⑦ 건축설비 ⑩ 건설사업관리(CM)	② 감리 ⑤ 건축지반조사 ⑧ 인테리어 ⑪ 기타()	③ 도시계획 및 설계 ⑥ 건축구조 ⑨ 유지·관리 ⑫ 없음
A11-2. 타 분야	① 부동산 ④ 산업디자인 ⑦ 기타()	② 제조업 ⑤ 소프트웨어 ⑧ 없음	③ 시공 ⑥ 관광

B. 귀사의 해외 업체와의 협업, 해외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2018년, 귀사가 수행한 국내 프로젝트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는 모두 몇 건입니까?
 ▶----- 건

B1-1. (B1. 1건 이상인 경우) 해외업체와 협업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기획·건설팅 ② 기본·계획설계 ③ 실시설계
- ④ 감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⑤ 연구
- ⑥ 기타()

B2. 2018년 한 해 동안 귀사에서 수행한 해외사업(프로젝트)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B2-1로 ② 없다 → B3으로

B2-1. 그렇다면, 2018년 귀사의 해외사업의 계약건수와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1\$=1,200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자동 표시)

해외사업 계약건수	해외사업 연간 매출액
()건	()\$ 또는 ()원

B2-2. 2018년 귀사에서 진행한 해외사업 주요 발주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설계공모 ② 턴키 ③ 적격심사(PQ) ④ 수의계약
- ⑤ 경쟁입찰 ⑥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⑦ 기타()

B2-3. 2018년, 귀사가 수행한 해외 프로젝트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는 모두 몇 건입니까?

▶----- 건

B2-4. (B2-3. 1건 이상인 경우) 해외업체와 협업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기획·건설팅 ② 기본·계획설계 ③ 실시설계
- ④ 감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⑤ 연구
- ⑥ 기타()

B3. 귀 사는 앞으로 해외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B3-1로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 C1로

B3-1. 해외사업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진출하고 싶으십니까? 진출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2곳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① 아시아(중동 제외) ② 유럽 ③ 중동
 ④ 호주, 뉴질랜드 ⑤ 북미 ⑥ 중남미
 ⑦ 아프리카 ⑧ 기타()

B3-2. 해외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① 발주 관련 정보 수집 ② 실무정보(법률 등) ③ 인허가 처리
 ④ 채용 ⑤ 리스크 관리 ⑥ 의사소통
 ⑦ 기타()

C. 귀사의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귀 사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건축용 BIM 소프트웨어 : Revit, AECOSim, ARCHICAD, Tekla, Allplan 등)

C1-1. (C1. 보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대략 몇 명입니까?

C1. 보유 소프트웨어	(C1. 선택한 소프트웨어만) C1-1. 활용가능 인원
① BIM	----명
② GIS	----명

→ C1에서 둘 다 없는 경우 C2로

C1-2. (C1.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귀사에서 BIM 또는 GIS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기획 - 컨설팅 ② 기본 - 계획설계 ③ 실시설계
 ④ 감리, CM(Construction Management) ⑤ 연구
 ⑥ 기타() ⑦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다

C2. 귀사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장비를 각각 몇 대 보유(구매 및 임대)하고 있습니까?

장비	보유 대수(구매 및 임대)
1) 출력장비	()대
2) 3D 프린터	()대
3) 레이저 커팅기	()대
4) AR/VR 기기 및 주변기기	()대
5) 그 밖에 고가의 장비()	()대

D. 귀사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2018년 귀사에서 실시한 직원 사내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사내교육은 회사 자체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진행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D1-2. 2018년 귀사에서 실시한 직원 외부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외부교육은 대학원 지원, 외부 세미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육	교육 내용	
D1_1. 사내 교육 (자체교육, 인터넷 강의)	① 안전교육/위험관리 ③ 디자인/설계 ⑤ 프로그램/컴퓨터/BIM ⑦ 여학 ⑨ 없음	② 법/제도/사업절차 ④ 지속가능성/친환경 ⑥ 마케팅/프로젝트 관리 ⑧ 기타(_____)
D1_2. 외부 교육 (대학원 지원, 외부 세미나, 강사초빙)	① 안전교육/위험관리 ③ 디자인/설계 ⑤ 프로그램/컴퓨터/BIM ⑦ 여학 ⑨ 없음	② 법/제도/사업절차 ④ 지속가능성/친환경 ⑥ 마케팅/프로젝트 관리 ⑧ 기타(_____)

D2. 귀사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 | | |
|-------------|----------------|---------------|
| ① 안전교육/위험관리 | ② 법/제도/사업절차 | ③ 디자인/설계 |
| ④ 지속가능성/친환경 | ⑤ 프로그램/컴퓨터/BIM | ⑥ 마케팅/프로젝트 관리 |
| ⑦ 여학 | ⑧ 기타(_____) | ⑨ 없음 |

D3.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홍보가 있다면 진행했던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TV, 신문 등 광고 | ② 포털사이트 광고 | ③ 사업체 홈페이지 운영 |
| ④ SNS 활용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⑤ 유튜브 등 콘텐츠제작 | |
| ⑥ 홍보책자 발간 | ⑦ 관련 잡지에 기고·인터뷰·작품 소개 | |
| ⑧ 대면 홍보 | ⑨ 기타(_____) | ⑩ 별도로 홍보하지 않음 |

E. 귀사의 종사자 관련 질문입니다.

E1. 2018년 기준, 귀 사의 총 직원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E1-1. 그렇다면, 종사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 인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수를 의미합니다.
- ▶ 사업부서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 ▶ 특정 직원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더 많은 업무를 하는 부서의 인원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 ▶ 만약 해당인원이 없으면 '0명'으로 적어 주십시오.

고용유형별 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명	()명	(자동산출)명
국적별 구성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명	()명	(자동산출)명
부서별 구성	사업부서	지원부서(행정, 재무, 경영 등)	합계
인원수	()명	()명	(자동산출)명

E2. 2018년 귀 사의 총 직원수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종사자 구성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남자			여자		합계
	-----%			-----%		
구성비	-----%			-----%		=100%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구성비	-----%	-----%	-----%	-----%	-----%	=100%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학교 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합계
구성비	-----%	-----%	-----%	-----%	-----%	=100%

E3. 2018년 12월 기준 귀 사의 직원 근속년수별 남녀 인원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근속년수	남자	여자	합계
1) 근속년수 1년 미만	()명	()명	(자동산출)명
2) 근속년수 1년 이상~3년 미만	()명	()명	(자동산출)명
3) 근속년수 3년 이상~5년 미만	()명	()명	(자동산출)명
4) 근속년수 5년 이상~10년 미만	()명	()명	(자동산출)명
5) 근속년수 10년 이상~20년 미만	()명	()명	(자동산출)명
6) 근속년수 20년 이상	()명	()명	(자동산출)명
합계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E4. 2018년 12월 기준 귀 사의 사업부서 내 대학전공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전공별 직원수	건축설계 · 공학	도시계획 · 설계	조경	실내 디자인	토목	기계· 전기	기타 ()	합계
남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동산출)명
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동산출)명
합계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E5. 귀 사의 직원 중 다음의 자격 보유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 여러 자격을 함께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는 자격에 모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	자격 보유 인원	합계
1) 건축사	()명	(자동산출)명
2) 해외 건축사	()명	(자동산출)명
3) 기술사	()명	(자동산출)명
4) 기사	()명	(자동산출)명
5) 친환경, LEED 등 기타 인증제도 관련	()명	(자동산출)명
6) 기타 (자격명, 수)	()명	(자동산출)명
합계	(자동산출)명	(자동산출)명

E6. 귀 사의 2019년 올해와 내년도 직원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9년 12월 기준 예상 직원수	2020년 12월 기준 예상 직원수
()명	()명

E7. 귀사가 직원채용을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① 구인 홍보 부족
- ② 임금 등 근로조건 미충족
- ③ 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자격·학력 지원자 부재
- ④ 교통이용 불편 등 출·퇴근의 어려움
- ⑤ 기타()
- ⑥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없었음

E8. 귀사에 퇴사자가 있었다면, 주요 퇴사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①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
- ② 이직으로 인한 퇴사
- ③ 구조조정 또는 권고사직
- ④ 일신상의 사유(건강악화, 학교 진학 등)
- ⑤ 근로조건(임금수준) 불만족
- ⑥ 새로운 업무,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희망
- ⑦ 회사 또는 타 직원과의 마찰
- ⑧ 기타()
- ⑨ 퇴사자 없었음

2) 조사결과표

[표 1] 사업 분야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건축 계획·설 계	감리	도시계 획 및 설계	유지·관 리	인테 리어	기타	조경 계획 및 설계	건설 사업 관리 (CM)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건축 지반 조사
전 체	(565)	91.2	67.1	5.5	3.8	3.1	3.4	2.9	2.1	1.7	1.1	0.5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93.1	70.8	2.8	4.1	3.6	3.0	2.5	1.1	0.8	0.3
	5~9명	(73)	89.0	57.5	11.0	2.7	1.4	4.1	2.7	4.1	2.7	0.0
	10~19명	(70)	80.0	54.3	11.4	4.3	4.3	5.7	5.7	4.3	5.7	0.0
	20~49명	(41)	78.0	56.1	17.1	2.4	0.0	2.4	4.9	0.0	7.3	4.9
	50~99명	(7)	85.7	85.7	28.6	0.0	14.3	0.0	0.0	14.3	14.3	14.3
	100~299명	(6)	83.3	66.7	33.3	0.0	0.0	16.7	33.3	33.3	0.0	0.0
	300명 이상	(5)	100.0	100.0	40.0	0.0	0.0	0.0	20.0	40.0	0.0	0.0
매출 액 규모	1억원 미만	(52)	92.4	67.5	4.5	3.8	0.0	3.8	2.6	1.9	0.0	0.0
	1억~5억원 미만	(299)	94.4	69.6	3.0	3.6	3.0	2.3	2.3	1.1	1.9	1.0
	5억~10억원 미만	(88)	84.0	58.2	10.2	6.8	7.5	6.8	5.1	4.8	1.5	1.0
	10억~50억원 미만	(105)	84.3	65.1	10.7	1.1	0.6	3.9	2.2	2.3	2.6	2.8
	50억~100억원 미만	(9)	88.5	65.9	11.5	0.0	11.5	0.0	0.0	0.0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3)	84.8	69.7	0.0	0.0	0.0	15.2	0.0	0.0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5)	100.0	100.0	21.4	0.0	0.0	0.0	21.4	39.3	0.0	0.0
300억원 이상	(4)	100.0	100.0	76.2	0.0	0.0	0.0	52.3	52.3	0.0	0.0	
지역	서울	(175)	89.0	55.7	9.2	4.2	6.0	3.9	2.3	2.8	3.6	2.7
	부산	(35)	88.8	65.2	2.0	0.0	0.0	3.7	0.0	6.2	0.0	1.5
	대구	(27)	89.9	70.8	3.4	0.0	0.0	8.4	1.7	4.2	0.0	0.0
	인천	(19)	89.9	53.0	21.4	6.0	0.0	2.4	14.2	0.0	2.4	1.6
	광주	(14)	97.1	77.2	2.9	0.0	7.2	7.2	2.9	0.0	0.0	0.0
	대전	(17)	87.7	78.1	5.5	2.7	6.8	2.7	2.7	12.3	2.7	0.0
	울산	(8)	86.5	73.0	0.0	0.0	0.0	0.0	13.5	0.0	0.0	0.0
	경기	(109)	91.8	68.2	4.6	3.9	2.9	3.1	3.5	0.0	2.3	0.0
	강원	(9)	85.9	63.7	0.0	0.0	0.0	3.0	11.1	0.0	0.0	0.0
	충북	(21)	94.9	79.6	1.3	0.0	0.0	0.0	1.3	0.0	0.0	0.0
	충남	(32)	96.9	84.3	4.3	7.4	7.4	0.0	3.1	0.0	0.0	0.0
	전북	(18)	82.0	80.4	0.0	0.0	0.0	6.0	0.0	6.0	1.6	0.0
	전남	(13)	100.0	83.1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	(17)	100.0	92.1	0.0	5.8	0.0	0.0	0.0	0.0	0.0	0.0
	경남	(36)	96.1	63.4	3.5	12.2	0.0	0.0	0.0	3.8	0.0	0.0
제주	(12)	81.6	63.2	7.8	0.0	0.0	18.4	7.8	0.0	0.0	7.8	
세종	(3)	100.0	44.0	0.0	0.0	0.0	0.0	0.0	0.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94.7	72.9	1.8	4.1	3.2	3.1	2.9	1.2	0.3	0.6
	회사법인	(246)	85.2	57.2	11.8	3.3	3.0	3.9	3.0	3.6	4.0	1.9

* 사례수 30 이하는 해석에 유의해야 함

[표 2] 2018년 연간 수주액

(단위 : %, 천만원)

구 분	사례수 (명)	5천 만원 미만	5천~ 1억원 미만	1억~ 5억원 미만	5억~ 10억원 미만	10억~ 50억원 미만	50억~ 100억 원 미만	100억~ 200억 원 미만	200억~ 300억 원 미만	300억 이상	평균 (천 만원)	
전 체	(565)	1.2	9.0	59.4	16.2	12.6	0.9	0.1	0.4	0.2	68.3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1.7	12.4	72.5	11.6	1.9	0.0	0.0	0.0	25.8	
	5~9명	(73)	0.0	0.0	35.6	30.1	32.9	1.4	0.0	0.0	84.5	
	10~19명	(70)	0.0	2.9	11.4	35.7	48.6	1.4	0.0	0.0	121.6	
	20~49명	(41)	0.0	0.0	0.0	0.0	85.4	14.6	0.0	0.0	330.6	
	50~99명	(7)	0.0	0.0	0.0	0.0	42.9	42.9	0.0	14.3	0.0	761.1
	100~299명	(6)	0.0	0.0	0.0	0.0	0.0	0.0	33.3	50.0	16.7	229.7
	300명 이상	(5)	0.0	0.0	0.0	0.0	0.0	0.0	0.0	60.0	40.0	278.4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1.5	84.0	4.5	0.0	0.0	0.0	0.0	0.0	6.8	
	1억~5억원 미만	(299)	0.0	0.3	96.6	2.0	0.6	0.5	0.0	0.0	26.8	
	5억~10억원 미만	(88)	0.0	1.0	2.9	88.2	7.9	0.0	0.0	0.0	65.8	
	10억~50억원 미만	(105)	0.0	0.0	6.1	4.5	87.3	2.2	0.0	0.0	175.0	
	50억~100억원 미만	(9)	0.0	0.0	0.0	27.9	7.5	53.1	0.0	11.5	0.0	609.0
	100억~200억원 미만	(3)	0.0	0.0	0.0	0.0	69.7	0.0	15.2	15.2	0.0	706.2
	200억~300억원 미만	(5)	0.0	0.0	0.0	0.0	0.0	0.0	21.4	78.6	0.0	225.0
300억원 이상	(4)	0.0	0.0	0.0	0.0	0.0	0.0	0.0	23.8	76.2	299.7	
지역	서울	(175)	1.4	7.9	47.7	20.5	18.7	2.2	0.2	1.0	0.4	108.6
	부산	(35)	0.0	18.5	36.9	19.7	22.3	0.0	1.1	1.5	0.0	115.7
	대구	(27)	4.2	14.2	60.2	9.9	8.7	1.7	0.0	1.0	0.0	72.8
	인천	(19)	0.0	6.0	64.5	2.4	22.1	4.9	0.0	0.0	0.0	81.9
	광주	(14)	0.0	14.4	53.0	17.0	15.6	0.0	0.0	0.0	0.0	50.3
	대전	(17)	6.8	6.8	64.4	19.2	2.7	0.0	0.0	0.0	0.0	31.6
	울산	(8)	0.0	13.5	81.1	0.0	5.4	0.0	0.0	0.0	0.0	31.6
	경기	(109)	0.0	4.8	64.8	16.8	13.6	0.0	0.0	0.0	0.0	49.7
	강원	(9)	11.1	0.0	74.8	11.1	3.0	0.0	0.0	0.0	0.0	34.8
	충북	(21)	0.0	20.4	61.1	17.3	0.0	0.0	0.0	0.0	1.3	62.6
	충남	(32)	0.0	0.0	72.1	22.4	5.6	0.0	0.0	0.0	0.0	38.7
	전북	(18)	6.0	6.0	68.2	6.0	13.9	0.0	0.0	0.0	0.0	54.8
	전남	(13)	0.0	8.5	76.3	8.5	6.8	0.0	0.0	0.0	0.0	33.7
	경북	(17)	0.0	5.8	80.6	7.9	5.8	0.0	0.0	0.0	0.0	30.4
	경남	(36)	0.0	22.3	59.0	16.0	1.9	0.8	0.0	0.0	0.0	31.6
	제주	(12)	0.0	7.8	70.7	10.9	10.6	0.0	0.0	0.0	0.0	37.0
세종	(3)	0.0	0.0	88.1	0.0	11.9	0.0	0.0	0.0	0.0	35.1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1.9	11.9	71.4	11.7	3.1	0.0	0.0	0.0	0.0	26.8
	회사법인	(246)	0.0	4.2	38.9	23.8	28.9	2.5	0.3	1.1	0.4	139.0

[표 3]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기획 및 건설탕	기본 및 계획설계	실시설계	감리, CM	연구	기타	
전 체	(565)	2.1	21.1	56.1	16.6	0.4	3.6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1.5	20.4	57.8	17.0	0.4	2.8
	5~9명	(73)	3.9	20.8	56.1	13.4	0.3	5.5
	10~19명	(70)	2.5	30.4	46.4	13.6	0.9	6.3
	20~49명	(41)	1.5	27.0	42.8	18.8	0.4	9.5
	50~99명	(7)	4.3	15.7	25.4	54.6	0.0	0.0
	100~299명	(6)	2.0	21.2	32.5	38.5	3.7	2.2
	300명 이상	(5)	1.0	6.8	9.6	82.0	0.6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0.3	13.8	64.2	17.5	0.0	4.2
	1억~5억원 미만	(299)	1.7	21.4	56.9	17.3	0.4	2.4
	5억~10억원 미만	(88)	4.9	22.0	54.5	12.7	0.9	5.0
	10억~50억원 미만	(105)	1.8	23.7	49.9	16.3	0.5	7.8
	50억~100억원 미만	(9)	2.3	48.0	41.4	8.2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3)	0.8	16.1	67.1	11.2	2.9	2.0
	200억~300억원 미만	(5)	2.0	15.8	8.9	72.8	0.5	0.0
300억원 이상	(4)	0.6	6.2	33.7	58.6	0.9	0.0	
지역	서울	(175)	4.0	23.0	55.2	13.1	0.7	4.0
	부산	(35)	0.2	20.5	54.8	19.7	0.1	4.7
	대구	(27)	0.4	31.3	44.5	15.0	0.4	8.4
	인천	(19)	2.9	16.5	63.3	15.1	0.0	2.2
	광주	(14)	1.4	25.7	54.1	18.2	0.6	0.0
	대전	(17)	1.4	9.2	67.6	20.2	1.4	0.3
	울산	(8)	0.0	26.3	51.6	22.0	0.0	0.0
	경기	(109)	2.1	17.8	57.8	16.8	0.5	4.8
	강원	(9)	0.0	20.4	64.3	12.3	0.0	3.0
	충북	(21)	0.0	22.7	55.6	21.6	0.0	0.0
	충남	(32)	1.3	24.5	55.3	18.3	0.4	0.2
	전북	(18)	1.3	25.3	39.5	26.8	0.3	6.8
	전남	(13)	0.0	12.5	64.0	21.8	0.0	1.7
	경북	(17)	0.3	23.0	65.7	10.6	0.0	0.3
	경남	(36)	1.5	20.6	59.2	18.7	0.0	0.0
	제주	(12)	1.5	11.8	48.2	20.1	0.0	18.4
세종	(3)	0.0	23.6	67.6	8.8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1.5	20.7	57.0	17.7	0.3	2.8
	회사법인	(246)	2.9	21.9	54.7	14.7	0.7	5.0

[표 4] 2018년 제안(입찰) 및 수주(낙찰) 건수

(단위 : 건)

구 분	사례수 (명)	제안(입찰)			수주(낙찰)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민간	합계	
전 체	(565)	8.9	5.2	14.1	2.0	11.3	13.3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6.9	4.7	11.6	1.4	11.1	12.5
	5~9명	(73)	11.4	3.8	15.2	2.3	11.8	14.1
	10~19명	(70)	8.8	4.3	13.2	2.5	10.8	13.4
	20~49명	(41)	41.3	6.7	48.0	11.0	10.8	21.8
	50~99명	(7)	12.0	33.3	45.3	7.1	8.4	15.6
	100~299명	(6)	26.7	123.5	150.2	11.0	29.2	40.2
	300명 이상	(5)	66.0	48.0	114.0	39.6	4.2	43.8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2.9	1.5	4.4	0.8	6.0	6.8
	1억~5억원 미만	(299)	8.1	4.8	13.0	1.4	11.5	12.9
	5억~10억원 미만	(88)	12.3	4.1	16.4	2.7	11.7	14.4
	10억~50억원 미만	(105)	11.8	7.4	19.2	3.9	12.2	16.1
	50억~100억원 미만	(9)	4.1	8.0	12.1	2.5	6.9	9.4
	100억~200억원 미만	(3)	18.7	104.2	122.9	8.5	78.5	87.0
	200억~300억원 미만	(5)	28.4	41.0	69.4	25.2	4.1	29.3
	300억원 이상	(4)	51.5	18.0	69.4	16.5	6.7	23.1
지역	서울	(175)	5.4	7.5	12.9	1.6	7.4	9.0
	부산	(35)	17.0	1.9	18.9	1.4	6.1	7.5
	대구	(27)	5.4	1.0	6.4	1.9	6.8	8.7
	인천	(19)	10.8	1.0	11.7	2.5	8.1	10.7
	광주	(14)	8.0	3.6	11.6	1.6	8.7	10.3
	대전	(17)	2.9	3.9	6.8	1.0	9.1	10.1
	울산	(8)	8.1	2.7	10.8	1.5	8.4	9.9
	경기	(109)	8.5	2.3	10.7	0.9	14.7	15.6
	강원	(9)	34.0	0.0	34.0	7.8	5.9	13.7
	충북	(21)	7.6	4.2	11.8	2.2	8.2	10.5
	충남	(32)	9.5	8.7	18.2	3.7	18.1	21.8
	전북	(18)	13.7	11.7	25.5	5.0	22.8	27.8
	전남	(13)	4.3	0.4	4.7	1.3	23.8	25.1
	경북	(17)	19.1	6.7	25.8	1.9	13.1	14.9
	경남	(36)	9.7	10.9	20.5	3.3	15.6	18.9
	제주	(12)	11.2	3.3	14.5	1.9	7.8	9.7
	세종	(3)	8.8	0.0	8.8	4.1	8.6	12.7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8.3	4.9	13.3	1.5	11.9	13.4
	회사법인	(246)	9.8	5.7	15.5	2.9	10.1	13.0

[표 5] 2018년 합산 수주액 상위 발주처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개인의뢰	지방 행정기관	건설사 외 민간기업	건설사	설계·엔지 니어링 회사	공기업	중앙 행정기관	비영리 단체	
전 체	(565)	64.8	33.2	22.2	18.4	7.4	10.0	6.1	2.3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72.2	30.6	19.3	14.9	5.8	8.5	5.0	2.5
	5~9명	(73)	50.7	39.7	28.8	24.7	9.6	8.2	8.2	1.4
	10~19명	(70)	47.1	28.6	25.7	27.1	17.1	22.9	8.6	2.9
	20~49명	(41)	26.8	56.1	34.1	31.7	12.2	19.5	12.2	4.9
	50~99명	(7)	14.3	57.1	57.1	71.4	0.0	42.9	14.3	0.0
	100~299명	(6)	0.0	50.0	50.0	66.7	33.3	66.7	0.0	0.0
	300명 이상	(5)	0.0	80.0	20.0	40.0	0.0	40.0	60.0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84.0	11.5	17.9	5.7	0.0	5.7	3.8	3.8
	1억~5억원 미만	(299)	69.4	33.5	20.6	16.0	8.9	7.5	5.5	2.4
	5억~10억원 미만	(88)	60.8	44.5	30.2	19.2	13.8	5.3	6.5	2.2
	10억~50억원 미만	(105)	35.2	34.5	22.0	37.7	14.4	10.4	10.1	.4
	50억~100억원 미만	(9)	46.9	30.5	34.1	30.5	50.5	0.0	0.0	7.5
	100억~200억원 미만	(3)	69.7	15.2	0.0	15.2	30.3	15.2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5)	0.0	78.6	60.7	60.7	57.2	21.4	0.0	0.0
300억원 이상	(4)	0.0	47.7	28.5	52.3	28.5	0.0	71.5	0.0	
지역	서울	(175)	50.5	20.2	25.0	20.6	15.0	17.3	6.7	2.8
	부산	(35)	49.0	30.5	28.0	20.6	6.1	0.0	9.8	1.0
	대구	(27)	87.2	32.6	5.3	11.2	0.0	1.7	9.4	0.0
	인천	(19)	39.9	45.4	29.0	2.5	14.4	12.3	22.7	0.0
	광주	(14)	70.0	37.0	34.3	10.1	7.2	7.2	0.0	0.0
	대전	(17)	80.8	30.1	23.3	27.4	0.0	0.0	2.7	0.0
	울산	(8)	54.0	32.4	40.5	27.0	5.4	0.0	18.9	0.0
	경기	(109)	73.9	27.0	20.5	22.2	4.8	6.5	2.3	1.9
	강원	(9)	48.5	48.5	0.0	11.1	14.1	0.0	0.0	0.0
	충북	(21)	61.1	52.2	15.3	10.2	15.3	2.0	6.4	5.1
	충남	(32)	79.9	56.8	13.7	15.0	12.5	3.1	3.1	4.3
	전북	(18)	84.8	49.8	26.2	38.4	7.6	0.0	6.0	0.0
	전남	(13)	67.8	49.2	8.5	0.0	3.4	0.0	8.5	0.0
	경북	(17)	63.3	48.2	11.5	23.0	13.7	0.0	5.8	11.5
	경남	(36)	79.6	39.2	25.5	6.3	12.3	2.8	2.8	2.8
	제주	(12)	71.0	33.9	37.0	35.0	15.5	0.0	18.4	0.0
세종	(3)	56.0	100.0	88.1	0.0	0.0	0.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74.2	32.5	18.4	14.1	5.4	8.1	4.8	2.3
	회사법인	(246)	48.9	34.3	28.5	25.8	10.7	13.3	8.4	2.3

[표 6]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1)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인의뢰		지방 행정기관		건설사 외 민간기업		건설사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344)	205.6	(194)	372.7	(131)	427.5	(115)	696.7
종사자 수	5명 미만	(262)	158.6	(111)	163.6	(70)	145.9	(54)	201.2
	5~9명	(37)	314.0	(29)	364.1	(21)	400.2	(18)	947.1
	10~19명	(33)	379.8	(20)	648.7	(18)	662.0	(19)	1,154.0
	20~49명	(11)	1,227.3	(23)	1,744.3	(14)	2,172.3	(13)	1,378.4
	50~99명	(1)	4,060.0	(4)	2,455.0	(4)	2,562.3	(5)	2,949.8
	100~299명	-	-	(3)	1,400.3	(3)	7,851.7	(4)	8,347.5
	300명 이상	-	-	(4)	8,203.5	(1)	7,000.0	(2)	2,953.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44)	52.9	(6)	38.3	(9)	97.7	(3)	33.3
	1억~5억원 미만	(208)	157.7	(98)	129.7	(62)	136.3	(46)	316.3
	5억~10억원 미만	(54)	306.8	(35)	357.8	(24)	408.8	(19)	310.6
	10억~50억원 미만	(34)	603.9	(45)	1,054.7	(28)	1,150.6	(38)	1,106.6
	50억~100억원 미만	(3)	1,112.5	(3)	2,635.6	(4)	3,121.8	(3)	5,469.6
	100억~200억원 미만	(1)	1,000.0	(1)	1,346.0	-	-	(1)	390.0
	200억~300억원 미만	-	-	(4)	4,835.8	(3)	6,843.2	(3)	6,144.4
	300억원 이상	-	-	(2)	7,500.0	(1)	10,000.0	(2)	11,164.7
지역	서울	(84)	262.8	(38)	562.0	(50)	727.4	(41)	1,098.6
	부산	(17)	380.0	(15)	776.5	(9)	752.7	(11)	1,453.8
	대구	(22)	120.6	(8)	254.5	(2)	502.2	(4)	1,215.9
	인천	(7)	198.4	(8)	601.4	(6)	541.7	(1)	4,200.0
	광주	(9)	127.8	(5)	525.3	(5)	352.0	(2)	300.3
	대전	(13)	179.2	(5)	149.2	(4)	191.3	(4)	187.5
	울산	(4)	104.0	(3)	266.7	(3)	76.7	(2)	75.0
	경기	(76)	229.5	(33)	324.1	(23)	275.9	(24)	606.0
	강원	(4)	203.3	(4)	392.8	-	-	(1)	100.0
	충북	(12)	125.0	(11)	417.2	(3)	125.0	(2)	100.0
	충남	(25)	233.9	(18)	217.3	(4)	143.3	(5)	207.4
	전북	(14)	82.5	(10)	208.9	(4)	198.0	(7)	183.4
	전남	(8)	134.4	(7)	335.1	(1)	200.0	-	-
	경북	(11)	183.3	(8)	205.4	(2)	55.0	(4)	197.5
	경남	(27)	146.2	(14)	316.8	(8)	82.9	(3)	97.4
	제주	(9)	166.6	(4)	114.0	(5)	185.5	(4)	154.7
세종	(2)	130.0	(3)	168.3	(2)	125.0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238)	162.8	(102)	157.2	(57)	167.9	(46)	242.6
	회사법인	(106)	317.2	(92)	713.2	(74)	718.1	(69)	1,154.5

[표 7]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2)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중앙 행정기관		비영리 단체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47)	504.2	(70)	539.8	(39)	794.0	(14)	115.8
종사자 수	5명 미만	(21)	137.4	(31)	119.8	(18)	121.2	(9)	79.8
	5~9명	(7)	714.0	(6)	546.7	(6)	620.0	(1)	50.0
	10~19명	(12)	629.2	(16)	375.0	(6)	272.8	(2)	550.0
	20~49명	(5)	1,054.6	(8)	2,371.4	(5)	840.0	(2)	230.0
	50~99명	-	-	(3)	662.7	(1)	3,000.0	-	-
	100~299명	(2)	7,512.5	(4)	4,303.5	-	-	-	-
	300명 이상	-	-	(2)	10,675.0	(3)	18,333.3	-	-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3)	5.0	-	-	(2)	15.0	(2)	10.0
	1억~5억원 미만	(22)	137.8	(29)	120.1	(16)	138.5	(8)	95.7
	5억~10억원 미만	(7)	426.7	(12)	215.7	(7)	497.3	(2)	242.1
	10억~50억원 미만	(13)	1,124.6	(19)	719.2	(11)	843.0	(1)	230.0
	50억~100억원 미만	-	-	(4)	2,475.8	-	-	(1)	-
	100억~200억원 미만	(1)	5,025.0	(2)	1,107.0	-	-	-	-
	200억~300억원 미만	(1)	10,000.0	(3)	10,048.7	-	-	-	-
300억원 이상	-	-	(1)	6,000.0	(3)	18,333.3	-	-	
지역	서울	(30)	603.5	(35)	946.8	(14)	656.1	(6)	210.1
	부산	-	-	(2)	517.7	(3)	260.0	(1)	230.0
	대구	(1)	1,260.0	-	-	(3)	2,880.0	-	-
	인천	(3)	1,196.1	(3)	112.6	(4)	772.2	-	-
	광주	(1)	5.0	(1)	150.0	-	-	-	-
	대전	-	-	-	-	(1)	18.0	-	-
	울산	-	-	(1)	300.0	(2)	157.3	-	-
	경기	(9)	267.2	(7)	244.7	(3)	166.7	(2)	70.0
	강원	-	-	(2)	337.3	-	-	-	-
	충북	(1)	800.0	(3)	175.0	(2)	4,400.0	(1)	10.0
	충남	(1)	35.0	(4)	86.7	(1)	-	(1)	50.0
	전북	-	-	(2)	252.2	(1)	100.0	-	-
	전남	-	-	(1)	1,400.0	(1)	150.0	-	-
	경북	-	-	(2)	142.2	(1)	150.0	(2)	65.0
	경남	(1)	50.0	(5)	229.5	(1)	10.0	(1)	-
	제주	-	-	(2)	45.0	(2)	413.3	-	-
세종	-	-	-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8)	112.9	(27)	120.9	(16)	97.9	(7)	54.7
	회사법인	(29)	829.3	(43)	944.2	(23)	1,430.6	(7)	211.4

[표 8] 발주처별 연간 수주액 평균(2)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중앙 행정기관		비영리 단체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47)	504.2	(70)	539.8	(39)	794.0	(14)	115.8
종사자 수	5명 미만	(21)	137.4	(31)	119.8	(18)	121.2	(9)	79.8
	5~9명	(7)	714.0	(6)	546.7	(6)	620.0	(1)	50.0
	10~19명	(12)	629.2	(16)	375.0	(6)	272.8	(2)	550.0
	20~49명	(5)	1,054.6	(8)	2,371.4	(5)	840.0	(2)	230.0
	50~99명	-	-	(3)	662.7	(1)	3,000.0	-	-
	100~299명	(2)	7,512.5	(4)	4,303.5	-	-	-	-
	300명 이상	-	-	(2)	10,675.0	(3)	18,333.3	-	-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3)	5.0	-	-	(2)	15.0	(2)	10.0
	1억~5억원 미만	(22)	137.8	(29)	120.1	(16)	138.5	(8)	95.7
	5억~10억원 미만	(7)	426.7	(12)	215.7	(7)	497.3	(2)	242.1
	10억~50억원 미만	(13)	1,124.6	(19)	719.2	(11)	843.0	(1)	230.0
	50억~100억원 미만	-	-	(4)	2,475.8	-	-	(1)	-
	100억~200억원 미만	(1)	5,025.0	(2)	1,107.0	-	-	-	-
	200억~300억원 미만	(1)	10,000.0	(3)	10,048.7	-	-	-	-
300억원 이상	-	-	(1)	6,000.0	(3)	18,333.3	-	-	
지역	서울	(30)	603.5	(35)	946.8	(14)	656.1	(6)	210.1
	부산	-	-	(2)	517.7	(3)	260.0	(1)	230.0
	대구	(1)	1,260.0	-	-	(3)	2,880.0	-	-
	인천	(3)	1,196.1	(3)	112.6	(4)	772.2	-	-
	광주	(1)	5.0	(1)	150.0	-	-	-	-
	대전	-	-	-	-	(1)	18.0	-	-
	울산	-	-	(1)	300.0	(2)	157.3	-	-
	경기	(9)	267.2	(7)	244.7	(3)	166.7	(2)	70.0
	강원	-	-	(2)	337.3	-	-	-	-
	충북	(1)	800.0	(3)	175.0	(2)	4,400.0	(1)	10.0
	충남	(1)	35.0	(4)	86.7	(1)	-	(1)	50.0
	전북	-	-	(2)	252.2	(1)	100.0	-	-
	전남	-	-	(1)	1,400.0	(1)	150.0	-	-
	경북	-	-	(2)	142.2	(1)	150.0	(2)	65.0
	경남	(1)	50.0	(5)	229.5	(1)	10.0	(1)	-
	제주	-	-	(2)	45.0	(2)	413.3	-	-
	세종	-	-	-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8)	112.9	(27)	120.9	(16)	97.9	(7)	54.7
	회사법인	(29)	829.3	(43)	944.2	(23)	1,430.6	(7)	211.4

[표 9] 공공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1)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설계공모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150)	408.3	(111)	186.8	(27)	118.8	(31)	621.0
중사자 수	5명 미만	(81)	131.0	(66)	100.7	(13)	61.3	(13)	167.9
	5~9명	(18)	427.1	(16)	170.0	(6)	121.7	(6)	538.2
	10~19명	(15)	522.9	(18)	317.5	(5)	238.8	(4)	483.0
	20~49명	(23)	1,794.3	(6)	1,583.3	(3)	633.3	(2)	1,000.0
	50~99명	(5)	1,945.6	(2)	769.5	-	-	-	-
	100~299명	(3)	490.0	(1)	4,525.0	-	-	(4)	1,601.8
	300명 이상	(5)	7,368.8	(2)	2,025.0	-	-	(2)	11,453.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4)	17.5	(2)	50.0	-	-	(1)	80.0
	1억~5억원 미만	(77)	136.4	(57)	77.2	(12)	53.3	(8)	92.9
	5억~10억원 미만	(17)	304.0	(27)	184.5	(8)	167.2	(8)	319.9
	10억~50억원 미만	(40)	994.9	(20)	457.3	(7)	250.3	(7)	781.3
	50억~100억원 미만	(4)	3,104.9	(2)	1,725.8	-	-	(1)	1,000.0
	100억~200억원 미만	(1)	245.0	-	-	-	-	(2)	648.0
	200억~300억원 미만	(4)	1,664.9	(2)	2,485.8	-	-	(2)	1,384.6
300억원 이상	(3)	10,333.3	(1)	4,000.0	-	-	(2)	11,835.3	
지역	서울	(36)	628.0	(24)	356.9	(7)	95.7	(16)	582.5
	부산	(7)	794.5	(6)	246.7	(2)	400.0	(2)	624.1
	대구	(6)	1,235.6	(5)	511.0	-	-	(1)	100.0
	인천	(9)	649.2	(4)	176.1	-	-	-	-
	광주	(5)	574.1	(2)	15.0	(1)	-	-	-
	대전	(2)	45.0	(3)	148.5	(1)	10.0	(1)	200.0
	울산	(3)	141.7	(1)	200.0	-	-	(1)	400.0
	경기	(16)	343.3	(15)	97.8	(7)	148.6	(2)	750.0
	강원	(4)	413.6	(3)	281.6	-	-	-	-
	충북	(9)	490.9	(8)	135.7	-	-	(3)	2,400.0
	충남	(15)	161.5	(12)	124.8	(1)	50.0	(1)	3.0
	전북	(5)	143.3	(6)	122.9	(2)	100.0	-	-
	전남	(5)	202.4	(3)	40.0	(1)	300.0	(1)	20.0
	경북	(7)	189.3	(6)	125.7	-	-	-	-
	경남	(16)	287.5	(7)	111.0	(3)	30.6	(1)	80.0
	제주	(3)	284.2	(5)	23.7	(2)	17.2	(2)	162.0
세종	(2)	75.0	(1)	600.0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77)	119.7	(61)	96.6	(12)	49.4	(12)	138.8
	회사법인	(73)	915.7	(50)	336.7	(15)	201.2	(19)	1,119.6

[표 10] 공공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2)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격심사 (PQ)		턴키		기타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28)	968.0	(4)	79.2	(6)	209.5
중사자 수	5명 미만	(9)	377.3	(3)	55.0	(2)	230.0
	5~9명	(4)	400.0	-	-	(1)	100.0
	10~19명	(6)	237.2	(1)	200.0	(2)	40.0
	20~49명	(1)	197.0	-	-	-	-
	50~99명	(2)	624.5	-	-	-	-
	100~299명	(3)	793.0	-	-	-	-
	300명 이상	(3)	13,452.0	-	-	(1)	1,00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	-	-	-	-	-
	1억~5억원 미만	(9)	151.6	(3)	64.3	(2)	230.0
	5억~10억원 미만	(6)	377.4	(1)	100.0	(1)	-
	10억~50억원 미만	(7)	772.2	-	-	(2)	86.4
	50억~100억원 미만	-	-	-	-	-	-
	100억~200억원 미만	(1)	1,179.0	-	-	-	-
	200억~300억원 미만	(3)	9,577.4	-	-	-	-
300억원 이상	(2)	5,101.2	-	-	(1)	1,000.0	
지역	서울	(10)	2,831.1	(2)	100.0	(4)	86.4
	부산	(2)	857.0	-	-	-	-
	대구	-	-	-	-	(1)	1,000.0
	인천	(3)	365.2	-	-	-	-
	광주	-	-	-	-	-	-
	대전	(1)	18.0	-	-	-	-
	울산	(1)	700.0	-	-	-	-
	경기	(4)	761.8	(2)	64.3	-	-
	강원	-	-	-	-	-	-
	충북	(1)	-	-	-	-	-
	충남	(2)	110.0	-	-	-	-
	전북	(1)	100.0	-	-	-	-
	전남	(1)	-	-	-	-	-
	경북	-	-	-	-	(1)	230.0
	경남	(1)	100.0	-	-	-	-
	제주	-	-	-	-	-	-
	세종	(1)	70.0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0)	294.5	(2)	10.0	(2)	230.0
	회사법인	(18)	1,571.9	(2)	128.6	(4)	199.4

※ 사례수 30 이하는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11] 2018년 민간 프로젝트 합산 수주액 상위 계약 성격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경쟁입찰	설계공모	턴키	기타	
전 체	(475)	67.1	39.8	7.9	3.7	0.3	4.0	
종사자 수	5명 미만	(315)	66.0	42.2	5.1	1.9	0.3	4.8
	5~9명	(57)	68.4	29.8	12.3	7.0	0.0	1.8
	10~19명	(61)	82.0	36.1	13.1	9.8	1.6	1.6
	20~49명	(30)	56.7	43.3	30.0	6.7	0.0	0.0
	50~99명	(5)	60.0	60.0	60.0	20.0	0.0	0.0
	100~299명	(5)	60.0	60.0	80.0	60.0	0.0	0.0
	300명 이상	(2)	50.0	50.0	50.0	50.0	0.0	5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0)	58.3	43.7	2.0	0.0	2.0	2.0
	1억~5억원 미만	(259)	67.0	38.7	5.4	2.9	0.2	4.7
	5억~10억원 미만	(69)	71.9	41.3	11.0	9.1	0.0	3.2
	10억~50억원 미만	(83)	71.8	41.1	19.1	0.8	0.0	2.9
	50억~100억원 미만	(6)	38.0	25.9	46.4	36.1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2)	100.0	17.9	17.9	0.0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4)	47.9	26.1	100.0	52.1	0.0	21.8
	300억원 이상	(2)	54.4	100.0	0.0	100.0	0.0	0.0
지역	서울	(149)	61.6	40.6	15.1	7.5	0.3	4.6
	부산	(29)	73.4	33.7	3.0	5.8	0.0	4.3
	대구	(25)	74.9	29.5	1.2	3.0	0.0	8.8
	인천	(16)	54.4	33.2	8.2	0.0	0.0	10.3
	광주	(11)	60.8	21.3	0.0	0.0	0.0	17.9
	대전	(16)	76.1	38.0	0.0	0.0	0.0	0.0
	울산	(6)	100.0	25.9	25.9	0.0	0.0	0.0
	경기	(98)	69.9	42.2	5.0	2.1	1.1	1.1
	강원	(4)	77.1	22.9	0.0	0.0	0.0	0.0
	충북	(13)	51.6	48.4	0.0	0.0	0.0	0.0
	충남	(30)	79.4	33.9	11.4	3.3	0.0	0.0
	전북	(15)	71.5	57.3	7.1	0.0	0.0	7.1
	전남	(10)	57.4	42.6	0.0	0.0	0.0	0.0
	경북	(15)	66.7	40.0	13.3	0.0	0.0	6.7
	경남	(25)	57.3	61.1	0.0	5.3	0.0	3.9
	제주	(10)	71.5	22.8	9.5	3.8	0.0	9.5
세종	(3)	88.1	11.9	0.0	0.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4)	73.1	22.8	6.7	2.7	0.0	6.7
	회사법인	(278)	64.4	42.9	4.4	1.2	0.0	5.2

[표 12] 민간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1)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경쟁입찰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321)	312.5	(192)	352.4	(48)	685.4
중사자 수	5명 미만	(208)	181.5	(133)	157.1	(16)	124.0
	5~9명	(39)	478.2	(17)	938.7	(7)	569.9
	10~19명	(50)	756.9	(22)	715.6	(8)	333.0
	20~49명	(17)	1,604.1	(13)	1,723.8	(9)	1,769.6
	50~99명	(3)	633.3	(3)	1,066.7	(3)	3,400.0
	100~299명	(3)	2,744.0	(3)	3,555.3	(4)	4,416.0
	300명 이상	(1)	1,500.0	(1)	5,000.0	(1)	50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29)	73.2	(22)	54.3	(1)	-
	1억~5억원 미만	(173)	178.6	(104)	231.6	(14)	73.2
	5억~10억원 미만	(51)	466.0	(26)	303.9	(8)	249.9
	10억~50억원 미만	(62)	874.7	(34)	1,036.1	(16)	1,224.8
	50억~100억원 미만	(1)	200.0	(2)	2,396.9	(4)	2,495.1
	100억~200억원 미만	(2)	862.7	(1)	212.0	(1)	410.0
	200억~300억원 미만	(2)	3,405.1	(1)	5,454.0	(4)	4,605.6
	300억원 이상	(1)	3,000.0	(2)	5,000.0	-	-
지역	서울	(96)	469.4	(62)	581.8	(28)	817.4
	부산	(20)	335.8	(9)	529.6	(2)	3,069.8
	대구	(18)	158.6	(8)	573.3	(1)	1,000.0
	인천	(9)	473.2	(5)	231.4	(3)	2,512.4
	광주	(7)	269.8	(2)	376.5	-	-
	대전	(12)	228.8	(6)	156.3	-	-
	울산	(6)	143.6	(2)	123.6	(2)	173.7
	경기	(70)	353.2	(43)	333.2	(4)	177.8
	강원	(3)	281.4	(1)	40.0	-	-
	충북	(7)	200.1	(6)	77.5	-	-
	충남	(23)	217.7	(10)	193.6	(4)	200.0
	전북	(11)	112.6	(9)	103.9	(1)	50.0
	전남	(6)	237.2	(4)	138.8	-	-
	경북	(10)	107.0	(6)	247.7	(2)	165.0
	경남	(14)	137.5	(15)	141.5	-	-
	제주	(7)	236.8	(3)	143.3	(1)	17.0
	세종	(2)	140.0	(1)	500.0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80)	209.8	(121)	161.7	(12)	97.4
	회사법인	(141)	483.8	(71)	824.0	(36)	1,015.3

[표 13] 민간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연간 수주액(2)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계공모		턴키		기타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사례수	평균금액
전 체		(23)	826.0	(2)	14.0	(18)	207.5
종사자 수	5명 미만	(6)	215.0	(1)	-	(15)	97.3
	5~9명	(4)	252.5	-	-	(1)	69.0
	10~19명	(6)	191.7	(1)	14.0	(1)	20.0
	20~49명	(2)	50.0	-	-	-	-
	50~99명	(1)	3000.0	-	-	-	-
	100~299명	(3)	6840.7	-	-	-	-
	300명 이상	(1)	5000.0	-	-	(1)	700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	-	(1)	-	(1)	20.0
	1억~5억원 미만	(7)	206.0	(1)	14.0	(12)	88.7
	5억~10억원 미만	(8)	264.5	-	-	(2)	200.0
	10억~50억원 미만	(1)	8.0	-	-	(2)	20.0
	50억~100억원 미만	(3)	1829.0	-	-	-	-
	100억~200억원 미만	-	-	-	-	-	-
	200억~300억원 미만	(2)	5261.0	-	-	(1)	7000.0
300억원 이상	(2)	7721.6	-	-	-	-	
지역	서울	(15)	1339.9	(1)	14.0	(7)	422.1
	부산	(1)	380.0	-	-	(1)	220.0
	대구	(2)	24.9	-	-	(2)	20.0
	인천	-	-	-	-	(1)	69.0
	광주	-	-	-	-	(2)	155.0
	대전	-	-	-	-	-	-
	울산	-	-	-	-	-	-
	경기	(2)	75.0	(1)	-	(1)	100.0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1)	-	-	-	-	-
	전북	-	-	-	-	(1)	-
	전남	-	-	-	-	-	-
	경북	-	-	-	-	(1)	230.0
	경남	(1)	30.0	-	-	(1)	80.0
제주	(1)	32.0	-	-	(1)	80.0	
세종	-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	59.5	-	-	(14)	104.2
	회사법인	(20)	986.2	(2)	14.0	(4)	689.7

[표 14] 2018년 수행 민간 프로젝트 업무 대가 방식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면적당 단가	공사비 요율 (공공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	기타	
전 체	(475)	88.3	8.7	7.1	1.6	
총사자 수	5명 미만	(315)	88.9	6.7	7.0	1.6
	5~9명	(57)	87.7	14.0	7.0	1.8
	10~19명	(61)	86.9	13.1	8.2	1.6
	20~49명	(30)	83.3	13.3	10.0	0.0
	50~99명	(5)	60.0	20.0	20.0	0.0
	100~299명	(5)	100.0	60.0	0.0	0.0
	300명 이상	(2)	50.0	0.0	0.0	5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0)	90.1	2.0	11.9	0.0
	1억~5억원 미만	(259)	87.9	9.5	6.8	1.3
	5억~10억원 미만	(69)	89.5	10.0	5.0	5.4
	10억~50억원 미만	(83)	86.3	9.4	7.9	0.0
	50억~100억원 미만	(6)	100.0	0.0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2)	100.0	17.9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4)	78.2	52.1	0.0	21.8
300억원 이상	(2)	100.0	0.0	0.0	0.0	
지역	서울	(149)	86.8	9.1	8.6	3.0
	부산	(29)	81.8	12.5	18.6	0.0
	대구	(25)	89.4	4.4	6.2	0.0
	인천	(16)	84.5	12.4	3.1	0.0
	광주	(11)	91.0	0.0	0.0	9.0
	대전	(16)	87.3	5.6	7.0	0.0
	울산	(6)	81.5	18.5	0.0	0.0
	경기	(98)	91.3	4.4	9.3	0.0
	강원	(4)	100.0	0.0	0.0	0.0
	충북	(13)	100.0	0.0	0.0	0.0
	충남	(30)	87.4	12.6	0.0	0.0
	전북	(15)	85.8	14.2	7.1	0.0
	전남	(10)	89.4	10.6	10.6	0.0
	경북	(15)	86.7	13.3	6.7	0.0
	경남	(25)	85.9	18.4	4.9	3.9
	제주	(10)	100.0	3.8	0.0	13.0
	세종	(3)	56.0	44.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278)	88.5	8.4	6.2	1.9
	회사법인	(197)	88.1	9.3	8.8	1.1

[표 15] 민간 프로젝트 업무 평균 대가

(단위 : %, m², 백만원)

구 분		면적당 단가		공사비 효율 (공공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	
		사례수	평균대가 (%)	사례수	평균대가 (m ²)	사례수	평균대가 (백만원)
전 체		(415)	2.7	(45)	29.7	(35)	44.9
종사자 수	5명 미만	(278)	2.7	(21)	23.6	(22)	33.8
	5~9명	(50)	2.3	(8)	29.3	(4)	40.0
	10~19명	(53)	2.8	(8)	52.6	(5)	169.0
	20~49명	(25)	2.9	(4)	46.0	(3)	88.3
	50~99명	(3)	2.3	(1)	80.0	(1)	10.0
	100~299명	(5)	12.5	(3)	51.9	-	-
	300명 이상	(1)	0.9	-	-	-	-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44)	2.8	(1)	1.0	(6)	18.7
	1억~5억원 미만	(228)	2.5	(23)	25.0	(17)	39.4
	5억~10억원 미만	(61)	3.2	(7)	28.2	(4)	59.5
	10억~50억원 미만	(69)	2.5	(11)	59.8	(8)	99.5
	50억~100억원 미만	(6)	3.5	-	-	-	-
	100억~200억원 미만	(2)	2.0	(1)	1.8	-	-
	200억~300억원 미만	(3)	20.4	(2)	77.0	-	-
300억원 이상	(2)	0.9	-	-	-	-	
지역	서울	(130)	3.4	(15)	48.6	(13)	28.1
	부산	(23)	2.2	(4)	23.4	(4)	84.4
	대구	(22)	2.8	(1)	5.0	(2)	179.8
	인천	(13)	2.2	(2)	7.4	(1)	10.0
	광주	(10)	2.1	-	-	-	-
	대전	(13)	2.4	(2)	27.5	(1)	20.0
	울산	(5)	1.8	(1)	9.0	-	-
	경기	(88)	2.3	(5)	31.7	(9)	40.8
	강원	(4)	2.7	-	-	-	-
	충북	(13)	2.3	-	-	-	-
	충남	(26)	3.3	(4)	38.6	-	-
	전북	(13)	2.0	(2)	4.0	(1)	2.0
	전남	(9)	2.3	(1)	1.0	(1)	20.0
	경북	(13)	2.3	(2)	39.5	(1)	2.0
	경남	(21)	2.2	(4)	18.8	(2)	44.1
	제주	(10)	2.7	(1)	1.0	-	-
세종	(2)	1.5	(1)	4.0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245)	2.6	(22)	20.0	(17)	37.9
	회사법인	(170)	2.8	(23)	45.9	(18)	53.9

[표 16] 민간 프로젝트 완료 후 수금까지 걸린 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전 체		(475)	7.3	25.4	34.9	21.3	11.0
종사자 수	5명 미만	(315)	7.0	26.0	39.0	21.3	6.7
	5~9명	(57)	7.0	28.1	24.6	19.3	21.1
	10~19명	(61)	9.8	18.0	21.3	26.2	24.6
	20~49명	(30)	13.3	3.3	20.0	30.0	33.3
	50~99명	(5)	20.0	0.0	40.0	20.0	20.0
	100~299명	(5)	0.0	40.0	20.0	20.0	20.0
	300명 이상	(2)	0.0	0.0	0.0	0.0	10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0)	4.0	39.7	35.7	16.6	4.0
	1억~5억원 미만	(259)	7.3	24.8	36.4	22.8	8.8
	5억~10억원 미만	(69)	12.0	15.1	35.0	20.2	17.6
	10억~50억원 미만	(83)	5.6	26.4	27.8	20.3	19.8
	50억~100억원 미만	(6)	0.0	0.0	38.0	25.9	36.1
	100억~200억원 미만	(2)	0.0	82.1	0.0	17.9	0.0
	200억~300억원 미만	(4)	0.0	26.1	26.1	0.0	47.9
	300억원 이상	(2)	0.0	54.4	0.0	0.0	45.6
지역	서울	(149)	11.5	22.8	27.5	21.1	17.0
	부산	(29)	2.3	17.4	33.1	35.4	11.8
	대구	(25)	0.0	38.8	28.2	30.1	3.0
	인천	(16)	7.5	2.0	61.4	23.9	5.1
	광주	(11)	9.0	9.0	57.2	9.0	15.9
	대전	(16)	9.9	28.2	35.2	14.1	12.7
	울산	(6)	0.0	37.0	63.0	0.0	0.0
	경기	(98)	7.5	23.4	30.5	29.2	9.5
	강원	(4)	0.0	45.8	54.2	0.0	0.0
	충북	(13)	8.1	24.2	48.4	11.3	8.1
	충남	(30)	0.0	37.3	26.7	32.7	3.3
	전북	(15)	7.1	21.4	31.3	9.0	31.1
	전남	(10)	10.6	14.9	74.5	0.0	0.0
	경북	(15)	6.7	26.7	53.3	6.7	6.7
	경남	(25)	3.9	36.4	54.8	3.9	1.0
	제주	(10)	13.0	41.6	9.5	13.3	22.6
	세종	(3)	0.0	44.0	0.0	56.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278)	7.5	24.2	40.1	21.6	6.6
	회사법인	(197)	7.0	27.7	25.4	20.8	19.1

[표 17] 계약 미성사로 지급받지 못한 업무대가(비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례수 (명)	1천만원 미만	1천~2천 만원 미만	2천~3천 만원 미만	3천~5천 만원 미만	5천~1억 미만	1억 이상	무응답	평균 (백만원)
전 체		(309)	20.9	26.8	16.8	10.0	14.3	10.6	0.6	34.8
종사자 수	5명 미만	(196)	23.0	29.6	17.9	10.2	14.3	4.6	0.5	24.5
	5~9명	(43)	16.3	25.6	14.0	11.6	11.6	20.9	0.0	44.7
	10~19명	(39)	20.5	10.3	15.4	5.1	25.6	23.1	0.0	45.4
	20~49명	(22)	9.1	4.5	13.6	4.5	13.6	50.0	4.5	133.7
	50~99명	(3)	0.0	0.0	33.3	0.0	0.0	33.3	33.3	112.0
	100~299명	(4)	0.0	0.0	0.0	0.0	25.0	75.0	0.0	343.3
	300명 이상	(2)	0.0	0.0	0.0	0.0	0.0	100.0	0.0	572.0
매출액 규모	5천~1억원 미만	(26)	37.9	26.5	16.6	11.4	7.6	0.0	0.0	16.0
	1억~5억원 미만	(171)	23.0	31.5	17.9	9.7	13.6	4.5	0.0	25.3
	5억~10억원 미만	(50)	11.6	16.4	18.5	13.3	16.9	21.1	2.2	46.6
	10억~50억원 미만	(50)	9.8	19.7	7.9	7.1	18.3	36.3	0.9	67.8
	50억~100억원 미만	(6)	10.3	0.0	25.9	0.0	38.0	10.3	15.6	40.9
	100억~200억원 미만	(2)	0.0	0.0	0.0	0.0	50.0	50.0	0.0	425.5
	200억~300억원 미만	(3)	0.0	0.0	0.0	0.0	0.0	100.0	0.0	515.9
300억원 이상	(1)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지역	서울	(98)	16.7	21.2	13.1	12.0	15.9	19.5	1.6	49.3
	부산	(20)	1.8	22.4	13.2	28.8	13.6	17.6	2.7	58.4
	대구	(14)	30.1	22.6	30.1	0.0	15.1	2.0	0.0	20.0
	인천	(10)	33.7	24.3	33.8	0.0	4.9	3.3	0.0	16.0
	광주	(10)	28.9	22.9	9.6	28.9	0.0	9.6	0.0	29.8
	대전	(9)	19.4	27.8	19.4	13.9	13.9	5.6	0.0	25.9
	울산	(3)	16.7	41.7	41.7	0.0	0.0	0.0	0.0	15.5
	경기	(59)	16.3	28.3	22.6	8.1	16.0	8.7	0.0	28.3
	강원	(3)	29.7	0.0	40.7	29.7	0.0	0.0	0.0	18.5
	충북	(9)	16.7	59.5	23.8	0.0	0.0	0.0	0.0	11.9
	충남	(16)	27.1	27.3	12.4	6.2	27.1	0.0	0.0	21.6
	전북	(13)	23.1	30.7	7.7	0.0	7.7	30.8	0.0	75.4
	전남	(7)	42.9	42.9	14.3	0.0	0.0	0.0	0.0	8.7
	경북	(8)	37.5	12.5	25.0	0.0	25.0	0.0	0.0	20.6
	경남	(21)	27.6	28.6	9.0	15.1	19.6	0.0	0.0	21.8
제주	(7)	14.8	64.6	0.0	0.0	14.8	5.9	0.0	25.2	
세종	(2)	78.7	0.0	0.0	0.0	0.0	21.3	0.0	25.2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173)	22.7	29.8	18.5	10.6	14.3	4.1	0.0	23.9
	회사법인	(136)	17.9	22.0	13.9	9.0	14.3	21.3	1.6	52.9

[표 18]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업무 분야(건축분야)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건축 계획· 설계	감리	인테 리어	도시 계획 및 설계	유지· 관리	건설 사업 관리 (CM)	건축 구조	조경 계획 및 설계	건축 설비	건축 지반 조사	기타	없음
전 체	(565)	70.5	51.0	8.6	7.0	5.5	3.9	4.4	2.5	1.5	0.8	1.7	15.6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71.6	52.6	10.2	5.0	5.5	3.0	4.4	2.2	1.4	0.3	16.3
	5~9명	(73)	69.9	43.8	4.1	11.0	5.5	5.5	4.1	2.7	0.0	2.7	15.1
	10~19명	(70)	61.4	48.6	7.1	11.4	5.7	7.1	4.3	2.9	5.7	1.4	12.9
	20~49명	(41)	70.7	58.5	2.4	4.9	2.4	2.4	7.3	2.4	4.9	0.0	4.9
	50~99명	(7)	28.6	57.1	14.3	57.1	0.0	14.3	14.3	0.0	14.3	0.0	0.0
	100~299명	(6)	66.7	66.7	0.0	50.0	16.7	16.7	0.0	50.0	0.0	0.0	0.0
	300명 이상	(5)	80.0	100.0	0.0	40.0	20.0	40.0	0.0	0.0	0.0	0.0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65.6	42.7	7.6	2.6	5.7	4.5	7.6	2.6	0.0	0.0	22.9
	1억~5억원 미만	(299)	70.6	51.3	9.8	6.4	5.5	3.4	4.9	2.8	1.3	0.8	17.3
	5억~10억원 미만	(88)	70.2	49.4	9.2	9.2	8.5	6.5	2.7	1.7	0.5	0.0	9.0
	10억~50억원 미만	(105)	73.8	55.3	3.3	9.0	1.1	0.6	2.6	1.1	5.1	2.8	11.2
	50억~100억원 미만	(9)	58.1	62.0	11.5	11.5	0.0	19.0	0.0	0.0	0.0	0.0	7.5
	100억~200억원 미만	(3)	69.7	69.7	0.0	15.2	0.0	0.0	0.0	0.0	0.0	0.0	15.2
	200억~300억원 미만	(5)	100.0	100.0	0.0	39.3	17.9	35.8	0.0	42.8	0.0	0.0	0.0
300억원 이상	(4)	76.2	100.0	0.0	52.3	28.5	28.5	0.0	28.5	0.0	0.0	0.0	
지역	서울	(175)	71.6	43.4	9.7	9.8	6.0	4.5	3.1	1.5	2.2	0.0	14.5
	부산	(35)	61.9	49.5	13.4	8.8	0.0	1.5	8.4	0.0	1.5	0.0	13.9
	대구	(27)	62.1	54.0	0.0	0.0	0.0	1.1	4.2	1.7	4.2	0.0	14.2
	인천	(19)	71.6	57.2	6.0	13.2	14.2	8.2	2.4	14.2	1.6	0.0	15.9
	광주	(14)	71.3	65.5	14.4	2.9	0.0	0.0	7.2	2.9	0.0	0.0	14.4
	대전	(17)	61.6	57.5	13.7	2.7	2.7	9.6	6.8	0.0	0.0	0.0	26.0
	울산	(8)	59.5	32.4	46.0	5.4	5.4	0.0	5.4	13.5	5.4	0.0	13.5
	경기	(109)	72.3	49.3	6.2	7.0	3.9	1.0	4.2	1.9	0.3	3.0	16.1
	강원	(9)	59.6	26.3	0.0	0.0	0.0	0.0	0.0	0.0	0.0	0.0	37.4
	충북	(21)	79.6	69.5	15.3	5.1	5.1	0.0	0.0	5.1	0.0	0.0	15.3
	충남	(32)	72.5	56.8	6.3	10.6	7.4	7.4	3.1	3.1	0.0	0.0	7.5
	전북	(18)	76.0	68.4	8.2	0.0	0.0	6.0	1.6	0.0	0.0	0.0	18.0
	전남	(13)	57.6	49.2	16.9	0.0	0.0	0.0	25.4	0.0	0.0	0.0	25.4
	경북	(17)	94.2	80.6	0.0	0.0	5.8	0.0	0.0	0.0	0.0	0.0	0.0
	경남	(36)	68.1	49.7	2.8	9.4	9.4	7.7	6.6	3.8	0.0	0.0	18.6
	제주	(12)	52.6	52.6	15.5	7.8	33.9	23.3	7.8	7.8	15.5	7.8	29.0
	세종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69.7	52.6	9.4	4.3	6.2	4.4	4.2	2.3	1.2	0.3	17.3
	회사법인	(246)	71.7	48.3	7.3	11.7	4.3	3.1	4.9	2.8	1.9	1.7	12.7

[표 19]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업무 분야(타 분야)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부동산	시공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관광	기타	없음
전 체		(565)	8.8	7.5	2.7	1.1	0.5	0.3	83.8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8.5	8.0	2.5	1.1	0.6	0.3	84.0
	5~9명	(73)	8.2	6.8	2.7	1.4	0.0	0.0	84.9
	10~19명	(70)	12.9	5.7	2.9	0.0	1.4	1.4	78.6
	20~49명	(41)	4.9	0.0	2.4	0.0	0.0	0.0	92.7
	50~99명	(7)	14.3	0.0	28.6	0.0	0.0	0.0	57.1
	100~299명	(6)	33.3	33.3	16.7	0.0	0.0	0.0	50.0
	300명 이상	(5)	40.0	20.0	0.0	0.0	0.0	0.0	6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9	7.6	3.8	0.0	1.9	0.0	88.5
	1억~5억원 미만	(299)	9.5	7.6	1.8	1.4	0.3	0.3	84.1
	5억~10억원 미만	(88)	9.9	10.4	4.2	1.2	0.0	0.5	78.4
	10억~50억원 미만	(105)	9.5	2.8	4.6	0.0	0.6	0.0	85.2
	50억~100억원 미만	(9)	0.0	0.0	0.0	0.0	0.0	0.0	100.0
	100억~200억원 미만	(3)	0.0	0.0	0.0	0.0	0.0	0.0	100.0
	200억~300억원 미만	(5)	57.2	39.3	21.4	0.0	0.0	0.0	21.4
300억원 이상	(4)	28.5	28.5	0.0	0.0	0.0	0.0	71.5	
지역	서울	(175)	7.3	9.6	4.2	2.1	0.7	0.3	81.2
	부산	(35)	12.2	2.6	0.0	0.0	0.0	0.0	86.3
	대구	(27)	10.1	4.2	0.0	0.0	0.0	0.0	85.8
	인천	(19)	14.2	6.0	2.5	8.2	0.0	0.0	83.3
	광주	(14)	7.2	7.2	2.9	0.0	2.9	7.2	75.6
	대전	(17)	9.6	13.7	2.7	0.0	0.0	0.0	83.6
	울산	(8)	13.5	27.0	0.0	0.0	0.0	0.0	73.0
	경기	(109)	8.5	2.9	2.9	0.0	1.0	0.0	87.6
	강원	(9)	0.0	0.0	0.0	0.0	0.0	0.0	100.0
	충북	(21)	15.3	10.2	0.0	0.0	0.0	0.0	79.6
	충남	(32)	0.0	7.4	3.1	0.0	0.0	0.0	89.4
	전북	(18)	20.2	8.2	8.2	0.0	0.0	0.0	71.6
	전남	(13)	0.0	0.0	0.0	0.0	0.0	0.0	100.0
	경북	(17)	0.0	0.0	0.0	0.0	0.0	0.0	100.0
	경남	(36)	12.2	6.6	3.8	2.8	0.0	0.0	81.2
제주	(12)	26.4	44.6	0.0	0.0	0.0	0.0	52.3	
세종	(3)	0.0	0.0	0.0	0.0	0.0	0.0	10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7.3	9.2	1.9	0.7	0.0	0.3	84.7
	회사법인	(246)	11.5	4.7	4.2	1.6	1.3	0.2	82.1

[표 20] 국내 프로젝트 중 해외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협업 프로젝트 수		사례수 (명)	해외업체와 협업한 분야(복수응답)				
		0건	1건 이상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기획· 컨설팅	기타	
전 체	(565)	98.6	1.4	(12)	79.5	37.9	8.7	14.6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99.2	0.8	(3)	66.7	0.0	0.0	33.3
	5~9명	(73)	98.6	1.4	(1)	100.0	100.0	0.0	0.0
	10~19명	(70)	98.6	1.4	(1)	100.0	0.0	0.0	0.0
	20~49명	(41)	95.1	4.9	(2)	100.0	50.0	0.0	0.0
	50~99명	(7)	85.7	14.3	(1)	0.0	100.0	0.0	0.0
	100~299명	(6)	50.0	50.0	(3)	100.0	33.3	66.7	0.0
	300명 이상	(5)	80.0	20.0	(1)	100.0	100.0	0.0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00.0	0.0	-	-	-	-	-
	1억~5억원 미만	(299)	99.5	0.5	(2)	100.0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88)	95.9	4.1	(3)	70.3	40.7	29.7	0.0
	10억~50억원 미만	(105)	99.1	0.9	(2)	100.0	50.0	0.0	0.0
	50억~100억원 미만	(9)	88.5	11.5	(1)	0.0	100.0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3)	84.8	15.2	(1)	100.0	100.0	0.0	100.0
	200억~300억원 미만	(5)	78.6	21.4	(1)	100.0	0.0	0.0	100.0
300억원 이상	(4)	47.7	52.3	(2)	100.0	45.6	0.0	0.0	
지역	서울	(175)	95.4	4.6	(11)	78.6	35.3	15.2	9.1
	부산	(35)	99.0	1.0	(1)	100.0	100.0	0.0	0.0
	대구	(27)	100.0	0.0	-	-	-	-	-
	인천	(19)	100.0	0.0	-	-	-	-	-
	광주	(14)	100.0	0.0	-	-	-	-	-
	대전	(17)	100.0	0.0	-	-	-	-	-
	울산	(8)	100.0	0.0	-	-	-	-	-
	경기	(109)	100.0	0.0	-	-	-	-	-
	강원	(9)	100.0	0.0	-	-	-	-	-
	충북	(21)	100.0	0.0	-	-	-	-	-
	충남	(32)	100.0	0.0	-	-	-	-	-
	전북	(18)	100.0	0.0	-	-	-	-	-
	전남	(13)	100.0	0.0	-	-	-	-	-
	경북	(17)	100.0	0.0	-	-	-	-	-
	경남	(36)	100.0	0.0	-	-	-	-	-
	제주	(12)	100.0	0.0	-	-	-	-	-
세종	(3)	100.0	0.0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99.6	0.4	(2)	28.6	0.0	0.0	71.4
	회사법인	(246)	97.1	2.9	(10)	92.5	47.6	10.9	0.0

[표 21] 향후 해외사업 참여 의향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사례수 (명)	진출 희망 지역								
		있다	없다		아시아	유럽	중동	호주, 뉴질 랜드	아프 리카	북미	중남미	기타	
전 체	(565)	12.1	87.9	(71)	88.1	24.3	14.3	9.9	7.1	4.6	0.7	2.9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9.1	90.9	(33)	93.9	18.2	6.1	12.1	12.1	6.1	0.0	0.0
	5~9명	(73)	20.5	79.5	(15)	86.7	33.3	20.0	6.7	0.0	0.0	0.0	6.7
	10~19명	(70)	12.9	87.1	(9)	77.8	33.3	22.2	0.0	11.1	11.1	0.0	11.1
	20~49명	(41)	7.3	92.7	(3)	100.0	33.3	0.0	0.0	0.0	0.0	0.0	0.0
	50~99명	(7)	57.1	42.9	(4)	25.0	25.0	50.0	25.0	0.0	25.0	25.0	0.0
	100~299명	(6)	66.7	33.3	(4)	75.0	0.0	50.0	25.0	0.0	0.0	0.0	0.0
	300명 이상	(5)	60.0	40.0	(3)	66.7	33.3	66.7	0.0	0.0	0.0	0.0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5.7	94.3	(3)	100.0	66.7	0.0	0.0	0.0	0.0	0.0	0.0
	1억~5억원 미만	(299)	10.7	89.3	(32)	92.7	23.2	11.6	16.6	12.3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88)	17.2	82.8	(14)	83.1	19.7	9.8	0.0	2.8	14.2	0.0	9.8
	10억~50억원 미만	(105)	15.6	84.4	(14)	83.3	21.0	26.7	4.2	0.0	8.3	4.2	4.1
	50억~100억원 미만	(9)	11.5	88.5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3)	15.2	84.8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5)	78.6	21.4	(4)	72.8	0.0	72.8	27.2	0.0	0.0	0.0	0.0
300억원 이상	(4)	52.3	47.7	(2)	54.4	45.6	0.0	0.0	0.0	0.0	0.0	0.0	
지역	서울	(175)	19.2	80.8	(37)	83.5	34.2	16.9	6.2	5.1	10.2	0.0	6.4
	부산	(35)	7.4	92.6	(2)	10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	(27)	0.0	100.0	-	-	-	-	-	-	-	-	-
	인천	(19)	18.9	81.1	(3)	87.0	0.0	13.0	0.0	0.0	0.0	13.0	0.0
	광주	(14)	24.2	75.8	(3)	100.0	40.7	0.0	0.0	0.0	0.0	0.0	0.0
	대전	(17)	12.3	87.7	(3)	100.0	22.2	0.0	0.0	0.0	0.0	0.0	0.0
	울산	(8)	13.5	86.5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경기	(109)	5.6	94.4	(6)	82.7	0.0	24.3	17.3	34.6	0.0	0.0	0.0
	강원	(9)	0.0	100.0	-	-	-	-	-	-	-	-	-
	충북	(21)	5.1	94.9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충남	(32)	18.0	82.0	(5)	10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	(18)	26.2	73.8	(4)	100.0	22.9	31.4	0.0	0.0	0.0	0.0	0.0
	전남	(13)	8.5	91.5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경북	(17)	11.5	88.5	(2)	100.0	0.0	0.0	50.0	0.0	0.0	0.0	0.0
	경남	(36)	3.8	96.2	(1)	0.0	100.0	0.0	100.0	0.0	0.0	0.0	0.0
	제주	(12)	10.9	89.1	(2)	100.0	28.6	0.0	71.4	0.0	0.0	0.0	0.0
세종	(3)	0.0	100.0	-	-	-	-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9.7	90.3	(31)	93.5	14.2	3.2	9.7	9.7	6.5	0.0	0.0
	회사법인	(246)	16.3	83.7	(40)	82.6	34.5	25.6	10.0	4.6	2.6	1.3	5.8

[표 22]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및 활용 가능 인원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BIM 활용 가능 인원		GIS 활용 가능 인원		
		BIM	GIS	없음	사례수	평균 인원	사례수	평균 인원	
전 체	(565)	9.5	3.5	87.8	(61)	2.5	(20)	2.0	
총사자 수	5명 미만	(363)	8.5	1.9	89.8	(31)	1.5	(7)	1.4
	5~9명	(73)	9.6	8.2	84.9	(7)	1.7	(6)	2.0
	10~19명	(70)	14.3	5.7	81.4	(10)	5.4	(4)	4.0
	20~49명	(41)	9.8	4.9	85.4	(4)	7.3	(2)	5.0
	50~99명	(7)	28.6	0.0	71.4	(2)	16.0	-	-
	100~299명	(6)	66.7	16.7	16.7	(4)	13.8	(1)	2.0
	300명 이상	(5)	60.0	0.0	40.0	(3)	3.7	-	-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9.5	0.0	90.5	(5)	0.8	-	-
	1억~5억원 미만	(299)	9.1	3.3	87.9	(27)	1.6	(9)	1.5
	5억~10억원 미만	(88)	8.0	6.7	88.6	(7)	2.2	(5)	2.2
	10억~50억원 미만	(105)	10.7	2.8	87.2	(13)	4.5	(5)	4.5
	50억~100억원 미만	(9)	22.9	0.0	77.1	(2)	16.0	-	-
	100억~200억원 미만	(3)	30.3	0.0	69.7	(2)	15.0	-	-
	200억~300억원 미만	(5)	57.2	21.4	21.4	(3)	4.4	(1)	2.0
300억원 이상	(4)	52.3	0.0	47.7	(2)	12.3	-	-	
지역	서울	(175)	11.8	3.8	84.5	(27)	3.4	(5)	2.9
	부산	(35)	1.5	2.5	96.0	(1)	22.0	(2)	5.0
	대구	(27)	10.1	0.0	89.9	(3)	2.8	-	-
	인천	(19)	8.2	0.0	91.8	(1)	1.0	-	-
	광주	(14)	9.9	9.9	90.1	(1)	1.0	(1)	1.0
	대전	(17)	23.3	2.7	74.0	(4)	1.4	(1)	2.0
	울산	(8)	5.4	5.4	94.6	(1)	10.0	(1)	10.0
	경기	(109)	4.6	2.0	93.4	(5)	2.5	(3)	1.8
	강원	(9)	0.0	0.0	100.0	-	-	-	-
	충북	(21)	16.5	5.1	78.4	(4)	1.8	(1)	1.0
	충남	(32)	13.7	7.4	83.2	(4)	0.8	(2)	1.0
	전북	(18)	6.0	6.0	88.0	(1)	3.0	(1)	1.0
	전남	(13)	20.3	8.5	79.7	(3)	2.3	(1)	1.0
	경북	(17)	0.0	0.0	100.0	-	-	-	-
	경남	(36)	17.8	2.8	79.4	(6)	1.3	(1)	1.0
	제주	(12)	0.0	7.8	92.2	-	-	(1)	1.0
세종	(3)	0.0	0.0	100.0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9.5	2.3	88.9	(30)	1.4	(7)	1.0
	회사법인	(246)	9.6	5.5	85.9	(31)	4.4	(13)	2.8

[표 23] BIM, GIS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기획·컨설팅	감리, CM	연구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다	
전 체	(77)	70.5	58.0	16.4	10.5	2.7	7.5	
종사자 수	5명 미만	(37)	64.9	56.8	18.9	10.8	2.7	10.8
	5~9명	(11)	81.8	54.5	9.1	0.0	0.0	0.0
	10~19명	(13)	84.6	53.8	23.1	30.8	7.7	7.7
	20~49명	(6)	66.7	66.7	16.7	16.7	0.0	16.7
	50~99명	(2)	50.0	100.0	0.0	50.0	0.0	0.0
	100~299명	(5)	80.0	100.0	20.0	0.0	0.0	0.0
	300명 이상	(3)	33.3	66.7	0.0	33.3	33.3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	40.0	80.0	20.0	0.0	0.0	20.0
	1억~5억원 미만	(35)	65.2	53.2	13.6	8.2	0.0	8.2
	5억~10억원 미만	(10)	95.7	65.9	25.5	10.7	10.7	4.3
	10억~50억원 미만	(17)	88.2	43.7	18.5	23.5	5.0	3.4
	50억~100억원 미만	(2)	50.0	100.0	0.0	50.0	0.0	0.0
	100억~200억원 미만	(2)	100.0	100.0	50.0	0.0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4)	50.0	77.2	0.0	22.8	22.8	0.0
300억원 이상	(2)	54.4	100.0	0.0	0.0	0.0	0.0	
지역	서울	(32)	79.1	47.2	13.7	5.9	5.6	7.5
	부산	(3)	100.0	63.0	25.0	38.0	0.0	0.0
	대구	(3)	100.0	41.7	41.7	41.7	0.0	0.0
	인천	(1)	0.0	100.0	0.0	0.0	0.0	0.0
	광주	(1)	100.0	100.0	0.0	0.0	0.0	0.0
	대전	(5)	100.0	36.8	0.0	0.0	0.0	0.0
	울산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
	경기	(8)	85.3	55.4	20.6	0.0	0.0	14.7
	충북	(5)	70.6	100.0	23.5	23.5	0.0	0.0
	충남	(5)	25.5	44.2	37.2	0.0	0.0	18.6
	전북	(2)	0.0	50.0	0.0	50.0	0.0	0.0
	전남	(3)	16.7	100.0	0.0	58.3	0.0	0.0
	경남	(7)	72.9	72.9	13.6	0.0	0.0	13.6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5)	59.5	65.1	19.7	8.4	0.0	11.3
	회사법인	(42)	85.2	48.4	11.9	13.4	6.2	2.5

[표 24]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보유 대수(평균)

(단위 : 대)

구 분		출력장비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AR/VR 기기 및 주변기기		그 밖의 고가장비	
		(사례수)	보유 대수	(사례수)	보유 대수	(사례수)	보유 대수	(사례수)	보유 대수	(사례수)	보유 대수
전 체		(554)	1.7	(26)	1.3	(14)	1.0	(11)	1.3	(6)	1.2
종사자 수	5명 미만	(357)	1.6	(13)	1.4	(4)	1.0	(8)	1.0	(3)	1.3
	5~9명	(73)	1.7	(5)	1.0	(2)	1.0	-	-	(2)	1.0
	10~19명	(68)	2.1	(2)	2.5	(4)	1.0	(2)	2.0	-	-
	20~49명	(40)	3.4	(2)	1.5	(2)	1.5	-	-	(1)	2.0
	50~99명	(7)	3.3	-	-	-	-	-	-	-	-
	100~299명	(5)	8.0	(1)	1.0	(1)	1.0	(1)	6.0	-	-
	300명 이상	(4)	11.8	(3)	1.0	(1)	1.0	-	-	-	-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4	(2)	1.0	-	-	-	-	-	-
	1억~5억원 미만	(294)	1.6	(14)	1.4	(4)	1.0	(7)	1.0	(5)	1.2
	5억~10억원 미만	(88)	1.7	(1)	1.0	(2)	1.0	(1)	1.0	-	-
	10억~50억원 미만	(101)	2.1	(5)	1.1	(5)	1.0	(2)	2.0	(1)	2.0
	50억~100억원 미만	(9)	2.4	-	-	(1)	2.0	-	-	-	-
	100억~200억원 미만	(3)	4.1	-	-	-	-	-	-	-	-
	200억~300억원 미만	(4)	10.9	-	-	-	-	-	-	-	-
300억원 이상	(3)	8.0	(4)	1.0	(2)	1.0	(1)	6.0	-	-	
지역	서울	(173)	1.8	(9)	1.2	(7)	1.1	(3)	1.6	(3)	1.1
	부산	(34)	1.8	(2)	1.2	-	-	-	-	-	-
	대구	(26)	1.9	(1)	1.0	(2)	1.0	-	-	-	-
	인천	(18)	1.5	(3)	1.0	-	-	-	-	-	-
	광주	(14)	1.7	(2)	1.0	(1)	1.0	-	-	(1)	2.0
	대전	(17)	2.2	(1)	1.0	(1)	1.0	(1)	2.0	-	-
	울산	(8)	1.8	-	-	-	-	(1)	2.0	-	-
	경기	(107)	1.5	(3)	2.7	(1)	1.0	(2)	1.0	(1)	1.0
	강원	(9)	2.1	-	-	-	-	-	-	-	-
	충북	(21)	1.6	(1)	1.0	(1)	1.0	(1)	1.0	-	-
	충남	(31)	1.7	(1)	1.0	(1)	1.0	(1)	1.0	-	-
	전북	(17)	1.7	(3)	1.0	-	-	-	-	-	-
	전남	(13)	1.6	-	-	-	-	(1)	1.0	-	-
	경북	(16)	1.5	-	-	-	-	-	-	-	-
	경남	(35)	1.6	-	-	-	-	(1)	1.0	(1)	1.0
	제주	(12)	1.6	-	-	-	-	-	-	-	-
세종	(3)	2.0	-	-	-	-	-	-	-	-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3)	1.6	(10)	1.0	(3)	1.0	(7)	1.0	(3)	1.3
	회사법인	(241)	1.9	(16)	1.5	(11)	1.0	(4)	2.1	(3)	1.1

[표 25]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디자인/ 설계	법/제도/ 사업 절차	안전 교육/ 위험 관리	프로 그램/ 컴퓨터/B IM	마케팅/ 프로 젝트 관리	지속 가능성/ 친환경	어학	기타	없음	
전 체	(565)	26.9	23.4	20.0	16.9	7.1	6.4	2.0	0.5	50.8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25.6	21.5	16.3	16.0	6.3	6.3	1.9	0.3	55.4
	5~9명	(73)	30.1	24.7	26.0	17.8	9.6	6.8	1.4	1.4	41.1
	10~19명	(70)	34.3	31.4	34.3	21.4	8.6	1.4	4.3	0.0	40.0
	20~49명	(41)	17.1	39.0	39.0	14.6	4.9	9.8	0.0	0.0	36.6
	50~99명	(7)	28.6	71.4	71.4	28.6	0.0	28.6	14.3	0.0	14.3
	100~299명	(6)	50.0	50.0	16.7	66.7	33.3	16.7	16.7	0.0	0.0
	300명 이상	(5)	40.0	20.0	40.0	20.0	0.0	0.0	0.0	0.0	4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9.8	12.2	5.7	15.3	3.8	8.3	0.0	0.0	72.6
	1억~5억원 미만	(299)	27.9	25.0	18.3	17.2	7.4	6.8	1.6	0.5	49.6
	5억~10억원 미만	(88)	30.5	21.8	13.1	20.0	12.3	4.6	4.1	1.2	55.0
	10억~50억원 미만	(105)	23.3	24.9	47.9	11.2	1.5	4.9	2.6	0.0	35.4
	50억~100억원 미만	(9)	30.5	26.5	19.0	22.9	0.0	7.5	0.0	0.0	62.0
	100억~200억원 미만	(3)	30.3	100.0	69.7	15.2	15.2	0.0	0.0	0.0	0.0
	200억~300억원 미만	(5)	17.9	39.3	21.4	60.7	0.0	21.4	21.4	0.0	17.9
300억원 이상	(4)	52.3	0.0	47.7	28.5	28.5	0.0	0.0	0.0	23.8	
지역	서울	(175)	29.2	26.7	24.3	20.0	10.5	8.4	2.7	1.7	46.2
	부산	(35)	25.3	26.2	27.6	12.0	5.1	8.8	0.0	0.0	41.9
	대구	(27)	15.9	8.7	17.1	5.9	0.0	1.1	0.0	0.0	72.9
	인천	(19)	22.5	22.7	22.7	6.0	6.0	12.3	0.0	0.0	53.2
	광주	(14)	34.3	34.3	24.2	34.3	0.0	0.0	0.0	0.0	48.7
	대전	(17)	43.8	37.0	5.5	6.8	16.4	0.0	6.8	0.0	46.6
	울산	(8)	46.0	32.4	32.4	13.5	0.0	0.0	0.0	0.0	40.5
	경기	(109)	23.1	23.5	19.4	14.4	6.9	6.2	2.9	0.0	50.9
	강원	(9)	26.3	11.1	14.1	0.0	0.0	0.0	0.0	0.0	59.6
	충북	(21)	36.9	35.6	21.6	15.3	5.1	15.3	0.0	0.0	42.7
	충남	(32)	18.0	16.8	10.7	18.0	10.6	3.1	0.0	0.0	65.1
	전북	(18)	34.4	0.0	24.2	34.4	0.0	6.0	0.0	0.0	49.6
	전남	(13)	0.0	11.9	11.9	8.5	0.0	8.5	0.0	0.0	71.2
	경북	(17)	17.3	11.5	28.8	5.8	5.8	0.0	0.0	0.0	48.2
	경남	(36)	36.6	27.2	14.8	27.2	5.6	5.6	3.8	0.0	45.7
	제주	(12)	37.0	31.0	0.0	26.4	13.8	10.6	7.8	0.0	55.2
	세종	(3)	0.0	11.9	11.9	0.0	0.0	0.0	0.0	0.0	88.1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26.5	19.5	14.2	15.5	7.5	7.0	1.7	0.3	55.5
	회사법인	(246)	27.7	30.2	30.1	19.3	6.4	5.3	2.6	0.7	42.9

[표 26]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홍보 방법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사업체 홈페 이지 운영	SNS 활용 홍보	대면 홍보	관련 잡지에 기고· 인터뷰· 작품 소개	포털 사이트 광고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TV, 신문 등 광고	홍보 책자 발간	기타	별도로 홍보 하지 않음	
전 체	(565)	8.7	4.9	4.5	3.0	2.6	1.3	1.1	1.1	0.3	83.2	
총사자 수	5명 미만	(363)	6.3	4.1	4.1	2.5	1.7	0.6	0.8	0.6	0.0	87.6
	5~9명	(73)	11.0	6.8	4.1	1.4	5.5	4.1	0.0	0.0	1.4	76.7
	10~19명	(70)	17.1	8.6	8.6	8.6	4.3	1.4	2.9	5.7	0.0	70.0
	20~49명	(41)	22.0	2.4	9.8	9.8	0.0	2.4	0.0	12.2	0.0	63.4
	50~99명	(7)	28.6	0.0	0.0	14.3	14.3	0.0	14.3	0.0	0.0	42.9
	100~299명	(6)	66.7	16.7	16.7	50.0	0.0	0.0	50.0	33.3	0.0	0.0
	300명 이상	(5)	60.0	0.0	0.0	20.0	0.0	0.0	40.0	20.0	0.0	0.0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9	0.0	3.8	1.9	0.0	0.0	0.0	1.9	0.0	92.4
	1억~5억원 미만	(299)	8.6	5.0	3.8	2.1	2.6	1.6	1.0	0.5	0.0	84.2
	5억~10억원 미만	(88)	9.0	10.2	6.8	5.6	3.9	1.7	1.0	0.5	1.7	79.4
	10억~50억원 미만	(105)	10.7	1.7	5.9	3.3	2.8	0.6	0.7	3.0	0.0	80.8
	50억~100억원 미만	(9)	26.5	0.0	0.0	7.5	11.5	7.5	0.0	7.5	0.0	54.5
	100억~200억원 미만	(3)	30.3	0.0	0.0	30.3	0.0	0.0	15.2	15.2	0.0	69.7
	200억~300억원 미만	(5)	60.7	21.4	0.0	17.9	0.0	0.0	60.7	17.9	0.0	0.0
300억원 이상	(4)	47.7	0.0	28.5	28.5	0.0	0.0	23.8	28.5	0.0	0.0	
지역	서울	(175)	17.0	8.5	4.2	6.5	1.5	0.3	1.8	2.1	0.0	73.6
	부산	(35)	7.8	7.6	7.5	1.0	1.5	0.0	1.1	2.0	0.0	84.2
	대구	(27)	8.0	4.2	1.7	0.0	0.0	1.1	0.0	1.1	0.0	90.3
	인천	(19)	0.0	6.0	1.6	0.0	8.2	0.0	2.5	0.0	0.0	81.7
	광주	(14)	0.0	0.0	2.9	0.0	0.0	0.0	0.0	0.0	0.0	97.1
	대전	(17)	16.4	0.0	0.0	0.0	13.7	6.8	0.0	0.0	0.0	83.6
	울산	(8)	0.0	13.5	13.5	0.0	0.0	0.0	0.0	0.0	0.0	73.0
	경기	(109)	3.5	4.0	5.2	0.0	3.3	1.3	0.0	0.0	0.0	88.2
	강원	(9)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충북	(21)	5.1	5.1	15.3	10.2	5.1	0.0	1.3	0.0	0.0	78.4
	충남	(32)	8.7	0.0	3.1	4.3	3.1	4.3	3.1	0.0	0.0	88.2
	전북	(18)	8.2	0.0	6.0	6.0	0.0	0.0	0.0	6.0	0.0	85.8
	전남	(13)	0.0	0.0	0.0	8.5	0.0	0.0	0.0	8.5	0.0	91.5
	경북	(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경남	(36)	6.6	0.0	6.6	0.0	0.0	6.6	2.8	0.0	3.8	84.0
	제주	(12)	7.8	18.4	0.0	3.1	13.8	0.0	0.0	0.0	0.0	78.5
	세종	(3)	44.0	0.0	0.0	0.0	0.0	0.0	0.0	0.0	0.0	56.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6.1	4.0	4.0	2.0	2.0	1.1	0.6	0.6	0.0	87.9
	회사법인	(246)	13.0	6.4	5.4	4.8	3.6	1.8	1.9	2.0	0.7	75.1

[표 27] 근속년수별 남녀 인원수 현황(평균)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명)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 체	(565)	0.4	0.3	1.2	0.5	1.1	0.4	1.2	0.4	1.0	0.2	0.4	0.0	5.2	1.8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0.1	0.1	0.3	0.2	0.4	0.2	0.5	0.2	0.5	0.1	0.3	0.0	2.1	0.8
	5~9명	(73)	0.3	0.3	1.3	0.7	1.1	0.6	1.1	0.5	0.8	0.3	0.1	0.0	4.7	2.4
	10~19명	(70)	0.8	0.8	2.1	0.9	2.1	0.9	1.6	0.7	1.4	0.4	0.2	0.1	8.2	3.9
	20~49명	(41)	2.1	1.2	4.8	1.7	6.3	2.0	5.4	1.4	3.8	0.6	1.0	0.1	23.4	7.0
	50~99명	(7)	1.7	2.1	13.3	3.3	13.3	2.6	11.9	2.6	6.3	0.3	1.9	0.0	48.3	10.9
	100~299명	(6)	16.5	8.8	49.2	17.5	35.7	9.2	55.2	6.8	17.7	4.3	11.8	0.7	186.0	47.3
	300명 이상	(5)	45.6	8.0	76.6	13.2	58.8	6.0	73.4	16.0	69.6	9.0	25.6	2.2	349.6	54.4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0.1	0.1	0.1	0.1	0.3	0.1	0.2	0.2	0.4	0.0	0.4	0.0	1.5	0.6
	1억~5억원 미만	(299)	0.1	0.1	0.5	0.3	0.5	0.2	0.5	0.2	0.6	0.1	0.2	0.0	2.5	1.0
	5억~10억원 미만	(88)	0.3	0.3	1.1	0.6	1.0	0.5	1.0	0.4	0.6	0.2	0.3	0.0	4.1	2.0
	10억~50억원 미만	(105)	0.8	0.6	2.1	0.8	2.6	0.8	2.5	0.7	1.7	0.3	0.3	0.0	9.8	3.2
	50억~100억원 미만	(9)	1.4	1.4	5.2	3.4	5.1	2.3	5.8	1.7	3.7	0.2	2.0	0.2	23.3	9.1
	100억~200억원 미만	(3)	5.0	2.6	22.0	6.3	6.8	1.8	5.3	1.1	4.6	0.8	0.8	0.2	44.5	12.7
	200억~300억원 미만	(5)	26.8	4.9	63.3	11.2	43.0	5.6	74.3	5.4	24.7	4.1	15.8	0.8	247.8	32.2
300억원 이상	(4)	37.5	13.2	58.8	20.1	61.0	11.9	72.9	21.5	71.7	11.2	28.3	2.4	330.3	80.4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0.1	0.1	0.4	0.3	0.4	0.2	0.5	0.2	0.6	0.1	0.3	0.0	2.3	0.9
	회사법인	(246)	0.9	0.5	2.5	0.9	2.2	0.7	2.4	0.6	1.7	0.3	0.5	0.1	10.2	3.2

[표 28] 사업부서 내 대학전공별 인원수(평균)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명)	건축설계/공학		도시계획/설계		조경		실내디자인		토목		기계/전기		기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 체	(565)	3.7	1.1	0.2	0.1	0.1	0.0	0.0	0.1	0.4	0.1	0.3	0.0	0.3	0.4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1.9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5~9명	(73)	4.1	1.6	0.2	0.0	0.1	0.1	0.0	0.1	0.1	0.0	0.1	0.0	0.2
	10~19명	(70)	6.1	2.2	0.7	0.3	0.0	0.0	0.1	0.2	0.3	0.1	0.5	0.1	0.5
	20~49명	(41)	15.8	3.7	2.4	1.0	0.5	0.4	0.2	0.3	2.6	0.5	1.3	0.1	0.5
	50~99명	(7)	24.7	5.9	9.1	0.4	0.1	0.0	1.1	2.9	3.4	0.0	5.9	0.0	4.0
	100~299명	(6)	78.8	23.0	5.7	0.8	2.5	0.8	1.8	1.8	34.0	14.2	23.0	3.8	31.8
	300명 이상	(5)	193.4	20.2	7.2	5.6	13.0	5.6	5.0	4.2	56.0	3.8	57.8	4.2	17.4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4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억~5억원 미만	(299)	2.3	0.7	0.1	0.0	0.1	0.0	0.0	0.0	0.0	0.0	0.0	0.1	0.2
	5억~10억원 미만	(88)	3.1	1.3	0.2	0.0	0.1	0.0	0.1	0.2	0.1	0.0	0.1	0.1	0.4
	10억~50억원 미만	(105)	7.1	1.9	0.8	0.4	0.1	0.1	0.0	0.1	0.8	0.2	0.6	0.0	0.5
	50억~100억원 미만	(9)	14.8	6.1	6.4	0.1	0.0	0.0	0.9	2.6	0.5	0.0	0.3	0.0	0.3
	100억~200억원 미만	(3)	15.8	4.7	0.0	0.0	0.0	0.0	0.2	0.2	0.0	0.0	3.2	0.5	25.3
	200억~300억원 미만	(5)	112.3	10.4	6.4	0.6	5.6	1.0	2.1	2.3	55.1	18.7	48.1	4.3	7.3
300억원 이상	(4)	195.3	40.7	9.7	7.2	12.3	6.8	6.0	4.8	51.5	3.8	38.1	5.0	17.9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2.0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회사법인	(246)	6.6	1.7	0.6	0.2	0.2	0.1	0.1	0.2	1.0	0.2	0.8	0.1	0.7

[표 29] 자격별 보유 인원 현황

(단위 : 명,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명)	건축사 보유인원	해외 건축사 보유인원	기술사 보유인원	기사 보유인원	친환경, LEED 등 기타 인증제도 자격 보유 인원	기타 자격증 보유 인원	전체 자격증 보유 인원(합계)	
전 체	(565)	1.3	0.0	0.4	2.4	0.0	0.1	4.2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0.9	0.0	0.1	0.8	0.0	0.1	1.9
	5~9명	(73)	1.1	0.1	0.4	2.2	0.1	0.1	4.0
	10~19명	(70)	1.2	0.0	0.5	4.3	0.0	0.3	6.3
	20~49명	(41)	2.5	0.0	1.6	9.0	0.0	0.0	13.1
	50~99명	(7)	2.4	0.4	2.6	22.4	0.3	0.3	28.4
	100~299명	(6)	34.7	0.8	22.0	79.3	0.2	0.0	137.0
	300명 이상	(5)	56.8	0.4	49.2	207.8	0.0	6.0	320.2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0.9	0.0	0.1	0.4	0.0	0.0	1.4
	1억~5억원 미만	(299)	1.0	0.0	0.1	1.0	0.0	0.1	2.2
	5억~10억원 미만	(88)	0.9	0.1	0.2	2.1	0.0	0.2	3.5
	10억~50억원 미만	(105)	1.4	0.0	0.6	4.5	0.2	0.1	6.8
	50억~100억원 미만	(9)	2.6	0.3	0.8	9.0	0.2	0.0	12.9
	100억~200억원 미만	(3)	2.5	0.0	3.3	17.2	0.0	0.0	23.0
	200억~300억원 미만	(5)	44.7	1.0	41.6	138.0	0.0	5.4	230.7
300억원 이상	(4)	64.0	0.5	36.0	172.5	0.3	0.0	273.3	
지역	서울	(175)	1.7	0.1	0.9	3.5	0.1	0.2	6.6
	부산	(35)	1.2	0.0	0.5	4.1	0.0	0.0	5.9
	대구	(27)	1.2	0.0	0.6	4.0	0.0	0.0	5.8
	인천	(19)	1.4	0.0	0.6	2.2	0.0	0.1	4.2
	광주	(14)	0.8	0.0	0.6	1.3	0.0	0.1	2.9
	대전	(17)	0.9	0.0	0.1	1.4	0.0	0.2	2.6
	울산	(8)	0.9	0.0	0.2	1.5	0.0	0.3	2.8
	경기	(109)	0.9	0.0	0.2	1.6	0.0	0.0	2.8
	강원	(9)	0.7	0.0	0.0	2.4	0.0	0.0	3.1
	충북	(21)	3.5	0.0	0.1	3.2	0.0	0.2	6.9
	충남	(32)	0.9	0.0	0.0	0.9	0.1	0.1	2.0
	전북	(18)	0.8	0.0	0.0	1.2	0.0	0.2	2.1
	전남	(13)	1.0	0.0	0.2	0.9	0.0	0.0	2.1
	경북	(17)	0.9	0.0	0.0	1.3	0.0	0.1	2.3
	경남	(36)	0.9	0.0	0.1	1.6	0.0	0.0	2.6
	제주	(12)	0.7	0.0	0.0	1.6	0.0	0.0	2.3
	세종	(3)	0.9	0.0	0.7	1.2	0.0	0.0	2.8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0.9	0.0	0.1	1.0	0.0	0.0	2.1
	회사법인	(246)	1.9	0.1	1.0	4.8	0.1	0.2	8.0

[표 30] 2018년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례수 (명)	경력 1년 미만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	경력 3년 이상~5년 미만	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 10년 이상~20년 미만	경력 20년 이상	
전 체	(563)	22.2	25.7	30.1	35.0	40.5	45.5	
종사자 수	5명 미만	(362)	21.7	25.0	29.4	34.3	39.7	44.7
	5~9명	(72)	23.4	26.7	31.3	35.9	41.6	46.1
	10~19명	(70)	23.3	27.3	31.9	37.4	43.6	49.6
	20~49명	(41)	25.5	29.3	33.2	38.0	42.7	48.3
	50~99명	(7)	25.4	29.1	33.6	37.4	44.9	53.1
	100~299명	(6)	27.2	32.8	39.5	49.7	60.0	74.2
	300명 이상	(5)	27.8	33.0	38.2	45.2	52.0	57.6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	(52)	20.3	23.4	29.1	32.4	37.4	42.0
	1억~5억원 미만	(299)	21.8	25.1	29.4	34.2	39.3	44.3
	5억~10억원 미만	(86)	23.1	26.6	31.0	36.9	43.9	49.2
	10억~50억원 미만	(105)	24.4	28.0	32.3	37.2	43.1	48.3
	50억~100억원 미만	(9)	24.9	29.7	34.9	41.8	47.5	53.3
	100억~200억원 미만	(3)	27.5	30.7	35.2	41.9	48.5	57.1
	200억~300억원 미만	(5)	26.6	32.2	38.1	44.2	52.7	65.0
300억원 이상	(4)	27.9	32.9	36.7	44.3	51.7	60.5	
지역	서울	(174)	23.2	26.9	31.2	36.4	42.2	47.0
	부산	(35)	22.2	25.8	29.9	34.9	39.6	45.2
	대구	(27)	22.6	25.9	30.4	34.4	40.8	44.7
	인천	(19)	21.8	24.8	32.6	34.4	39.0	45.7
	광주	(14)	21.1	24.3	29.0	35.3	39.6	44.9
	대전	(17)	21.1	24.8	29.4	33.8	38.7	44.5
	울산	(8)	22.0	23.6	27.8	32.9	37.7	43.8
	경기	(109)	22.9	26.2	30.5	34.9	40.5	45.4
	강원	(9)	20.7	23.5	27.4	31.0	36.2	41.0
	충북	(21)	21.7	24.6	28.5	33.3	39.7	48.2
	충남	(31)	20.5	24.5	29.3	36.5	42.3	46.5
	전북	(18)	22.2	24.2	29.2	36.4	41.8	46.2
	전남	(13)	20.5	24.3	29.0	33.4	36.9	42.4
	경북	(17)	21.1	24.6	28.7	33.3	39.1	44.2
	경남	(36)	21.2	24.6	28.8	34.1	38.6	43.6
	제주	(12)	21.9	25.5	28.8	32.4	38.0	42.9
	세종	(3)	19.7	21.8	26.0	29.8	33.2	38.4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21.4	24.7	29.2	34.0	39.1	44.0
	회사법인	(244)	23.7	27.2	31.7	36.6	42.8	48.2

[표 31] 2018년 매출액

(단위 : %, 천만원)

구 분	사례수 (명)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억 미만	10억 이상	매출액 평균 (천만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천만원)	
전 체	(565)	10.3	38.9	20.9	16.1	13.8	71.8	10.8	
종사자 수	5명 미만	(363)	14.0	49.3	23.1	10.7	2.8	29.3	10.5
	5~9명	(73)	1.4	17.8	19.2	32.9	28.8	89.7	12.4
	10~19명	(70)	0.0	2.9	10.0	35.7	51.4	110.9	9.2
	20~49명	(41)	0.0	0.0	0.0	0.0	100.0	323.0	11.1
	50~99명	(7)	0.0	0.0	0.0	0.0	100.0	495.9	8.4
	100~299명	(6)	0.0	0.0	0.0	0.0	100.0	2387.3	10.6
	300명 이상	(5)	0.0	0.0	0.0	0.0	100.0	3577.4	8.7
지역	서울	(175)	9.0	32.2	17.5	18.4	22.9	123.6	13.4
	부산	(35)	14.8	25.8	14.8	29.9	14.8	95.0	8.6
	대구	(27)	16.8	43.5	12.6	15.8	11.4	86.5	11.6
	인천	(19)	14.2	44.3	12.0	2.4	27.1	68.8	9.3
	광주	(14)	14.4	45.8	7.2	17.0	15.6	48.1	9.0
	대전	(17)	13.7	47.9	16.4	19.2	2.7	30.9	9.1
	울산	(8)	13.5	40.5	40.5	0.0	5.4	31.7	8.7
	경기	(109)	5.8	39.7	27.1	15.5	11.9	50.8	11.1
	강원	(9)	11.1	22.2	22.2	26.3	18.2	51.2	9.5
	충북	(21)	20.4	50.9	10.2	15.3	3.3	63.3	8.8
	충남	(32)	0.0	28.2	43.9	22.4	5.6	39.5	11.4
	전북	(18)	12.0	53.9	14.2	6.0	13.9	54.7	10.2
	전남	(13)	8.5	67.8	8.5	8.5	6.8	31.0	6.9
	경북	(17)	5.8	46.1	34.5	7.9	5.8	29.7	8.7
	경남	(36)	22.3	46.8	12.2	16.0	2.6	29.3	7.2
	제주	(12)	7.8	41.7	36.8	3.1	10.6	34.6	8.9
세종	(3)	0.0	44.0	44.0	0.0	11.9	35.1	6.2	

[표 32] 2018년 지출액

(단위 : %, 만원)

구 분	사원수 (명)	인건비 지출액	외주비 지출액	마케팅/ 홍보비 지출액	사무실 경비 지출액	교육지원비 지출액	기타 비용 지출액	총 지출액 합계	
전 체	(557)	24,889.3	15,217.9	535.7	3,306.2	158.1	3,957.3	47,945.5	
중사 자 수	5명 미만	(360)	9,911.8	5,739.3	119.8	1,542.5	69.7	906.7	18,242.1
	5~9명	(70)	22,464.1	19,940.9	263.6	2,909.1	34.4	3,456.9	49,069.0
	10~19명	(68)	39,333.9	22,860.1	594.6	5,716.2	70.9	2,944.1	70,605.2
	20~49명	(41)	103,010.8	83,694.1	591.5	8,964.2	1,649.9	6,056.5	203,967.0
	50~99명	(7)	257,120.7	103,331.4	1,555.9	23,710.7	1,409.6	35,894.3	423,022.6
	100~299명	(6)	712,820.0	560,955.8	19,613.8	259,081.0	6,648.3	112,233.7	1,671,352.7
	300명 이상	(5)	1,989,643.4	618,504.0	109,725.4	24,085.8	11,623.0	695,784.4	3,449,366.0
매출 액 규모	1억원 미만	(52)	5,286.2	1,611.4	21.0	1,666.2	2.3	195.7	8,681.9
	1억~5억원 미만	(296)	10,923.1	4,926.8	94.1	1,410.9	42.0	902.1	18,256.8
	5억~10억원 미만	(84)	21,428.0	18,043.5	210.1	3,265.1	54.3	3,209.3	46,210.4
	10억~50억원 미만	(104)	47,020.0	38,645.9	782.2	5,623.1	570.8	4,980.2	97,622.2
	50억~100억원 미만	(9)	147,916.2	133,264.8	625.4	13,166.3	257.5	17,760.4	312,990.5
	100억~200억원 미만	(3)	251,956.0	114,717.2	598.8	135,832.6	433.0	67,526.2	571,063.8
	200억~300억원 미만	(5)	1,036,984.6	205,026.9	98,888.7	29,429.8	11,734.3	130,238.9	1,512,283.2
300억원 이상	(4)	1,766,608.7	1,220,538.8	31,577.1	178,485.6	8,781.7	730,176.4	3,986,178.3	
지역	서울	(171)	41,933.9	23,659.2	1,407.0	7,250.0	386.1	9,005.7	83,454.1
	부산	(35)	32,436.9	20,490.3	158.4	3,170.8	66.9	4,076.7	60,400.0
	대구	(27)	31,868.0	19,662.7	629.9	2,020.5	424.7	2,050.6	56,656.3
	인천	(19)	26,732.1	14,701.4	401.3	2,744.1	107.9	3,776.6	48,463.5
	광주	(14)	15,500.1	12,848.5	287.9	2,870.8	74.7	1,735.1	33,317.1
	대전	(17)	13,411.9	7,372.2	18.5	1,147.3	13.7	1,151.9	23,115.6
	울산	(8)	15,140.2	6,193.4	341.9	2,157.5	16.2	2,662.0	26,511.4
	경기	(107)	15,700.7	14,036.7	248.9	1,700.4	19.9	1,966.9	33,673.5
	강원	(9)	16,239.4	5,176.4	0.0	1,175.5	18.2	873.3	23,482.9
	충북	(21)	33,201.1	15,135.1	198.5	2,121.1	58.5	898.2	51,612.5
	충남	(31)	12,937.2	7,523.6	110.2	1,485.8	43.1	1,413.5	23,218.5
	전북	(17)	13,181.1	9,829.2	130.6	1,808.4	65.3	1,860.8	26,875.5
	전남	(13)	9,749.2	5,297.3	84.7	1,533.0	2.5	906.0	16,746.7
	경북	(17)	11,868.5	9,056.8	0.0	981.9	0.0	775.5	22,682.8
	경남	(36)	11,783.8	6,301.0	62.0	1,023.0	96.4	425.2	19,691.4
	제주	(12)	14,024.1	5,263.2	26.2	942.5	64.0	7,651.4	27,971.4
세종	(3)	18,816.6	10,880.9	0.0	885.8	0.0	119.1	30,702.4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7)	10,110.9	7,190.3	151.5	1,507.0	68.6	913.8	19,883.1
	회사법인	(240)	50,864.4	29,327.4	1,211.5	6,461.5	315.7	9,311.7	97,315.0

[표 33] 사무실 점유형태 및 면적

(단위 : %, 백만원, m²)

구 분	사례 수 (명)	사무실 점유형태			월세 비용		전세 비용		사무실 면적(m ²)	
		자가	월세	전세	사례수	평균 비용 (백만원)	사례수	평균 비용 (백만원)		
전 체	(565)	14.6	80.0	5.3	(438)	10.7	(34)	393.9	98.4	
종사 자 수	5명 미만	(363)	12.9	81.5	5.5	(296)	6.1	(20)	503.8	73.3
	5~9명	(73)	16.4	80.8	2.7	(59)	14.7	(2)	45.0	111.5
	10~19명	(70)	17.1	74.3	8.6	(52)	33.7	(6)	158.3	134.3
	20~49명	(41)	36.6	53.7	9.8	(22)	93.3	(4)	266.7	327.0
	50~99명	(7)	14.3	57.1	28.6	(4)	3.4	(2)	100.0	436.7
	100~299명	(6)	66.7	33.3	0.0	(2)	100.9	-	-	674.8
	300명 이상	(5)	40.0	60.0	0.0	(3)	13.2	-	-	1896.8
매출 액 규모	1억원 미만	(52)	13.4	75.2	11.5	(39)	1.3	(6)	30.0	64.4
	1억~5억원 미만	(299)	13.5	81.7	4.9	(245)	7.5	(15)	37.3	79.0
	5억~10억원 미만	(88)	14.8	81.8	3.4	(71)	15.8	(3)	2919.9	95.8
	10억~50억원 미만	(105)	17.9	77.6	4.5	(72)	26.4	(8)	216.1	156.8
	50억~100억원 미만	(9)	7.5	73.5	19.0	(6)	11.4	(2)	139.7	360.5
	100억~200억원 미만	(3)	100.0	0.0	0.0	-	-	-	-	397.6
	200억~300억원 미만	(5)	39.3	60.7	0.0	(3)	78.5	-	-	1201.2
300억원 이상	(4)	52.3	47.7	0.0	(2)	7.3	-	-	1241.3	
지역	서울	(175)	10.1	88.5	1.4	(147)	17.9	(4)	222.3	118.4
	부산	(35)	16.4	73.7	9.9	(24)	24.2	(4)	64.6	104.8
	대구	(27)	10.1	84.2	5.7	(23)	11.4	(1)	30.0	99.6
	인천	(19)	22.0	73.1	4.9	(12)	0.9	(2)	109.9	109.3
	광주	(14)	19.9	58.5	21.6	(8)	0.5	(3)	38.3	93.2
	대전	(17)	6.8	76.7	16.4	(13)	0.7	(3)	79.2	89.9
	울산	(8)	5.4	67.6	27.0	(5)	0.6	(2)	0.0	99.5
	경기	(109)	13.6	84.0	2.3	(89)	5.0	(3)	75.0	84.8
	강원	(9)	14.1	85.9	0.0	(7)	0.8	-	-	90.8
	충북	(21)	31.8	63.1	5.1	(13)	19.0	(1)	30.0	98.2
	충남	(32)	10.6	85.0	4.4	(27)	5.4	(2)	107.2	83.3
	전북	(18)	32.2	60.2	7.6	(11)	27.7	(2)	60.6	102.4
	전남	(13)	8.5	91.5	0.0	(12)	9.8	-	-	81.1
	경북	(17)	11.5	80.6	7.9	(14)	1.0	(1)	60.0	83.0
	경남	(36)	20.7	65.3	14.0	(23)	0.7	(5)	1620.0	86.0
	제주	(12)	26.2	70.7	3.1	(8)	11.6	(1)	30.0	82.3
세종	(3)	44.0	56.0	0.0	(2)	0.8	-	-	77.8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319)	13.0	81.0	6.0	(260)	5.4	(19)	519.6	75.0
	회사법인	(246)	17.5	78.4	4.1	(178)	20.2	(15)	116.3	138.3